

치안전망 2018

www.psi.go.kr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전망 2018

www.psi.go.kr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전망 2018」을 발간하며

2017년 경찰은 커다란 변화와 개혁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민주 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합니다. 경찰 중심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치안패러다임으로 제도와 인식의 틀을 바꾸어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현장초동조치·수사·집회대응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고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치안시스템의 커다란 변화와 분기점이 될 사안도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여성 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비롯하여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수점검, 위기 청소년 지원 등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횡포나 방산비리 등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자리 잡은 부패·비리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테러 대응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청의 치안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AI·ICT 등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역량을 향상하는 한편, 인권중심의 수사구조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찰 조직내외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일상생활 분야의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현장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하는 등 치안 R&D를 대폭 확충하여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찰 활동의 주요 분야별 지표를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예측 결과들을 수록하고 있는 「치안전망 2018」이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과 박진우 경찰대학장님을 비롯하여 「치안전망 2018」작성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경찰청 각 국·관 담당자들과 해마다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관기관·학계·언론계 등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망서 발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속 연구관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 1. 11

치안정책연구소장 **송 병 일**

제1장

2017년
치안활동의
회고

I.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2
II. 2017 10대 치안 이슈	6
특집: 경찰개혁의 논의와 방향	23
I. 경찰개혁의 목표	24
II. 경찰개혁위원회 활동과 논의 과제	26
III. 추진 방향	41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

I. 치안환경분석의 전략적 접근	46
II. 미래치안환경의 변화	50
III. 전략적 치안환경 전망	59

제3장

2018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범죄수사 분야 전망	65
I. 2018년 범죄 발생 전망	66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83
III. 지능 범죄 전망	95
IV.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대응 역량강화	103
V. 사이버범죄 전망	111
제2절 생활안전 분야 전망	125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126
II. 젠더폭력 전망	130
III. 학교폭력 전망	141

제3절 교통분야 전망	153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154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157
제4절 사회안정 분야 전망	169
I. 집회시위 전망.....	170
II. 테러 위협 전망	174
제5절 보안·외사분야 전망	181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182
II. 탈북민 관련 전망	202
III. 외사 분야 전망	217

제4장

2018년
경찰의
대응

I. 범죄별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	228
II. 생활안전 분야.....	232
III. 교통 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	234
IV. 사회안정 확보.....	236
V. 보안·외사분야.....	238

치안전망 2018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제1장

2017년
치안활동의
회고

I.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2
II. 2017 10대 치안 이슈	6
특집: 경찰개혁의 논의와 방향	23

I.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2017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한 한해였다. 현장초동조치·수사·집회대응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고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해였으며, 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도 마련하였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테러 대응태세를 구축하였다.

1. 범사회적 협력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첫째,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을 활성화하였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예방치안을 활성화하여 범죄예방진단으로 범죄취약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통해 안심구역을 확대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공동 추진하여 CCTV 등 예방시설을 3301개를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탄력순찰을 활성화하고 치안문제 해결에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범죄예방협의체 등 공동체치안 기반도 확충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불안케 하는 신종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였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실종 예방시스템을 충실히 운영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셋째, 생활주변 폭력배나 강·절도와 같이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하였다. 서민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와 투자사기 등을 뿌리 뽑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장기 미제사건도 집중 수사하여 금년에만 5건의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였다. 과학적인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대응 역량도 강화하여 112 신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2.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법질서 확립

첫째,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신고 단계부터 금지통고를 최소화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차벽·살수차 미배치 원칙도 정립하여 인권과 안전을 중심으로 현장관리를 하였다.

둘째, 생활주변 부패·비리를 척결하고자 특권과 반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였고 신용질서를 교란하는 보험사기도 강력히 단속하였다. 방산비리, 갑질횡포 등 반부패 기획수사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에도 앞장선 한해였다.

셋째, 마약과 성매매를 비롯한 음성적인 불법행위를 추방하는데 노력하였다. 마약사범에 대한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적극 전개하고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나 카지노 술집 등 신종 유해환경도 적극 제거하였다.

넷째,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사람 우선으로 전환하였다. 도시부 제한속도는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30km/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전국에 확대하여 사람보호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였으며, 교통단속과 사고처리 절차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등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였다.

3. 확고한 사회안정 유지

첫째, 확고한 사회안정 유지를 위해 안보 위해사범을 면밀히 수사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범죄예방교육을 비롯한 정착지원도 확대하였으며, 북한 선전매체 등 사이버상 안보 위해요소도 적극 차단하였다.

둘째, 테러 대응을 위한 인력, 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력을 높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경찰협력센터 운영 등 완벽

한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어 치안강국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국제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사 치안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인터폴 등과 치안협력을 강화하여 국외도피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추적·송환함은 물론 산업기술 유출이나 관광 불법행위도 적극 단속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고양시켰다.

넷째,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인터넷사기, 도박 등 사이버범죄를 강력히 단속하였고 포털사이트, 금융기관 등과 협업, 해외경찰과의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여 날로 진화하는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처하였다.

4. 내부역량 강화 및 치안인프라 확충

첫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청렴도 평가 등 내실 있는 반부패시책과 선행·수범사례 발굴을 통해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상을 확립해 나갔다.

둘째, 스마트 순찰차, 신형 방탄·방검복 등 현장에 최적화된 장비를 보급하고 교통관리, 실종자 수색 등 치안활동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첨단과학수사 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을 '17년 97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분야의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현장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하는 등 치안 R&D를 대폭 확충하여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다.

셋째, 인사, 성과평가, 감찰제도 등 현장활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과의 소통시스템 강화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 자기주도의 직무교육도 내실화하여 직무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넷째, 경감 이하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고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에 힘썼으며, 야간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직원들에게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도 22개소를 추가 증설하는 등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였다.

5.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2017년에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개혁추진본부를 내부에 구성하였고 외부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도 설치하여 경찰 개혁의 동력을 높여 나갔다.

주요 개혁과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경찰활동을 인권신장 중심으로 재설계하였으며,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영상녹화 확대,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추진하였다.

적정한 경찰력 행사를 통해 집회·시위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비롯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기소 분리의 수사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경찰수사의 공정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과도한 계급중심 조직문화도 개선하는 등 조직 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하였다.

본 장에서는 창경(創警) 이래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경찰개혁 논의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다.

II. 2017 10대 치안 이슈¹⁾

2017년에도 치안상황을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연초부터 대선기간을 틈타 가짜뉴스가 판치는가 하면, 갑질사건, 데이트폭력, 청소년 폭행사건 등이 우리 사회를 얼룩지게 했다. 창원 골프장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이영학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었고, 불법촬영이 확산되는 등 경찰로서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던 한 해였다. 그러나 다수의 미제사건이 해결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주요 치안 이슈에 선정된 10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건개요, 전개과정,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그 순서는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결과를 기준으로 2017년 각 사건이 가장 이슈화된 시점을 따랐다.²⁾

1.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짜뉴스는 거짓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페이크뉴스(Fake News)라고도 한다.³⁾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특징은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유언비어로 ‘오보’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흑색·음해 선전의 새로운 변형으로 그 형태가 사실처럼 보여 파장이 크다고 할 것이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시 인터넷 상에서 공유된 가짜뉴스는 870만 건으로 진짜뉴스 공유건수 736만 건을 상회하였는데, 당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뉴스였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클린턴이 이슬람 무장단체(IS)에 무기를 팔았다’, ‘클린턴의 이슬람국가 이메일 유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다’ 등이었다.

1) 『치안전망 2018』에서는 ‘주요 치안 이슈’를 새롭게 신설하여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되었던 치안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주요 치안 이슈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7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치안 관련 사건들을 수집하여 57개의 후보 사건들을 정하였다. 치안전망의 집필진들이 후보 사건들 중 중요성이 높은 사건들을 복수로 선택한 다음, 선택 빈도가 높은 10순위까지의 이슈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 ‘검색어 트렌드’에서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조회하였다.

3)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1-2-1] 가짜뉴스가 많이 공유된 페이스북



출처 : 조선비즈DB

[그림 1-2-2] 미국 대선 관련 가짜뉴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내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성돼 SNS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일부 보수단체 등을 통해 대거 생성돼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외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뉴스 유통업체 주도로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페이스북은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유력 언론사들과 협력하여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차단 툴을 통해 이용자들이 올리는 뉴스 기사를 검증하고 팩트체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에서도 페이스북의 게시물 '신고'란에 '허위뉴스 기사입니다'라는 항목을 마련하였다.

구글은 프랑스 유력 언론사들의 공동 프로젝트인 '크로스체크'(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만든 협력체)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가짜뉴스에 대응하였다.

우리 경찰에서도 언론, 포털사이트, 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선거사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전담반을 운영하여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제작·유포행위를 단속하였다.

2. 창원 골프연습장 살인사건

2017년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A가 자신의 6촌 동생 B, 여자 친구 C와 같이 창원시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타려던 중, A와 그 일행이 해당 여성을 불러 세운 후 자신들의 차량에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A와 B는 피해 여성을 납치한 검은 색 차량을 몰고 경남 고성군으로 향했으며, C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피해 여성이 타던 외제 승용차를 창원시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두 곳으로 흩어졌다.

이들은 다시 고성군에서 다시 만나 피해 여성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차 트렁크에 싣고 전라도 쪽으로 이동하던 도중 범행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진주시 진수대교 인근에 내다 버렸다. 이후 이들은 광주광역시, 전남 순천시를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410만 원을 인출했다.

6월 27일 새벽, A 일행은 함안군에서 경찰 추적을 받자 타고 있던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하는 등 경찰의 검문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B는 함안의 한 아파트 주변 차 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와 C는 함안 야산에서 2시간 정도 숨은 뒤, 한 동안 부산 일대를 배회한 후 택시를 타고 오후 7시쯤 대구광역시에 도착한 이들은 모텔에 투숙한 뒤인 28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결국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서 숨게 되는데 7월 3일 모텔 주인의 제보로 모텔에 찾아온 경찰들에게 검거되었다.

범인들은 살인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의 경찰수사 결과 주범인 A가 무직에 신용불량자이면서 카드빚이 4000만 원에 달하자 상호 공모해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납치 장소인 골프연습장을 사전 답사하고 납치에 이용한 차량에는 스스로 위조한 번호판을 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광주로 이동하던 중 전남 순천에서 미리 훔쳐냈던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2-3] 골프연습장 살인사건 범죄자들의 도주경로



출처 : 중앙일보

이들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의 신원이 몇몇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려지자 다수의 국민들은 경찰 및 언론에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진다면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면 아쉬운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골프장에서 납치할 당시 목격자들이 부부싸움인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아 납치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3.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

고등학교 자퇴생인 A양(16세)과 재수생 B양(18세)은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캐릭터 커뮤니티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특정 영화나 게임 등에서 직접 가상현실을 창작하고 그 속에서 캐릭터를 부여해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놀이를 말한다.

A는 2017년 3월 29일 12시 49분경 인천 연수구 소재 ○○공원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초등학생 C양(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시체의 일부를 B에게 전해주었다. B는 C양의 손가락과 허벅지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가 유기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범행 수법이 워낙 엽기적이고 잔인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의 정신병적 이유를 주된 범행 동기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A와 B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의 공모관계와 계획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재판과정에서 A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는 당초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A가 B와의 공모 관계를 상세히 진술하면서 B의 죄명이 살인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B는 공모관계를 부인하였지만, 법원은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법원은 9월 22일 A에게 징역 20년, 공동정범 B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였다(2017고합261). A와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2017노2951).

이 사건은 피해자 C양의 유족인 ‘사랑이 엄마(가명)’가 6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추모 서명’에 “저는 3월 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란 글을 게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유족의 호소

문을 계기로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뜨겁게 형성되었고, 인터넷 상에서는 가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가 횡행하였다.

이들에 대한 엄벌 요구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소년에 대한 형의 감경, 소년사건의 보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하여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자극적인 소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급기야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이 전개되어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이는 국민청원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첫 사례가 되었다.

4. 지속되는 데이트폭력

2017년도 데이트폭력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다음과 같이 3번에 걸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다.

첫째, 2017년 1월 9일에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 논현동 한 빌라에서 30대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두 개골이 골절되었으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소극적인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폭행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가해자를 경찰서로 연행하였으나 두 사람이 1년 가까이 동거한 연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만나지 말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경고와 함께 가해자를 풀어주었다.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가해자는 준비한 칼로 위협하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2017년 2월 15일 112신고의 범죄분류코드에 ‘데이트폭력’을 신설하고, 별도 관리하는 사건 처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⁴⁾

둘째, 2017년 7월 18일 01시 30분경 서울 신당동에서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가해자가 폭행하는 과정이 녹화된 CCTV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는 수차례

4) “경찰신고 두 시간만에 반복된 데이트폭력, 결국 살인으로...”, 매일경제신문, 2017. 1. 19; “데이트폭력 잡자... 경찰, 범죄코드 신설·112 이력 관리”, 뉴스1코리아, 2017. 2. 14; “경찰, 데이트 폭력 피해 보호 대책 강화”, YTN, 2017. 3. 2

폭행에 이어 인근에 세워둔 1t트럭을 몰고 피해자와 주변 시민들에게 돌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치아 6개가 손상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당장 시행하라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긴급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해 위치추적장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정책을 강화하였고,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와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⁵⁾

셋째,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데이트폭력’은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트폭력사범이 최근 10년 간 매일 25명 꼴로 발생하였고, 지난 3년 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살인미수가 300건이 넘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데이트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다.⁶⁾

5. 갑질 횡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갑질’ 근절을 포함시키고,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범부처의 ‘을지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⁷⁾ 또한, A 사령관 부부의 공판병에 대한 군내 갑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전 부처 내에서의 갑질 문화를 점검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갑질은 계약서 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할 때 쓰이던 ‘갑(甲)’과 ‘을(乙)’이 우열을 가리는 상하관계(上下關係)로 인식되면서⁸⁾ 우월한 지위를 뜻하는 ‘갑(甲)’에

5) “전 여친 ‘다신 보지 말자’ … 치아 5개 부러뜨린 데이트 폭력”, 중앙일보, 2017. 7. 20; “경찰, 데이트폭력 강력 대응 …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중앙일보, 2017. 7. 23; “서울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치료비·법률 비용 지원한다”, 중앙일보, 2017. 7. 25; “여가부, 데이트 폭력·몰카 등 젠더폭력 근절 위한 대책 추진”, 매일방송 MBN, 2017. 8. 1.

6) “데이트 폭력사범, 최근 10년 간 매일 25명꼴 발생”, 뉴시스, 2017. 10. 11;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살인 미수 3년 간 300건 넘어”, 헤럴드경제, 2017. 10. 18; “사각지대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중도일보, 2017. 11. 2

7)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갑질’ 근절…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출범”, 국민일보, 2017. 7. 19.

8) 트렌드지식사전, 네이버.

어떤 행위를 뜻하는 접미사 ‘-질’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다.⁹⁾ 즉, 갑질이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¹⁰⁾

흔히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을을 하인 부리듯이 대하며, 을이라면 손윗사람에게도 반말한다. 자신의 과오를 을에게 떠넘긴다.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제한다. 부탁할 때는 비굴하게 굴기도 하지만 도와줄 때는 끊는다.”¹¹⁾ 등의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갑질은 단순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한 비윤리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 모욕죄, 협박죄, 폭행죄, 공갈죄, 강요죄, 업무방해 등의 형법상 위반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의 형태로 발현되어 2017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였고, 법집행 기관은 정부의 갑질 근절 기조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¹²⁾

2017년 중반에 화제가 되었던 A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군내 갑질 사건에서, A 사령관 부부는 공관병에게 손목시계형 호출기를 24시간 동안 대기하게 만들고, 제대로 시킨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을 던져서 얼굴에 맞추려 하고, 부모님까지 모욕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¹³⁾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¹⁴⁾ 법조계에서는 A 사령관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A 사령관의 부인은 폭행, 협박, 감금, 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¹⁵⁾

이 외에도 다수의 갑질 사건이 2017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수사 및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전 ○○피자 B 회장은 가맹

9)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10)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11) “갑(甲)의 저주 … “뿌린 대로 거두리라””, 지디넷코리아, 2012. 7. 3.

12) “경찰, 소상공인·비정규직 갑질횡포 특별단속”, 서울신문, 2017. 7. 31.

13) “‘OOO 갑질, 엄격히 따지면 직권남용 해당 분명’”, YTN, 2017. 10. 12.

14) 군검찰에서는 A사령관의 갑질 관련 의혹에 대해서 A사령관이 직접 가담했다기보다는 A사령관의 부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A사령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예정을 발표하였다. A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OOO 대장 ‘갑질 무혐의’ 둘러싼 소문과 진실”, 일요신문, 2017. 10. 28. 하지만 대법원에서 A사령관에 대해 작전 사령관의 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고 보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민단체에 의해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어온 A사령관의 갑질 사건에 대한 민간 검찰에 의한 보완 수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OOO 대장 ‘뇌물’재판 민간법원으로... ‘갑질’ 재수사도 가능.” 연합뉴스, 2017. 12. 13.

15) “법조계, “OOO 대장 직권남용, 부인은 협박·폭행·감금죄””, 한겨레, 2017. 8. 3.

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가맹점에게 추가적으로 금액 부담을 지우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퍼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¹⁶⁾ ○○제약회사 C 회장은 다수의 운전 기사를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것은 물론, 심지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조수석을 발로 찼다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다.¹⁷⁾

6. 부산 여중생 ·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2017년 9월 1일 부산에서는 인적이 드문 한 목재소 공장 인근에서 서로 다른 3개 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중생 4명이 다른 학교 여중생 1명을 철골자재와 소주병, 벽돌 등으로 2시간 넘도록 폭행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초기 언론은 가해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선·후배 사이의 말투 불량을 이유로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추후 경찰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미 두 달 전에 1차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한 2차 보복폭행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당시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CCTV 증거 영상에는 주변에 널브러진 철골자재,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을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13세의 촉법소년¹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가해학생 가운데 2명은 이미 공동폭행과 특수절도로 각각 2017년 4월과 5월부터 보호관찰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호관찰 대상 범죄소년 관리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16) “檢 ‘갑질 논란’ 000피자 000 전 회장 구속기소,” 법률신문뉴스, 2017. 7. 25.

17) “[단독] 000 회장, 운전기사 욕설·폭언… 1년새 3명 ‘퇴사’”, 한겨레, 2017. 7. 13.

18)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림 1-2-4] 부산 여중생 사건 폭행장면



출처 :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보도되면서 2017년 7월 강릉에서 발생한 여고생 폭행사건 제보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7월 17일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여고생 5명이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여고생 1명을 구타한 후, 다시 가해자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7시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서비스(SNS)망을 통하여 폭행 사실이 확산되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강릉사건 피해자의 언니도 해당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이 사건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버금가는 집단 폭행의 잔혹성을 보여주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자취방으로 데려가 7시간 동안이나 집단적으로 폭행하면서 언어폭력과 침뱉기, 가위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라 여러 학교 학생간의 집단 폭행사건이었던 점이 특징적이었다면,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나타냈다.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적 일탈 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향후 학교폭력의 대책은 학교 안팎의 위기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7.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

우리정부는 사드배치가 논의된 2014년부터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안 내렸다’는 이른바 3NO의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북한이 잇달아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한미 정부는 사드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하고, 2016년 7월 8일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경기평택, 경북문경, 전북군산, 경북칠곡 등의 지역주민들과 150여 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은 사드반대 집회·시위를 개최하였다.

〈표 1-2-1〉 사드 배치 주요일지

일자	내 용
2014년 6월 3일 6월 5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사드, 한국 전개 요청했다” 미 국방부, “한국정부, 사드 관련 정보 요청했다”
2015년 2월 4일 3월 9일 3월 11일 4월 17일	창원취안 중국 국방부장, “사드 우려 표명” 국방부, “사드 미사일 구매 계획 없다” 청와대, “사드 관련 3No(요청·협의·결정없음) 입장 재확인” 미 태평양사령관,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 중”
2016년 1월 6일 1월 13일 2월 6일 2월 7일 3월 31일 7월 8일 8월 4일 9월 30일	북한 제4차 핵실험 감행 박근혜 대통령, “안보, 국익 따라 사드 배치 검토”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한미, “북한 로켓 발사로 사드배치 협의 공식발표”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한국 사드 배치 반대표명” 한미, “사드배치 공식 결정(배치 지역 경북성주) 발표” 박근혜 대통령, “사드, 성주 내 다른 지역 배치 검토”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발표”
2017년 2월 28일 3월 6일 4월 26일 5월 9일 6월 7일 7월 4일 7월 28일 7월 29일 9월 4일 9월 6일	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 계약 체결” “사드발사대 2기 및 일부 장비 한국도착” 주한미군, “성주골프장 사드장비 반입”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발사대 반입 경위 조사 지시” “사드 기지 환경영향 평가 범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출범” 북한,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북한, “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문재인 대통령, “미국과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협의 지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정” 국방부, “7일 발사대 4기 성주에 임시배치 발표”

이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인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A씨가 분신을 시도하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경제의 피해도 막심하여 손실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¹⁹⁾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한 대규모 군중집회는 2017년 3월 18일 ‘제1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고, ‘소성리 수요집회’는 2017년 12월 6일까지 총 54차례 개최되었다.

2017년 9월 6일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공식발표하고, 7일 오전 10시 30분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하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약 8000명의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나, 사드배치 반대집회 해산 과정에서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9월 7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10~11일)을 계기로 그동안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²⁰⁾

8. 과학수사를 통한 장기 미제 살인사건 다수 해결

경찰은 2017년은 미제사건 해결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²¹⁾ <표 1-2-2>에서 보듯 총 7건의 장기 미제 살인사건이 해결되었다.

〈표 1-2-2〉 2017년 미제 살인사건 해결 현황

사건명	사건내용
'02년 아산 갯티고개 살인사건	노래방 여주인을 차량에 태워 목 졸라 살해 후 아산 갯티고개에 사체유기
'02년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	구로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 후 금품 강취
'99년 강남 접대부 강간살인사건	택시를 기다리던 접대부를 차량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려가 강간 후 살해
'02년 부산 태양다방 종업원 살해사건	부산 다방 종업원을 통장 등 강취 후 살해, 사체를 인근 해변에 유기
'05년 강릉 60대 노파 살해사건	강릉 60대 노파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살해 후 금품 강취
'03년 원주 맥심다방 여주인 살해사건	원주 다방 여주인을 칼로 찔러 살해 후 다음날 제초제 음독하여 자살
'04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대구 노래방 여주인과 요금문제로 시비 중 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

출처 : 경찰청(2017)

19) 장우애, “중국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 IBK경제연구소, 2017. 2.

20)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 TPY-2 사격통제용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용 유도탄 48발, 기타 지원 장비로 구성된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AN/TPY-2’라는 레이더 때문이다. 이 레이더는 2000km용과 1000km용이 있는데, 미국이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 내부를 감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1) 연합뉴스TV(<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204021800038>), 2017. 12. 5. 한편, 경찰청은 2016년에도 총 3건의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미제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 경찰청은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대거 확충하였고, 현재는 71명의 형사들이 주요 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집중 수사 중인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권역별 프로파일러들이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방향을 설정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²²⁾

미제사건 해결에는 지문 감식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지문감식시스템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쪽지문을 통해서도 용의자의 특징이 가능해졌다.²³⁾ 이를 통해 경찰은 많은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05년 발생한 ‘강릉 60대 노파 살해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현장에 남겨진 포장용 테이프에서 1cm 길이의 쪽지문을 발견했었지만 용의자 특징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017년 7월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개선된 경찰청 지문감식시스템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하였고, 이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였다.²⁴⁾

[그림 1-2-5] ‘강릉 60대 노파 살해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



출처 : 강원지방경찰청

22) 최근 해결된 아산 갯고개 살인사건 재판에서 프로파일러가 작성한 범죄분석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f676a947523543739411d255c97868e5>, 2018. 1. 5. 검색)

23) 쪽지문이란 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을 의미한다. 한편 경찰은 2010년 지문 감정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문 감식의 법적 증명력과 대외 신뢰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24) 2017. 12. 15.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쪽지문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동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미제사건 해결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인력의 증원(71명 → 90명)을 계획하고 있다.

9. 불법촬영의 심각성 확산

2017년에는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명 몰래카메라라고도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과거에도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 SNS, 인터넷 방송을 통해 촬영물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최근 이슈화된 불법촬영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가정집·학원 등에 설치된 IP카메라²⁵⁾ 수천대를 해킹한 후 무단 접속, 침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해당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사례 2.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 위치한 카페 종업원이 스마트폰으로 여성 손님들의 사진을 몰래 찍고, SNS에 해당 여성의 신체를 평가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

사례 3. 인터넷 방송 BJ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 실시간 방송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IT기술의 발달로 불법촬영의 피해 또한 광범위해졌다.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 불법촬영이다. 한편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기존에는 ‘몰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용어 사용이 범죄의식 약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부터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25)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이다. 과거에는 가게, 학원 등에서 주로 설치하였으나, 최근에는 육아 등을 이유로 가정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드러내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을 포함한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7년 9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 달간 △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단속, △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 불법 촬영 유형 음란물 등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9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종합대책을 통해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접근,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알리는 가짜 영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법촬영물 유통 감소를 유도하는 ‘스톱 다운로드킬(Stop Downloadkill)’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해당 영상은 여타의 불법촬영물과 유사하게 시작하나, 영상 중간에 자살한 여성의 모습과 함께 ‘물카에 찍힌 그녀를 자살로 모는 건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일 수 있다’는 문구가 등장, 불법촬영물을 보는 사람들도 공범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0. 이영학 여중생 살인 사건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추행의 목적으로 딸 A를 시켜 자신이 지목한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환각, 환청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하여 잠을 재웠다. 즉, 미리 향정신성의약품 자양강장제 드링크에 타 넣었고 딸 A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다음날인 2017년 10월 1일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녹인 물을 피해자의 입으로 흘려 넣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대형 캐리어에 집어넣은 후 SUV 차량을 타고 이영학의 모(母)가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하여 인적이 드문 100m 높이의 낭떠러지를 찾아 사체를 던졌다.

이후 이영학은 딸과 함께 형이 렌트해준 차량을 갈아 타고, 친구 B가 구해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에서 숨어서 지내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영학의 임상심리평가 중 실시된 지능검사 및 피고인의 과거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평균 ‘하’ 수준임이 확인되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 또한 이영학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그는 자제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의식이 강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성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에 의하면, 사망한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욕을 해소해 왔는데 이런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압수된 컴퓨터하드디스크,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적 취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집착을 보이며 또한 변태성욕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줄 아내가 사망하였다. 이에 아내를 대신하기 위하여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와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한 가학적 성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해한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실종 신고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향후 실종에 관한 입법적 대응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 집

경찰개혁의 논의와 방향

I. 경찰개혁의 목표	24
II. 경찰개혁위원회 활동과 논의 과제	26
III. 추진 방향	41



I. 경찰개혁의 목표

1. 경찰개혁의 필요성

그 간 경찰은 수차례 국민중심의 경찰활동을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 등 외부여건에 좌우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중심의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대내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개혁의 경우 수사구조개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수사권 조정 등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 개혁을 통한 인권 친화적 경찰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상황으로, 경찰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법무부,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 개혁의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2. 경찰개혁의 목표

이번 경찰개혁은 “경찰다운 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수행의 주요한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경찰권 행사과정에서의 권한남용과 일반 시민의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 종종 잘못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이에 “경찰의 존재이유와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경찰 활동의 초점을 맞춘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26) 경찰개혁의 논의와 방향은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권고내용에 대한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은 “국민의 권리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고 통제” 하는 것이다. 적정한 경찰권 행사를 통해 인권과 국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모델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기관 내부의 민주화·투명화와 함께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치안행정 시스템의 인권중심 개편, 시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경찰권의 분산·통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의 관행·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논의와 함께 미래 경찰의 발전 모델을 제공하여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서고자 하는 것이다.



II. 경찰개혁위원회 활동과 논의 과제

1. 위원회 출범 및 주요 활동

2017년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권·수사·자치 등 3개 분과에 외 부전문가 각 5명씩 총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회의는 2주에 1회 개최하고, 분과 회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였다. 과제별 분과회의에는 경찰청 담당자가 참석하여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함으로써 권고내용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주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총 17회의 전체회의와 59회의 분과회의를 거쳐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20건의 권고안을 의결하여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35회에 걸쳐 전국 지방경찰청을 순회 방문하여 각 지역별 노조 및 의견그룹, 의경, 정보관, 여경,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이버경찰청,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총 145건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19일에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원칙’ 등과 함께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 주요 논의 과제

「경찰개혁위원회」는 위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총 20건의 경찰개혁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 권고안들은 다음과 같은 대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과거에 대한 반성 및 성찰을 주문하고 있다. 경찰개혁, 특히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서는 그 간 경찰이 걸어온 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찰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난 촛불집회 대응과정을 세세히 살펴, 앞으로의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권 비대화에 대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

하고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 등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통제장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비와 수사 등 치안행정 분야별로 인권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경비·수사 분야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집회시위 대응의 개선’, ‘수사제도 및 절차의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선’, ‘인권경찰의 제도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경찰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의 마련도 주문하였다. 진정한 경찰개혁 달성을 위해 내부의 인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경찰관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시켜 지방분권의 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고, 권한의 분산과 통제를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찰개혁을 위한 주제별 논의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고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권고안 주요 내용

1)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인권보호 분과)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유사사건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청에 둔다.

-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 진상조사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민간조사관들과 경찰조사관들을 두되, 조사관 규모나 선정방법, 조사대상 사건, 조사진행방식, 조사진행순서, 조사기간 등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결정한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2)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수사개혁 분과)

- 경찰 내사·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 ① 조사 일시·장소 사전 협의
- ② 의뢰인 옆에 동석 보장
- ③ 조사 중 조언
- ④ 조사내용 기록
- ⑤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 위법·부당한 수사나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이의 진술 등 변호인의 발언권 보장
- ⑥ 전항의 의견과 이의 진술시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
- ⑦ 휴식권 보장
- ⑧ 피혐의자·참고인 등 모든 조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적용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유관기관, 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수사개혁 분과)

- 경찰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정 영상녹화를 실시함에 있어 「의무적 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한다.

- ▶ 현재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 중 의무적 녹화 대상
 - ① 체포·구속 피의자(즉시 석방 시 생략 가능)
 - ② 살인·성폭력·증수뢰·선거범죄
 - ③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 ▶ 확대 대상(案) : 강도·마약,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와 인권침해 시비가 예상되는 사건,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사건

-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술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를 도입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단계적·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4)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수사개혁 분과)

- 장기간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내사·수사에 착수한 후 일정 기간(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이 경과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시행한다.
-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5)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 백서 발간(인권보호 분과)

-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2017년 4월 29일 23차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집회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한다.
-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 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백서에 포함한다.
-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비교해서 백서에 첨부한다.

6)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수사개혁 분과)

- 경찰 수사절차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개선·보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한다.

- ①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 ② 서면수사지휘 원칙 이행력 확보
- ③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정비, 향후 외부 독립기구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강화
- ④ 수사관여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의견서에 의무적 기재

-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직무방해죄(가칭)’를 도입하고, “친절하게 조사해 달라”는 등 사소한 청탁까지도 필요적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7)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인권보호 분과)

- 집회·시위 ‘관리’, ‘대응’에서 집회·시위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 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정책, 지침, 매뉴얼에 반영한다.
- ②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시위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 ③ 일부 참가자의 산발적 폭력이나 경미한 범법이 있다 해도, 그 책임을 평화적인 의도와 태도를 견지하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 ④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경우에 신고절차나 진행과정에서의 사소한 흠결에 대해서는 경찰권 행사를 절제한다.
- ⑤ 집회시위 인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 ⑥ 경찰은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 ① 『집회·시위신고의 변경절차』를 마련한다.
- ② 현행 옥외집회·시위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집회·시위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경우, 경찰서 한 곳에 신고해 처리하는 간소화 절차를 마련한다.

- 금지(제한)통고 및 조건통보 기준 명확화

- ①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회·시위 금지(제한)통고·조건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그 기준을 공개한다.
- ② 기준 제정 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 집회·시위대응절차 개선

- ① 집회·시위현장에서 살수차를 배치·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찰인력이나 장비로서는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할 때에만 배치·사용한다.
- ②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과격 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한다.
- ③ 채증은 집회·시위현장에서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했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 ④ 집회·시위현장을 차벽이나 경찰 인력으로 둘러싸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 ⑤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집회·시위장소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질서유지선이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 해산절차의 개선

- ①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에 따른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해산명령 후에는 자진해산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동안 다시 해산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재차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종전 해산명령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고지한 후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
- ③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했지만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직접 해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직접 해산을 할 때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기타 내용

- ① 보호복 등에 소속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다.
- ②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집회·시위참가자들에 대한 법집행은 신중하여야 한다.
- ④ 집회·시위 관련 성과관리원칙을 재검토한다.
- ⑤ 집회·시위 시 통신내용은 녹음하여 일정기간 보관한다.
- ⑥ 집회·참가자를 입건해서 수사하는 경우 DNA를 채취하지 않는다.
- ⑦ 교통CCTV는 집회시위 현장 주변의 교통 관리용으로만 활용하고,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 또는 개인 식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⑧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8)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수사개혁 분과)

- 경찰의 인권침해 및 직무상 비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통제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 모델을 기반으로 시민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또는 ‘경찰인권·감찰 위원회’ 설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9)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마련(수사개혁 분과)

- 긴급체포 시 사후 체포영장 청구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 승인없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별도의 전담인력(가칭 '영장전담관')을 둔다.
- 공소 제기 전 구금기간을 최장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즉시 구치소에 구금한다.

10)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수사개혁 분과)

-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 ① 유치인 보호를 수사기능에서 분리
- ②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 ③ 외국인·여성·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 특수한 성격 고려
- ④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구
- ⑤ 영양·위생을 고려한 음식 제공
- ⑥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준용
- ⑧ 유치장시설 현대화

11)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수사개혁 분과)

-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권고내용을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에도 반영하여 인권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① 수사부서 사무환경은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조사공간은 피조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개별 조사실로 설치한다.
- ② 일부 조사실은 성폭력·가정폭력,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2차 피해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 설치한다.
- ③ 영상녹화실을 부서별로 충분히 설치하고, 보안성이 검증된 진술녹음 시스템도 구축한다.
- ④ 변호인 접견실을 충분히 설치한다.
- ⑤ 설계기준이 실제 운영에서도 퇴색되지 않도록 개선된 사무환경 하에서의 구체적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한다.

12)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인권보호 분과)

-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청은 수용여부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검토 및 보고한다.
-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로 채용한다.
-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법령·훈령·예규 및 주요 정책의 시행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3년 단위의 중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교육 체계 정비, 기능·직책에 맞는 인권교육을 개발하고, 전 경찰관이 수료하도록 한다.

13)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방안 마련

- 다음과 같이 수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① 전화조사 원칙적 지양
- ② 최종의견진술기한 통지
- ③ 송치사실·송치일자·송치의견 등 통지 원칙
- ④ 수사확대 암시·먼지털이식 수사로 자백 유도 금지 등

- 피의자 등의 자기변호노트 및 변호인의 기록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

- 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②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여성용품 등 편의시설 및 비상약, 기본적 의료보조기구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

-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노력한다.

- ① 조사대상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외국인은 외국어 진술서 작성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 ③ 전문통역인을 위촉한다.
- ④ 외국인 조사 전 영상녹화를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 외국인요청 시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⑤ 피의자나 피해자 등의 권리 및 형사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주요 국가 언어로 개발하여 조사시 교부한다.

14)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인권보호 분과)

-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사후 지원까지 위기개입 모델을 마련하고, 위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담당한다.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
-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 유관 부처 및 관련 단체 협조 강화, 예산 낭비 문제·복잡한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

15)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인권보호 분과)

-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및 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인 소속기관에 두고,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한다.
- 경찰관의 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다.
- 직장협의회 관련법이 통과,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관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등이 가능하도록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소통기구(가칭 '경찰관협의회')를 즉시 운용한다.

- 향후 경찰관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위 권고 수용을 위해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TFT'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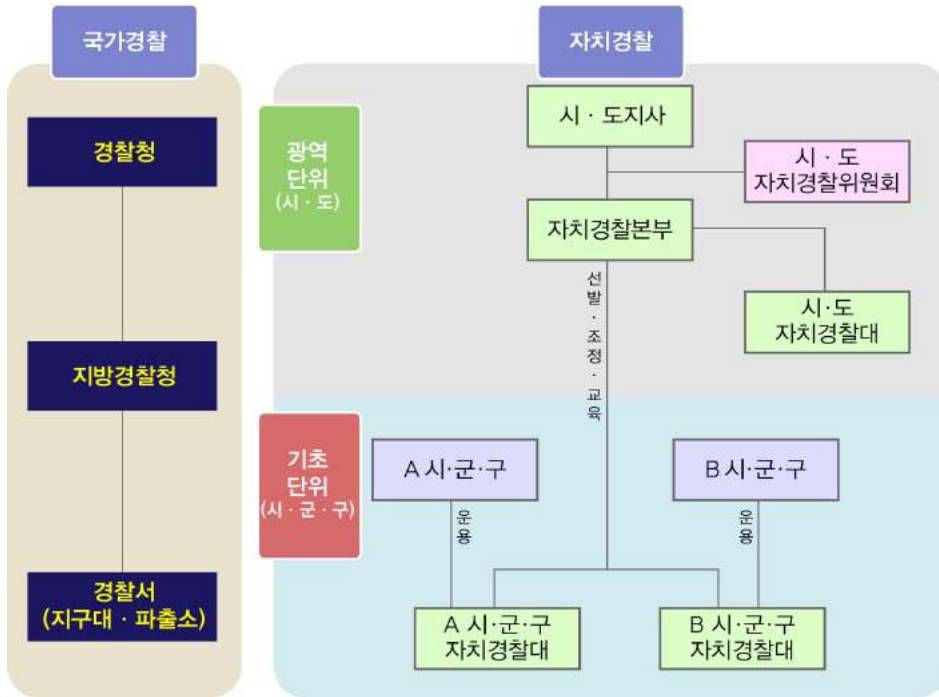
16)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방안(인권보호 분과)

- 성별 분리 모집의 관행을 폐지하고, 2020년부터 성별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실시한다. 통합모집을 위해 구체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체력을 측정하는, 성별구분 없는 일원화된 기준을 개발한다.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 비율은 우선 폐지한다.
- 승진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주요 보직 배치시 여성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등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다.
-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성평등 및 업무전반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한다.
- '성평등위원회 및 총괄부서' 구성 전까지 성평등 관련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권고안 이행을 지원하는 '성평등 TFT'를 즉각 구성한다.

17)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자치경찰 분과)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 자치경찰의 조직



- 자치경찰의 사무

- ①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②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③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⑤ 주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특별사법경찰 사무 외 일부 일반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등 다음의 직무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

※ 아래 수사 대상 중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지방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 범죄
- 단순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직접 수사·송치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
- 납치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에 대한 수사업무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보유한다. 다만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3배수를 선발한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후보자 중에서 1인을 임명한다.
- 자치경찰 인력은 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일괄 선발하고, 이를 시·도지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산하 시·군·구에 배치한다.
- 자치경찰의 처우는 보수·수당·근속에 있어서 국가경찰에 비해 불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경찰이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모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총괄 담당하되,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영역에 대한 신고는 국가경찰-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며, 치안서비스 제공 요청 등 경미한 신고는 자치경찰이 우선 대응한다.
- 성매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국가경찰-자치경찰 합동단속이나 형법·특별사법경찰 경합범죄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국가경찰의 업무역량을 자치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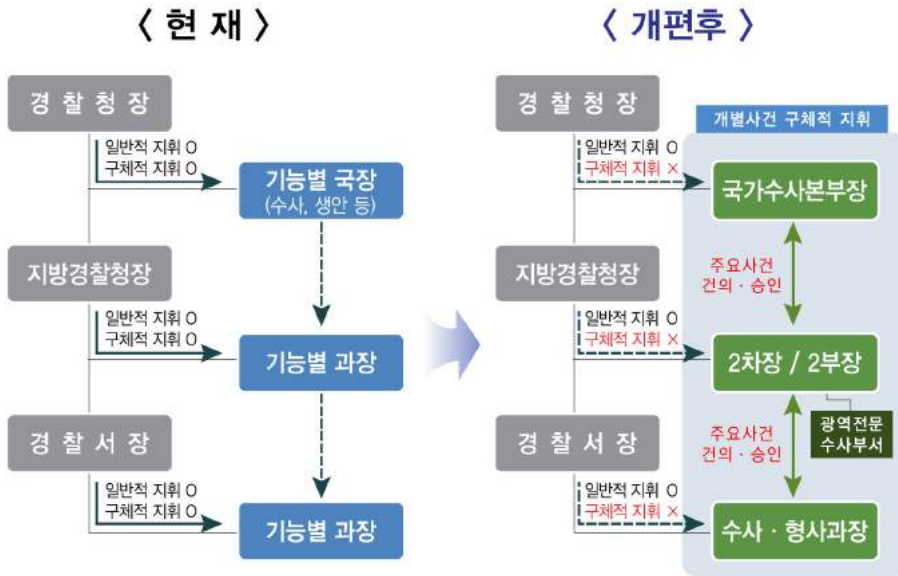
18) 경찰위원회 실질화(인권보호·수사개혁 분과)

- 『경찰개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경찰위원회의 법적지위, 구성, 임기, 권한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권고하였다.

구분	기존	변경
지위	행안부소속 정부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구성	▶ 총 7명(대통령 임명) ▶ 위원장은 차관급	▶ 총9명(국회 3, 대통령 3, 대법원장 3명씩 지명해 대통령 임명) ▶ 위원장은 장관급(국회 인사청문)
임기	단임 3년	단임 4년
권한	▶ 주요 정책 심의·의결권 ▶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	▶ 주요 정책 및 업무 계획 심의·의결권 ▶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권 ▶ 총경 이상 승진·경무관 이상 보직인사 심의·의결 후 제청권 ▶ 경찰 인사정책 및 인사운영기준의 심의·의결권 ▶ 인권침해소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시정요구권 ▶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 부당 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19) 수사의 공정·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수사개혁 분과)

-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를 대비하여, 수사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가 차단되도록 ‘조직 개편’과 ‘제도적 차단’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 수사부서의 조직 개편방안으로 개방직·임기제(3년 단임)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부서를 총괄 지도·조정하고, 경찰청의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청의 광역전문수사를 강화하고, 경찰서는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하도록 권고하였다.



- 제도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 ① 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
- ② 관서장의 수사경찰 인사·감찰권을 제한하면서 관서장에게 실질적 인사권, 수사 관련 감찰·징계요구권 등을 부여
- ③ 강화된 수사경과제를 적용하고,
- ④ 경찰위원회·외부통제기구와 협력을 강화
- ⑤ 내·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직무방해죄(가칭)’ 도입
- ⑥ 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별도의 전담인력(가칭 ‘영장전담관’)을 두어 강제 수사 관여 차단

20)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방안(수사개혁분과)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한다.

- 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폐지
 -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 및 보완수사 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
 -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관의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
- ③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구 삭제
- ④ 개헌 전이라도 형사소송법에 '이의제기' 절차 마련하거나, 경찰청 소속의 '(가칭)경찰영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Ⅲ. 추진 방향

1. 제도적 기반 마련

향후 『경찰개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찰개혁에 필요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며,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내외공감대의 형성, 입법화 과정에서의 준비·지원 등 경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제·개정 작업 등을 통해 경찰개혁 활동이 일회성 작업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향후 관련 입법 검토사항 ■

① 경찰권 비대화에 대비한 통제장치 마련

- 경찰위원회 실질화(경찰법)
- 경찰 인권·감찰 ombudsman 설치(신규법을 제정)
- 국가수사본부장 신설·경찰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경찰법)
- 수사직무방해죄 도입(형법)

② 경비/수사분야의 인권보호 강화방안 개선

- 집회시위 신고제도 개선(집시법)
- 변호인참여권 실질화·진술녹음제 도입·경찰단계 구속기간 축소 등(형사소송법)
- 부당한 수사지휘 차단(경찰법)
- 범죄피해자보호(범죄피해자보호법)

③ 경찰조직 내부의 인권 개선방안

- 직장협의회 설치(공무원직장협의회법)

④ 수사구조개혁

- 검사의 수사 및 지휘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제한(형사소송법)
- 영장청구권 개선(헌법)

⑤ 자치경찰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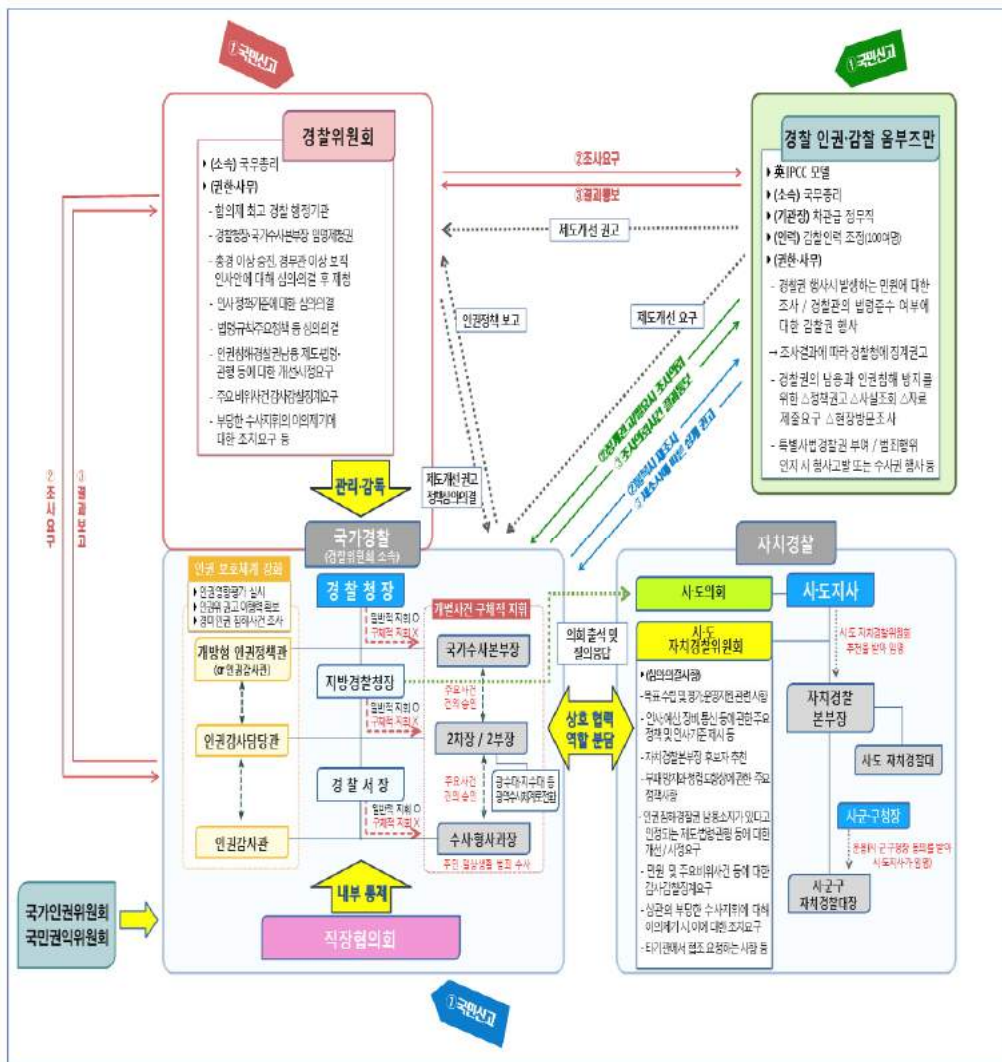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자치경찰법 제정)

2. 기대 효과

이번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경찰권 행사과정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경찰 조직에서 개혁의 효과가 불가역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경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권교육의 강화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인권 지향적 경찰 조직 구성 및 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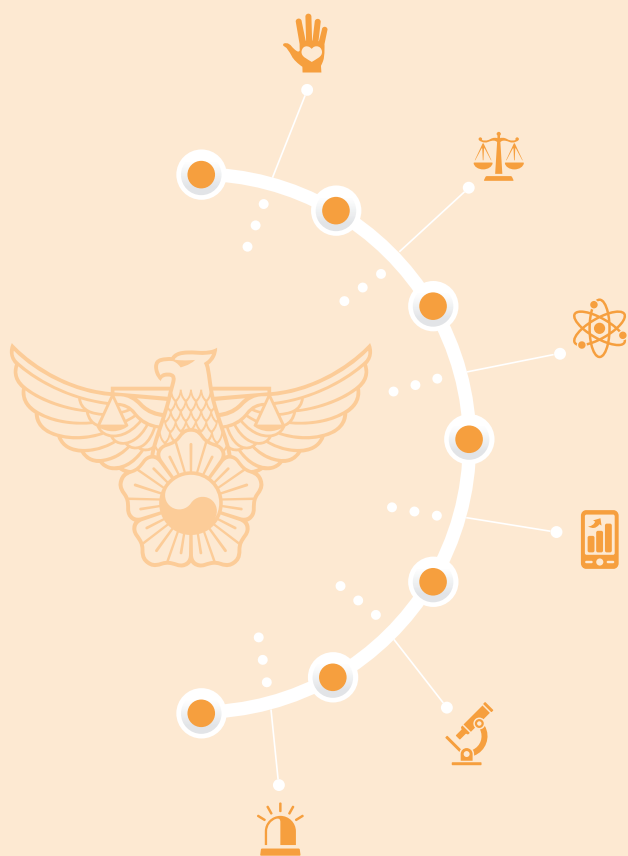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





치안전망 2018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제2장

치안환경의 변화

I. 치안환경분석의 전략적 접근	46
II. 미래치안환경의 변화	50
III. 전략적 치안환경 전망	59

I. 치안환경분석의 전략적 접근

1.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및 고려요소

불확실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접근은 불확실한 환경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조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한 목표와 비전 수립에 필요하며, 조직은 수립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 3년간 치안환경에 대하여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치안환경 분석비교

구분	치안전망 2015	치안전망 2016	치안전망 2017	공통이슈
인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다문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가능 인구 감소 지역별 인구구조 체류외국인 증가 남북한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인구 증가 체류외국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형성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안전 불안감 증가 범죄피해 두려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사회진출 확대 다문화 증가 해외여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양극화 심화 다문화 확산 부정적인 인식 확대 세대 간 갈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정한 심리 작용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성장 지속 빈부격차 심화 실업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회복 둔화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경제 상황개선 국내경제성장 둔화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률 증가 양극화 심화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환경 인터넷 금융 거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환경 금융보안 강화 사물인터넷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범죄 증가
재난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난 인적재난(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난 사회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난 사회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재난 증가

구분	치안전망 2015	치안전망 2016	치안전망 2017	공통이슈
국제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국제질서 불안정한 국제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안보정세 불안 동북아 정세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안보정세 불안 동북아 정세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정한 안보정세

인구구조 분야에서는 고령인구, 1인 가구, 다문화가정의 증가, 체류외국인의 증가를 주요 치안환경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범죄피해두려움의 증가, 사회 양극화, 세대간 갈등 등을 치안환경 변화요인으로 보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성장 둔화, 소득양극화, 높은 실업률 등을 주요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모바일 사용 환경 조성, 인터넷 금융거래 활발, 사물인터넷(IoT) 확산 등을 치안환경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재난재해 분야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인적·사회재난의 발생을 제시하였고, 국제정세 분야에서는 불안정한 국제환경과 안보정세를 주요 치안환경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치안전망 2018』에서는 [그림 2-1]과 같이 인구구조, 경제, 과학기술, 재난재해, 국제정세, 과학기술 외에도 교육 분야를 치안환경 변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쟁적 교육환경과 인성교육의 부재로 청소년 범죄행태는 과거와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 치안환경 요인



2. 2017년 사회적 사건과 치안환경

2017년에 발생한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에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생애과정에서 사회문화 환경 및 경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없을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정의된다.²⁷⁾ 또한, 취약계층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한 계층”으로 규정되고 있다.

주요 취약계층 대상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노숙인 등으로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취약계층에 주목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이 범죄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집단은 사회적 취약성이 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Killas(1990)는 취약성과 범죄의 관계를 신체적, 사회적, 상황적으로 구조화하여 그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²⁹⁾

〈표 2-2〉 Killas의 취약성과 범죄의 개념틀

구분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결과의 심각성	통제의 어려움
신체적 요소	▪ 학대, 성폭력의 위험 노출	▪ 여성(성폭력) ▪ 노인 및 아동학대	▪ 여성/노인/영유아 ▪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
사회적 요소	▪ 위험한 직업 종사자	▪ 사회적 지원이나 자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피해자가 홀로 있는 경우 ▪ 평판에 대한 이유로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경우
상황적 요소	▪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	▪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공식적 혹은 자연적·기계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인적이 드문 곳

출처 : Killas(1990); 홍창민(2009)

27) 방하남 외,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2012. 3쪽.

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17.

29) Killas, M.,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 Vol. 5, 1990, pp.97~108; 홍창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계층적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4쪽 재인용.

취약계층은 어떤 유형으로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신체적, 경제적, 정보적 취약계층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³⁰⁾

〈표 2-3〉 취약계층 유형

구분	특징
신체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등 정신질환자 등(정신적 취약계층으로 세부 분류됨)
경제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위험 직종군 등
정보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소외자(노인, 농어촌 지역 등), 저학력자, 아동 등

출처 : 유연정(2008)

2017년에 발생한 주요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표 2-3〉과 같이 세 가지 취약계층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및 살인 사건 피해자는 여성으로 신체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신체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창원 골프장 살인사건’의 범죄가해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과 ‘부산과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은 범죄가해자(청소년)와 피해자(영유아/청소년)가 신체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4〉 2017년 사건사고의 취약계층 유형

구분	사건사고 개요	취약계층 유형
데이트 폭력 및 살인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논현동 데이트 폭력 및 살인사건(1.9) 서울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7.18) 	신체적 취약계층
영유아 살인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3.29)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9.30)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납치 및 살인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 골프장 살인사건(6.24) 	경제적 취약계층
집단 폭행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7.17)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9.1) 	신체적 취약계층
사이버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촬영 및 CCTV 해킹 	정보적 취약계층
갑질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사건 	경제적 취약계층

30) 유연정,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한 국위기관리논집, 제4권 제2호, 2008, 27쪽.

Ⅱ. 미래치안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통계청(2017)은 2020년까지 인구추이를 분석한 결과, 0~14세 연령층은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는³¹⁾ 104.8에 이르고 있다.



출처 : 통계청(2017)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노인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빈곤, 질병, 무위, 고독(우울증 등) 등이 현저히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에 의하면, 2014년까지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이 올라갈수록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노인의 병리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²⁾ 따라서 국내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들이 정서적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빈곤을 겪으면서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양상이다.³³⁾

31)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32) 김경래 외,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39쪽.

〈표 2-5〉 노인 범죄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력범죄	759	818	1,062	1,208	1,376	1,539
절도	4,193	4,027	4,419	5,455	7,223	9,500
폭력범죄	13,390	14,076	14,216	14,030	18,261	19,746
지능범죄	12,960	12,242	13,248	1,789	14,659	15,273
풍속범죄	1,831	1,742	1,719	1,789	2,140	1,905
합계	33,133	32,905	34,664	24,271	43,659	47,963

출처 : 경찰청(2017)

2017년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노인 대상 범죄는 총 56만여 건으로서,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36만여 건은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19만여 건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2-6〉 노인대상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총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총계	85,303	43,842	89,731	47,098	95,748	51,180	96,643	52,640	367,422	194,760
	129,145		136,829		146,925		149,283		562,182	

출처 : 이재정 의원실(2017)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5년도 1인 가구 비율³⁴⁾은 27.2%로 조사되었는데, 2017년에는 28.5%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인 가구 비중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33) “70세 이하 ‘젊은 노인’ 범죄 급증 … 성범죄는 4년새 2배나 증가”, 한국경제, 2017. 10. 26(<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02666311#AA.15.056432>, 1, 2017. 12. 13 검색)

34) * 1인 가구 비율 =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율을 의미

** 일반가구는 (가)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나)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이하 가구), (다)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 가구)를 말함

*** 2017년부터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임

〈표 2-7〉 연도별 가구수 비중 추정

(단위 : %)

구분	2015	2017	2025	2035	2045
1인	27.2	28.5	31.9	34.6	36.3
2인	26.1	26.9	30.5	33.4	35.0
3인	21.5	21.4	21.0	20.2	19.8
4인 이상	25.2	23.2	16.6	11.8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계청(2017)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가족 가치의 약화, 개인주의 심화, 미혼율 증가, 고용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 구성원에 비해서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 경제적 불안정 등의 심리적 병리현상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1인 가구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⁶⁾

〈표 2-8〉 1인 가구 심리불안 요인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1+2순위)	
	1순위	1+2순위	남	여
외로움 등 심리적 요소	23.1	46.2	52.8	37.6
안전/위험요소	19.0	34.4	19.3	54.1
거강	17.3	36.3	40.2	31.3
식사 해결	15.1	28.3	37.0	16.9
안정적인 직업	13.5	22.7	18.3	28.6
주거 및 생활환경	8.1	21.2	19.3	23.7
주위로부터의 시선	3.3	8.7	10.8	6.0
없음	0.5	0.5	0.5	0.6

출처 : KB 연구보고서(2017)

우리나라 인구구조상의 특징은 노인과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인과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피해 취약계층으로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35) “1인 가구 증가 원인 가족 가치 약화, 노후는 자녀와 함께는 7%”,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4. 8. 8(http://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1010301&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46024&currPageNo=72&confId=4&conConfId=4&conTabId=27&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2017. 12. 15 검색).

36)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KB연구보고서),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7. 12쪽.

2. 실업률 감소 및 양극화정체(경제)

2018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관련하여 국책은행과 민간연구소의 전망은 엇갈린다.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국내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은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³⁷⁾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관별로 상이한 예측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 복지확대 등이 민간 소비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은행은 정부정책의 효과로 인해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반면 현대경제연구원 및 LG경제연구원은 민간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업 혹은 가계에는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실업률과 양극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망하기 매우 어렵지만, 2017년까지 지속되어 오던 실업률과 양극화 현상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9〉 기관별 2018년 경제전망

구분	주요내용
한국은행 (201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률 : 2.8%(’17) → 2.9%(’18)로 세계경제회복세와 민간소비증가세로 경제성장률이 보일 전망 실업률 : 3.8%(’17) → 3.7%(’18)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고용률 : 60.8% → 61.2%)
현대경제연구원 (201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로는 '17년도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 2.7%(’17) → 2.5%(’18) / 실업률 : 3.8%(’17) → 3.8%(’17) 하지만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여건 개선 등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로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LG경제연구원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률 : 2.8%(’17) → 2.5%(’18) 실업률 : 3.8%(’17) → 3.7%(’18)

37)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7;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경제주평, 통권 764호, 2017; LG경제연구원,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2017.

3. 경쟁적 교육환경과 인성교육의 부재(교육)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갈수록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정서조절과 스트레스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존감을 상실하여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살 혹은 우울증 등 심리적인 병리현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³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 및 성취위주의 학업환경과 함께 청소년들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물질주의적 가치에 따라 상호 경쟁을 조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개인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할수록 우울, 불안, 행동장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신병리 증상을 더 경험하게 된다.³⁹⁾ 특히 청소년들은 성장기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퇴보하는 성향이 성인보다 더 크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 안전 의식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 안전 의식은 ‘불안’이 41.8%, ‘비교적 불안함’이 31.0%, ‘매우 불안함’이 10.8%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0〉 청소년들의 사회 안전 의식

(단위 : %)

구분	계	안전	매우 안전함	비교적 안전함	보통	불안	비교적 불안함	매우 불안함
13~24세	100.0	15.9	2.5	13.4	42.3	41.8	31.0	10.8
남자	100.0	20.7	3.7	16.9	47.3	32.0	25.0	7.0
여자	100.0	10.9	1.2	9.7	37.2	51.9	37.3	14.6
중학생	100.0	23.3	4.6	18.7	47.7	29.0	22.5	6.5
고등학생	100.0	16.9	2.8	14.1	46.2	36.9	29.4	7.5
대학생	100.0	15.6	1.9	13.7	41.5	42.9	31.6	11.3

출처 : 통계청(2016)

지난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 불안요인은 범죄발생

38) 조성호 외, 인성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 경기도청, 2015.

39) 김유나 외,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 2017, 240쪽.

이 40.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국가안보(16.1%)’, ‘도덕성 부족(11.1%)’ 순으로 조사되었다.⁴⁰⁾ 2017년 후반기에 발생한 ‘부산지역의 여중생 집단 폭행’,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그리고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은 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안 요인을 제공하는 사건들이다.

〈표 2-11〉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불안요인

(단위 : %)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기타
2016년	16.1	2.5	4.6	4.9	10.8	11.1	4.2	40.8	4.1	0.9

출처 : 통계청(2016)

4. 복합적 재난과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재난재해)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80여명의 인명피해와 136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유시설 1322개소(주택, 반파, 지붕 등)와 학교·문화재 등 공공시설 399개소가 파손되었다.⁴¹⁾

포항지진의 위력은 2016년에 발생한 경주지진에 비해 훨씬 작았음에도 부상자 등 피해는 경주 때보다 훨씬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자 23명인 데 비해 포항지진 부상자는 세 배가 넘는 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이틀 동안 1115건이 접수된 데 비해 포항은 1300여건이 신고 되었고, 문화재 피해도 23건이 접수되었다. 포항지진이 경주지진보다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밀집도에서 찾을 수 있다. 경주지진의 진앙지인 경주시 내남면은 122km² 면적에 5181명이 거주하였으나 포항지진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은 105km² 면적에 인구 3만 5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²⁾

복합재난은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과 달리 정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한다.⁴³⁾ 복합재난은 약탈, 폭행, 절도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40)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 통계, 2017. 4. 18 보도자료.

41) “경북 포항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보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11. 19(http://www.mois.go.kr/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3336&nttId=60587, 2017. 12. 15 검색).

42) “포항지진 피해가 경주지진보다 큰 5가지 이유”, 한겨레, 2017. 11. 17(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533.html, 2017. 12. 13 검색).

있고, 그 정도가 심화되면 치안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포항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 북한의 위협 및 갈등(국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및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은 지역주민들의 갈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의 정치적 갈등의 장소가 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 지속은 필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북한 위협(RISK)’의 상승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불확실성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면 기업들은 투자결정을 멈춘 채 사태를 관망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⁴⁴⁾

〈표 2-12〉 북한 위협(RISK)에 따른 정치·외교와 경제의 불안요소

구분	주요 내용
정치·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변화되고 있음 북한의 ICBM급 북한 탄도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임 미국은 중국을 지역 패권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을 압박하는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으로 전환→북한을 앞세워 중국 압박함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대화 또는 압박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내부 갈등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로 (비공식)보복을 하고 있음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는 그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학습효과로 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영향을 받아 왔음→이전의 북한의 리스크는 한국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음 하지만, 현재 북한의 리스크는 당장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면 기업의 투자나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새로운 정부 이후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는 만큼 북한의 리스크는 금융부문과 부산 자산거래, 소비심리에 이르기까지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출처 : KDI(2017)

43) Berrebi & Ostwald, Earthquakes, Hurricanes, and Terrorism: Do Natural Disaster Incite Terror?, RAND Labor and Population, 2011.

44) 조남훈,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경제적 파급효과, KDI 북한경제리뷰, 2017.

6. 사이버공간의 발달과 치안영역의 확대(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2차 정보화가 이슈화 되면서, 우리사회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일 상생활에 미칠 영향도 크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⁴⁵⁾

2017년 6월에 국내 웹호스팅업체를 목표로 한 사이버테러는 랜섬웨어의 위협에 대 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7년 1분기는 다양한 신규 랜섬웨어뿐 아니라, 변종 랜섬웨어들이 계속 등장했다. 이를테면, 1월은 크립토실드(CryptoShield) 변종, 2월은 세이지(Sage), 3월은 페트랩 (PetrWrap), 리벤지(Revenge)가 대표적인 신종 혹은 변종 랜섬웨어이다. 랜섬웨어들 의 특징으로는 소위 ‘한국형’이라고 불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UI를 가진 랜섬 웨어와 국내 웹 사이트들을 악용한 DBD(Drive-by Download) 형태의 유포과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랜섬웨어들은 MS-Word 문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HWP 파일 등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유포되며, 사용자가 국내 웹 사이트나 웹 광고 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되는 등 유포방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불법촬영의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경남지방청은 2016 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1600대의 IP카메라⁴⁶⁾를 해킹하여 은밀한 사생활을 훑쳐보 고,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 30대를 검거하였다.⁴⁷⁾ 6월에는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 근무한 직원이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불법촬영한 사진은 SNS를 통해 각종 커뮤니티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 었다.⁴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6년 7월과 8 월에도 실시간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생중계한 것으로 밝혀졌다.⁴⁹⁾

45) 이호영 외, ICT기반 사회 현안해결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46) IP(Internet Protocol)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이다. 과거에는 가게 및 학원에서 주로 설치하였으나, 최근 육아 등을 이유로 가정집에 많이 사용하고 설치도 증가함.

47) “사생활 훑쳐보고 촬영하고… IP카메라 해킹한 30명 입건”, 뉴스1, 2017. 11. 2(http://www.huffingtonpost.kr/2017/11/01/story_n_18443668.html, 2017. 12. 15 검색).

48) “‘제주 협재 카페 도촬’ 일반인 상대 무차별 촬영..대책시급”, 미디어 숲, 2017. 8. 29(<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0>, 2017. 12. 15 검색).

49) “해운대 비키니 여성촬영 인터넷 생중계 BJ검거”, 오마이뉴스, 2017. 8. 17(<http://www.ohmynews.com/>

사이버 공간의 발달은 경찰 치안영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랜섬웨어, 불법촬영이 발생하면서 예방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에 관해서는 국회가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과 보복성 성적 영상물의 유포 등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향후 지능정보사회는 사이버 공간을 더 발달시킬 것이고, 사회적으로 보안영역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은 랜섬웨어, 불법촬영 등 새로운 치안영역의 확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Ⅲ. 전략적 치안환경 전망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저소득층 증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는 실업률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리스크는 불안정한 외교와 안보를 형성하여, 국내 경기에 불확실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전환되고,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구성원의 활동은 더 활발해지며, 공간영역은 더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치안활동도 이러한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즉 치안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치안활동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신체적, 정보적 취약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증가, 1인 가구 증가, 노령화, 젠더 문제 등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노인범죄, 범죄 두려움 증가 등이 증폭될 것이다.

국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경제의 성장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경제는 기존에 형성된 경제적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실업률 및 양극화 현상을 이끌 것이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경쟁적이며 개인적인 성향과 인성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청소년 범죄가 더욱 더 흉포화되고 범죄에 대한 죄의식은 줄어들 것이다.

재난재해 분야에 있어서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과 크레인 붕괴사고, 낚시배 전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등이 함께 일어나는 복합재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복합재난은 정부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확산적 재난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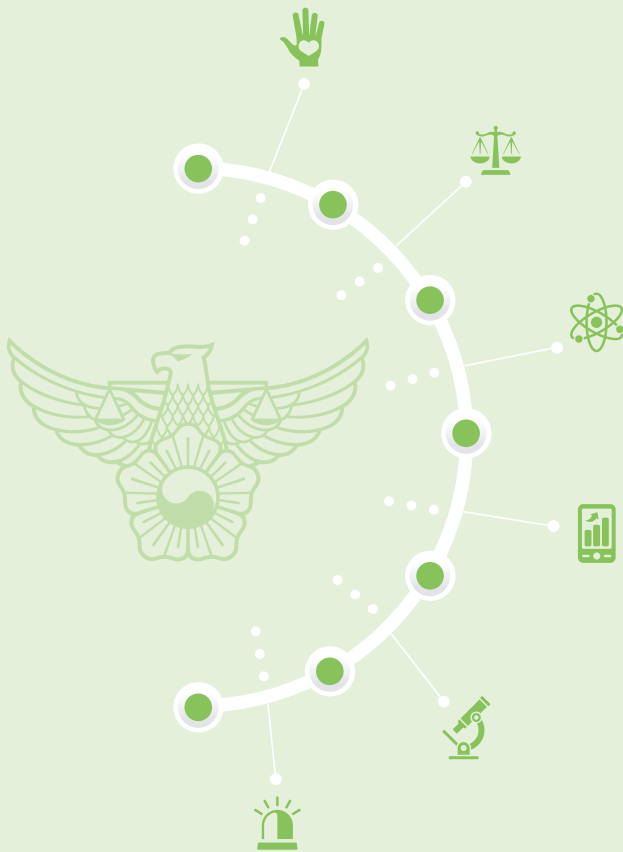
국제정세 분야에 있어서는 평창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의 테러 불안, 북한 핵문제 등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제 정세의 불안은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게 되고, 이에 따른 진화된 새로운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경찰활동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치안환경에 대한 치안정책은 맞춤형 경찰활동과 더불어 취약계층별로 범주화하여 치안활동 기능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재배열하는 전략적 치안으로 전환할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치안전망 2018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제3장

2018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범죄수사 분야 전망	65
제2절 생활안전 분야 전망	125
제3절 교통분야 전망	153
제4절 사회안정 분야 전망	169
제5절 보안·외사분야 전망	181





제1절 범죄수사 분야 전망

I. 2018년 범죄 발생 전망	66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83
III. 지능 범죄 전망	95
IV.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대응 역량강화	103
V. 사이버범죄 전망	111

I. 2018년 범죄 발생 전망⁵¹⁾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0만 건 정도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⁵²⁾ 이중 경찰업무와 관련된 통계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범죄발생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하는 ‘범죄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에서 처리하는 범죄의 건수는 최근 185만 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2018년 범죄발생을 전망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분류 범죄 수준에서 최근 5년에서 10년간의 범죄 발생 추이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의 범죄 발생을 예측하여, 경찰의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 범죄 발생 추세를 개관한 다음, 주요 범죄유형별 증감 추세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 범죄자의 특성에 따른 범죄 발생 추세와 지역별 범죄발생비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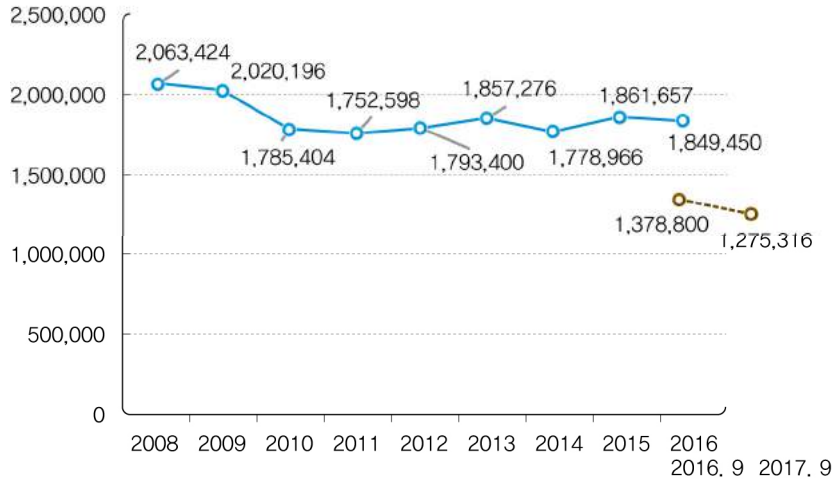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아래의 [그림 3-1-1]과 같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과 2009년에 2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180만 건을 전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9월말 기준 127만 5316건으로 2016년 동기에 비해 10만 3484건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8년에도 전체 범죄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51) 본 장에서 사용되는 범죄발생 관련 자료는 모두 경찰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한다.

52) 우리나라의 총 발생범죄는 형사사법기관 중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검찰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경찰의 처리 건수(해양경찰 처리 건수 포함)는 186만 1657건(92.1%)이고 검찰의 처리건수(특수사법경찰 처리건수 포함)는 15만 9074건(7.9%)으로 90% 이상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림 3-1-1]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7)

<표 3-1-1> 최근 10년간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9	2017.9
계	2,063,424	2,020,196	1,785,404	1,752,598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1,849,450	1,378,800	1,275,316
강력범죄	22,938	25,322	25,834	26,705	25,152	26,962	25,277	25,334	25,765	18,793	20,390
절도범죄	223,204	256,419	269,439	281,362	290,460	288,343	266,222	245,853	203,037	149,507	137,951
폭력범죄	305,435	315,850	292,492	311,948	312,579	294,187	290,073	305,947	309,394	229,258	220,256
지능범죄	260,052	282,044	268,307	279,802	295,101	329,439	298,652	316,121	312,577	229,292	228,567
풍속범죄	25,887	47,069	31,205	28,866	24,801	27,474	25,070	24,491	26,165	19,291	16,961
특별 경제범죄	134,415	133,843	61,578	68,026	78,155	71,019	72,908	86,329	65,025	49,529	41,214
마약범죄	5,105	6,081	4,233	4,160	4,268	4,598	4,825	6,411	7,329	5,887	6,454
보건범죄	16,038	18,630	12,988	14,083	16,800	20,383	14,657	14,602	14,662	10,952	9,628
환경범죄	6,665	5,349	3,998	2,648	3,128	4,135	2,536	2,961	4,349	3,456	3,619
교통범죄	845,003	690,111	623,053	536,167	542,784	573,453	573,493	596,665	600,401	454,014	393,954
노동범죄	2,488	2,526	1,266	1,836	1,391	1,721	1308	1,145	2,457	1,490	2,227
안보범죄	66	56	103	132	109	135	84	121	81	55	76
선거범죄	1,581	180	2,417	212	1,262	398	1,874	760	1,018	999	619
병역범죄	23,675	22,541	20,828	20,587	23,143	26,173	21,549	18,726	16,651	11,580	10,749
기타범죄	190,872	214,175	167,663	176,064	174,267	188,855	180,437	216,197	260,539	194,697	182,651

출처 : 경찰청(2017)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건수를 확인해보면 전체 발생범죄 중 교통범죄는 전체 범죄의 3분의 1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발생 건수의 변화는 교통범죄의 증감에 영향을 받아왔다. 교통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교통 ‘사고’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범죄와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유형의 발생추세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범죄발생 건수가 200만 건을 상회했던 2008의 경우 교통범죄가 84.5만 건으로, 범죄건수의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교통범죄는 54~60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전체 범죄의 발생건수는 물론 교통범죄와 그 이외의 범죄 발생건수에 있어서도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2〉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793,400	1,857,276	1,778,966	1,861,657	1,849,450
교통범죄	542,784	573,453	573,493	596,665	600,401
교통범죄 이외의 범죄	1,250,616	1,283,823	1,205,473	1,264,992	1,249,049

출처 : 경찰청(2017)

전체 범죄의 증감에 관한 예측을 위해서는 교통범죄를 비롯한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들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 속에 2018년도의 전체 범죄 증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통, 폭력, 지능범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절도는 뚜렷한 감소추세에 있다. 마약범죄, 노동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범죄의 증가가 예견되지만 발생건수가 많지 않은 범죄들이다. 다만, 전체 범죄건수의 변화양상을 보았을 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8년에는 소폭이나마 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대분류 범죄유형 및 범죄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2018년 범죄발생을 예측할 것이다. 단, 절도, 폭력 등은 5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다음 목차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1. 교통범죄, 특별경제범죄 비중 감소 및 지능범죄, 기타범죄의 비중 증가 추세(10년 간 변화 분석)

경찰청에서는 2007년 범죄통계부터 전체범죄를 모두 15개의 유형별⁵³⁾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표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10년(2008~2017. 9)간의 범죄발생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유형은 교통범죄⁵⁴⁾이며, 전체범죄의 33.1%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범죄(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 공갈, 협박 등) 16.4%,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 위조 등) 15.9%, 절도범죄(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절도 범죄)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이러한 순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각 유형별 비중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의 발생 예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유형별 발생추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8년과 2016년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3-1-2]와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범죄는 2008년에 비해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범죄는 특별경제범죄이다. 특별경제범죄는 신용, 여신, 전자금융거래, 조세, 관세, 외국환 등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전체범죄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동일 범죄유형 내에서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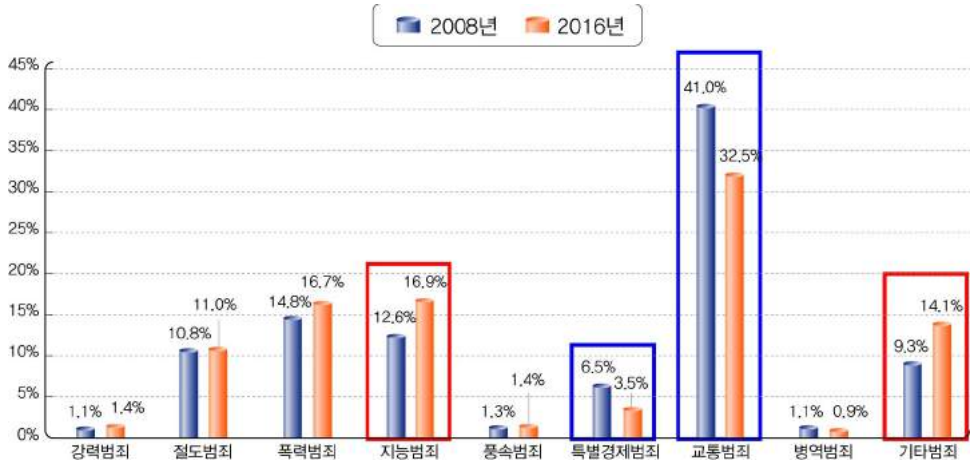
2008년과 2016년의 범죄유형별 발생비율을 비교해보면 교통범죄 비중의 감소로 인해서 다른 범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증가가 눈에 띄는 유형이 있다. 지능범죄와 기타범죄이다. 우선 지능범죄는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포함하는 범죄유형으로, 2008년에 비해서 비중의 증가가 눈에 띈다. 다만, 최근까지 증가추세가 뚜렷했던 지능범죄는 경찰과 사회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미 상승세를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타유형의 비율 증가가 눈에 띄는데, 기타범죄는 구체적인 형태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가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53) 경찰청은 범죄통계 집계에 있어 기존에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이분하여 작성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총 15개의 위반행위 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 및 법익침해 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새로운 분류법에 의한 범죄통계 집계는 2007년 통계부터 적용되었으며, 여기서는 최근 10년 간의 범죄발생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이후의 통계만을 사용하였다. 15개의 범죄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이다.

54) 교통범죄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행위, 교통방해의죄, 도로법 위반 등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들도 모두 포함된다.

기타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에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웠거나 발생량이 작았던 유형의 범죄에서 발생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타범죄 유형의 증가는 새로운 범죄행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1-2] 최근 범죄 유형별 구성비(2008 / 2016)



* 구성 비율이 낮은 범죄(1% 미만) 유형은 그림에서 제외 ※ 빨간 박스(□) : 증가, 파란 박스(□) : 감소
출처 : 경찰청(2017)

전체 범죄 중 그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병역범죄 역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병역비리의 절대적인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의무복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범죄는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들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연예인과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비리로 몇 차례 홍역을 치른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군복무에 대한 인식과 군복무 환경의 개선 등으로 자발적인 군입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병역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통범죄와 지능범죄의 발생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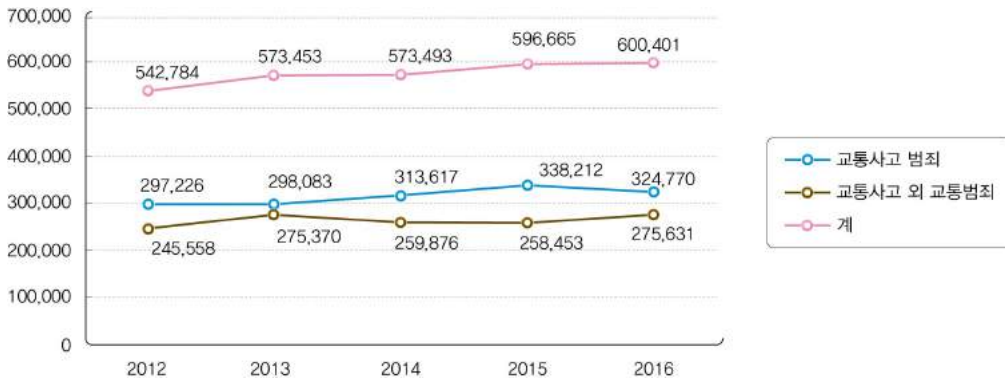
교통범죄는 2008년 84만 5003건이 발생하여 정점을 기록한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에는 54만 2784건을 기록하였다. 위 <표 3-1-2>를 보면 지난 10년 간의 발생추세를 보면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래 [그림 3-1-3]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보면 교통범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완만한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범죄가 포함된다. 교통사고범죄⁵⁵⁾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경찰의 단속의지에 영향을 받는 교통사고 이외의 범죄 유형과는 달리 실제 발생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범죄의 추이를 분석할 때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교통범죄 발생의 전제가 되는 차량과 운전자 수를 고려했을 때, 우선 차량 등록대수⁵⁶⁾가 2012년 1887만 대에서 2016년 2180만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 소지자⁵⁷⁾가 2012년 2826만 명에서 2016년 311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차량 수 대비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2016년에는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범죄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전체 교통범죄의 발생 수준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2018년에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3] 교통범죄의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7)

55) 교통사고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피교통사고)과 도로교통법(물피교통사고) 상의 교통사고 건수 이외에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물피교통사고미조치,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의 죄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교통사고 '범죄' 건수가 더 높게 집계된다.

56) 국토교통부의 e-나라지표 “자동차 등록 현황”에서 인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7, 2017. 12. 15 검색).

57) 경찰청 e-나라지표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서 인용(<http://www.index.go.kr/potal/main/>).

〈표 3-1-3〉 교통범죄 사고구분별 발생 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42,784	573,453	573,493	596,665	600,401
(%)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사고 범죄	297,226	298,083	313,617	338,212	324,770
(%)	(54.8)	(52.0)	(54.7)	(56.7)	(54.1)
교통사고 외 교통범죄	245,558	275,370	259,876	258,453	275,631
(%)	(45.2)	(48.0)	(45.3)	(43.3)	(45.9)

출처 : 경찰청(2017)

사기, 횡령, 배임, 문서·인장·통화 위조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범죄⁵⁸⁾는 다음의 〈표 3-1-4〉에서 보듯이 과거 급격한 증가추세가 최근 보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 지능범죄의 유형별로 보면, 사기죄가 2013년 26만 9082건을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배임죄는 발생수준 유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감소 추세에 있다. 무엇보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던 횡령죄도 2017년 들어 상승세가 완화되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도 지능범죄 전담팀의 편성 및 사이버안전국의 기능 강화 등 경찰의 지속적인 대응노력을 하고 있어 2018년 지능범죄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세계적으로 경제는 침체국면에 있으며, 국내적으로 실업률과 가계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포싱, 파밍, 스미싱, 랜섬웨어⁵⁹⁾ 등 전자금융사기 형태의 지능범죄 수법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정보기술과 첨단 기기에 취약한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어 지능범죄의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에 익숙한 20대, 특히 여성들이 신종 지능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⁶⁰⁾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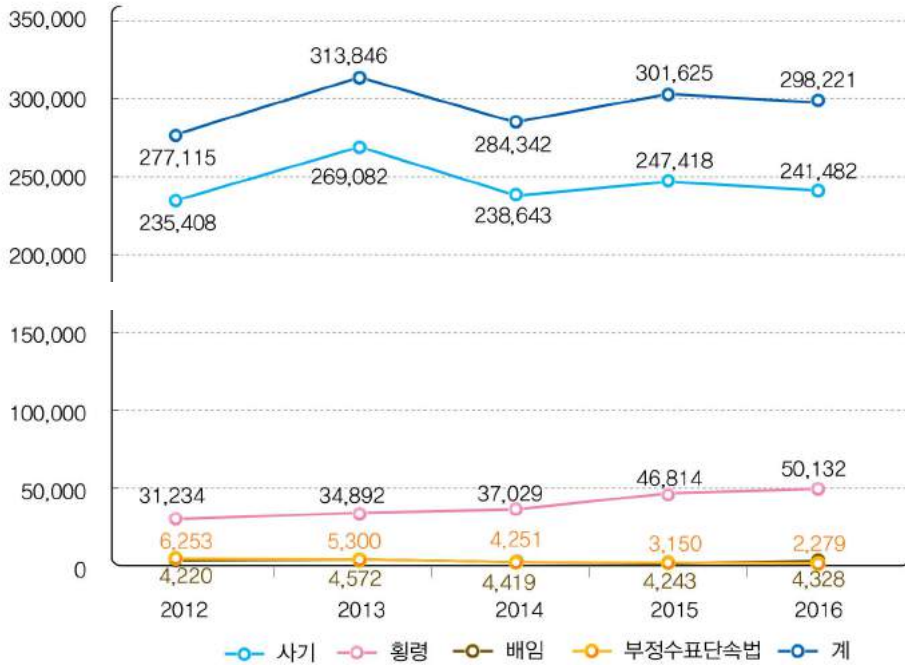
58) 지능범죄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등 공무원의 지위와 관련된 범죄들도 있지만 이 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59) 악성코드(malware)의 일종으로, 이에 감염된 컴퓨터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 제작자에게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인터넷 두산백과).

60)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6, 88~89쪽. 변화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에서 보이스포싱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보이스포싱 피해는 대도시 지역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1-4] 지능범죄의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7)

〈표 3-1-4〉 최근 6년간 주요 지능범죄의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9	2017. 9	전년대비
사기	235,408	269,082	238,643	247,418	241,482	178,168	174,917	-1.8%
횡령	31,234	34,892	37,029	46,814	50,132	35,680	36,748	3.0%
배임	4,220	4,572	4,419	4,243	4,328	3,199	2,784	-13.0%
부정수표 단속법	6,253	5,300	4,251	3,150	2,279	1,829	1,534	-16.1%
계	277,115	313,846	284,342	301,625	298,221	218,876	215,983	-1.3%

출처 : 경찰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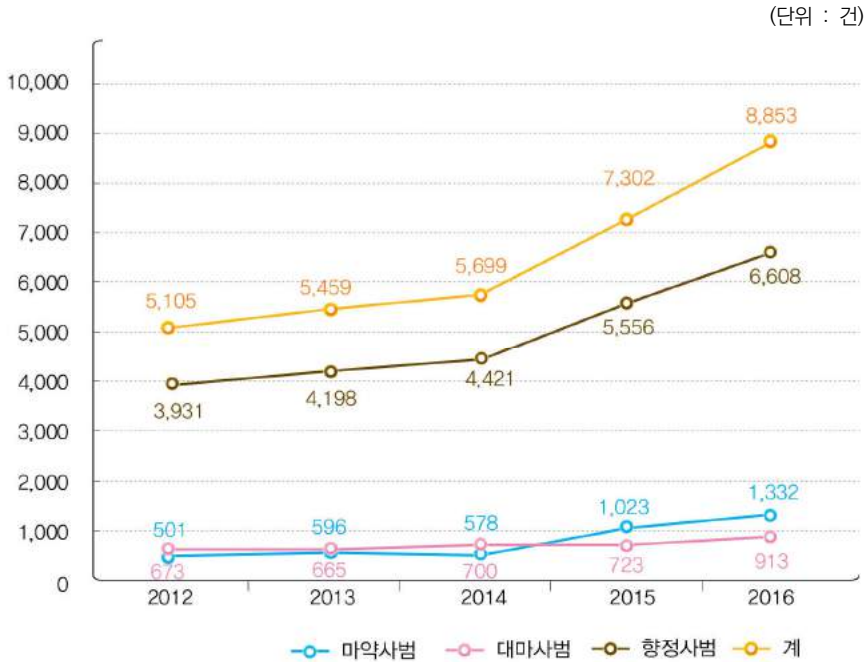
3. 마약범죄의 지속적 증가 및 선거범죄 증가 예상

전체 범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마약류⁶¹⁾의 소비와 공급이 증가

61) 마약류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마약의 종류에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의 천연 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이 있으며, 대마의 종류에는 대마초, 해쉬, 해쉬쉬오일 등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YABA, 엑스터시(MDMA) 등의 흥분제, 바르비탈류, 펜플루라민

하면서 마약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모두 그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마약류를 공급하는 공급책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한 다양한 경로의 마약 공급으로 인해서 마약범죄는 한동안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5] 마약범죄의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7)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알약 형태로 대량 유통이 되는 등 마약류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처벌이 무거운 마약 사범의 경우 2017년 증가세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향정사범의 경우 그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데이트 강간 약(date-rape drug)’ 등으로도 알려지면서 유흥업소 및 클럽 등지에서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들 마약류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마약이라는 거부감이 적어 확산 속도가 빠르며, 향후 더 강도 높은 마약으로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등의 억제제, LSD와 같은 환각제가 있다.

〈표 3-1-5〉 최근 6년간 마약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9	2017. 9	전년대비
계 (공급사범)	5,105 (2,187)	5,459 (2,254)	5,699 (2,318)	7,302 (2,786)	8,853 (3,428)	6,907 (2,626)	7,592 (2,651)	9.9%
마약사범	501	596	578	1,023	1,332	1,286	1,279	-7.0%
대마사범	673	665	700	723	913	666	838	25.8%
향정사범	3,931	4,198	4,421	5,556	6,608	4,955	5,475	71.7%

출처 : 경찰청(2017)

선거범죄는 연도별로 기폭이 큰 범죄유형이다. 선거범죄는 주로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선거범죄의 발생건수는 실시되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지방선거 때 가장 많은 선거범죄가 발생하고 총선, 대선의 순서로 범죄발생 건수가 많다. 선거유형별로 후보자의 수, 선거 관련자의 수, 영향을 받는 인적 범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선거범죄 발생수준을 예측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발생 추세이다. 선거범죄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과거에 비해서 평상시 및 선거기간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되었고, 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식 수준 또한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최근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 두 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범죄의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유형과 선거범죄의 발생추세 두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2018년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2014년의 6회 지방선거보다는 선거범죄 발생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6〉 선거범죄 발생현황과 당해 주요 선거⁶²⁾

(단위 : 건)

구분	2004	2006	2007	2008	2010	2012.4	2012.12	2014	2016	2017
주요선거	17대 총선	4회 지방선거	17대 대선	18대 총선	5회 지방선거	19대 총선	18대 대선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	19대 대선
선거범죄 (건)	4,023	5,538	2,163	2,026	3,720	1,626	1,015	3,509	1,819	1,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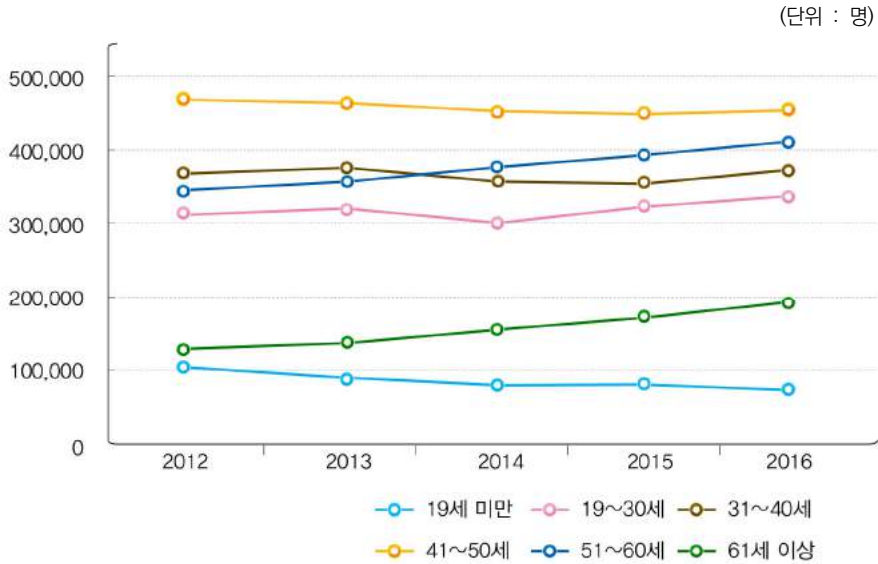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7)

62)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본 선거가 있었던 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시하였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있는 경우에도 선거범죄가 발생하기는 하나 본 선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4. 50대, 60대 이상 범죄자 감소세로 전환

최근 들어 고령 범죄자들의 증가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그림 3-1-6]에서 볼 수 있듯이 5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범죄자들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표 3-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7년 들어 전체적인 범죄의 감소세와 더불어 9월까지 2016년 동기 대비 50대와 60대의 범죄자수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50대에서 5.0%, 60대 이상에서 10.5%의 감소를 보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소폭이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표 3-1-8> 참조), 고령 범죄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6] 범죄자 연령대별 인원수 변화 추이



출처 : 경찰청(2017)

다만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노인'의 분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범죄자는 2017년 9월까지 2016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범죄의 감소세 속에서도 노인 범죄자의 수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표 3-1-7〉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범죄자 수⁶³⁾(2012~2017. 9)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9	2017. 9	전년대비
계	1,928,795	1,962,718	1,930,325	1,999,065	2,029,873	1,509,050	1,412,675	-6.4%
19세 미만	106,290	90,654	78,743	80,239	76,334	56,618	56,180	-0.8%
19~30세	335,437	344,470	319,124	333,890	346,345	256,712	246,176	-4.1%
31~40세	389,252	395,669	375,241	368,930	383,172	285,698	227,805	-20.3%
41~50세	492,073	487,073	470,410	465,281	466,113	313,038	256,674	-18.0%
51~60세	358,860	370,880	387,462	402,408	418,124	310,984	295,428	-5.0%
61세 이상	128,028	137,377	154,521	173,082	195,227	150,536	134,698	-10.5%
65세 이상	73,221	78,624	89,648	101,281	111,035	89,223	89,770	0.6%
미 상	118,855	136,595	144,824	175,235	144,558	99,996	90,481	-9.5%

출처 : 경찰청(2017)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 3820명의 14.0%를 초과하여 공식적으로 ‘고령사회’⁶⁴⁾에 진입하였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 주요 국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⁶⁵⁾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인구의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범죄자의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단순히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연령대별 건강상태가 양호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적·신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조기 은퇴의 증가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내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범죄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복지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과거 고령자들이 누리던 지위와 보호 등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있어 억제요인은 감소하고 있다.

63) 이 통계는 전체 발생 인원 모두를 포함한 자료이다. 치안전망 2017에서 기소중지자, 상벌불상자, 법인을 제외한 것과는 다른 통계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4) UN 기준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국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초과한 경우가 ‘고령사회’에 해당된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의 경우 115년, 미국이 73년, 일본이 24년이 걸려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 김상원·김은주, “일본과 한국의 노인범죄 추세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297~299쪽.

〈표 3-1-8〉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2012~2017. 9)

(단위 : 명)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9	2017. 9	전년대비
계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664,244	51,762,492	0.2%
19세 미만	10,405,854	10,139,946	9,872,342	9,633,308	9,375,887	9,446,603	9,170,283	0.3%
19~30세	8,161,177	8,052,758	8,012,311	8,037,713	8,057,996	8,055,001	8,067,572	0.2%
31~40세	8,245,732	8,164,372	8,011,538	7,810,694	7,670,468	7,697,105	7,576,615	1.6%
41~50세	8,826,349	8,821,048	8,906,117	8,920,640	8,850,383	8,881,231	8,790,813	-1.0%
51~60세	7,496,216	7,761,839	7,995,944	8,193,526	8,302,805	8,256,595	8,374,989	1.4%
61세 이상	7,812,944	8,201,500	8,529,664	8,933,457	9,438,677	9,327,709	9,782,220	4.9%
65세 이상	5,980,060	6,250,986	6,520,607	6,775,101	6,995,652	6,936,921	7,283,929	5.0%

출처 : 통계청(2017)

5.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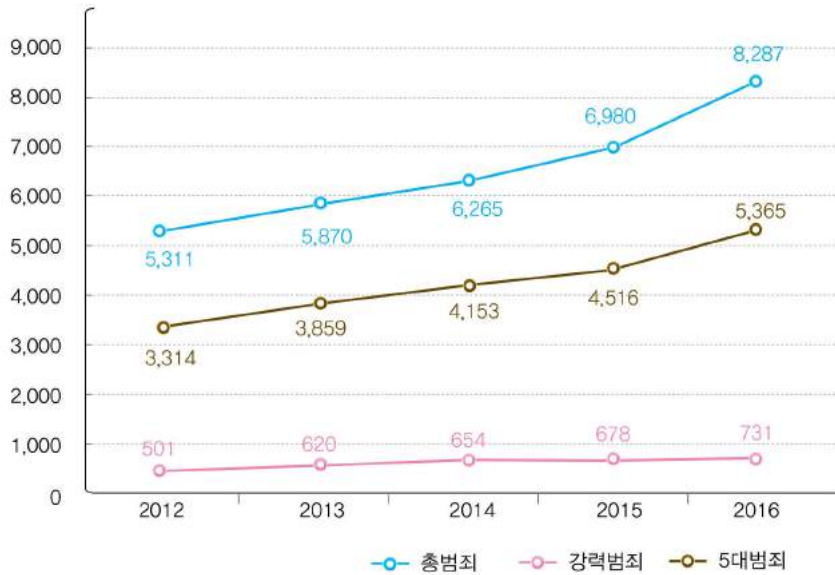
최근 몇 년 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들이 수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7년에도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에서 사이코패시⁶⁶⁾나 아스퍼거 증후군⁶⁷⁾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언급되는 등 최근 잇따른 엽기적인 범죄들에서 정신질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의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전체 범죄 발생 건수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이나, 전체 정신질환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 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의 범죄 발생 추세로 보았을 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6) 사이코패시(psychopathy)는 정신병질로 해석되며, 비정상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사회적응에 곤란을 일으키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정신병질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이코패시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질을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현재 경찰에서 분류하는 정신질환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7)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은 만성 신경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다. 또한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며,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3-1-7] 범죄 유형별 정신질환자 유발 건수 추이



출처 : 경찰청(2017)

<표 3-1-9> 최근 6년간 정신질환자 범죄유발 건수와 재범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9	2017. 9	전년대비
총 범죄	5,311	5,870	6,265	6,980	8,287	6,239	6,809	9.1%
강력범죄	501	620	654	678	731	541	629	16.3%
5대 범죄	3,314	3,859	4,153	4,516	5,365	3,982	4,521	13.5%
재범률	65.3%	65.7%	65.9%	65.6%	66.0%	63.6%	65.9%	2.3%p

* 정신질환자 현황 : 470만 명 추산(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보건복지부)

출처 : 경찰청(2017)

다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발생 증가 원인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⁶⁸⁾ 정신질환자를 범죄 인지단계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는 수사관들이 두드러진 증상이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 분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인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를

68)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2017. 5. 30)에 대응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이 진단 기준과 효율적 보호조치에 관한 방안을 작성 전파(경찰청, “정신질환자, 효율적 보호조치 방안 통보”, 2017. 5. 19)하는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하여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맞춰 판단 매뉴얼을 보급·전파하는 등 경찰대응 단계에서 정신질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관들의 인식 증가와 분류 기준의 확보도 정신질환자 분류 비율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집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신질환을 포함하는 정신상태 분류 유형⁶⁹⁾에는 주취상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취상태는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두 가지 상태가 중복되는 경우들에서 주취상태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취상태와 구분이 되지 않아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비율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의 증가는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아져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6.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비 유지

지난 5년 간의 지역별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대체로 지역 인구수 및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범죄발생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의 발생수준은 절대적인 발생건수보다는 지역 인구 대비 범죄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발생비⁷⁰⁾를 비교하면 대체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⁷¹⁾

2015년과 대비해 보더라도 2016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크게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보면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지역, 이들 지역 이외의 시도, 그리고 제주도이다. 우선 광역시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지역별 편차가 컸었지만 광주광역시의 범죄율 급감, 다른 지역의 감소추세로 인해서 2016년에는 이들 지역 간의 범죄발생비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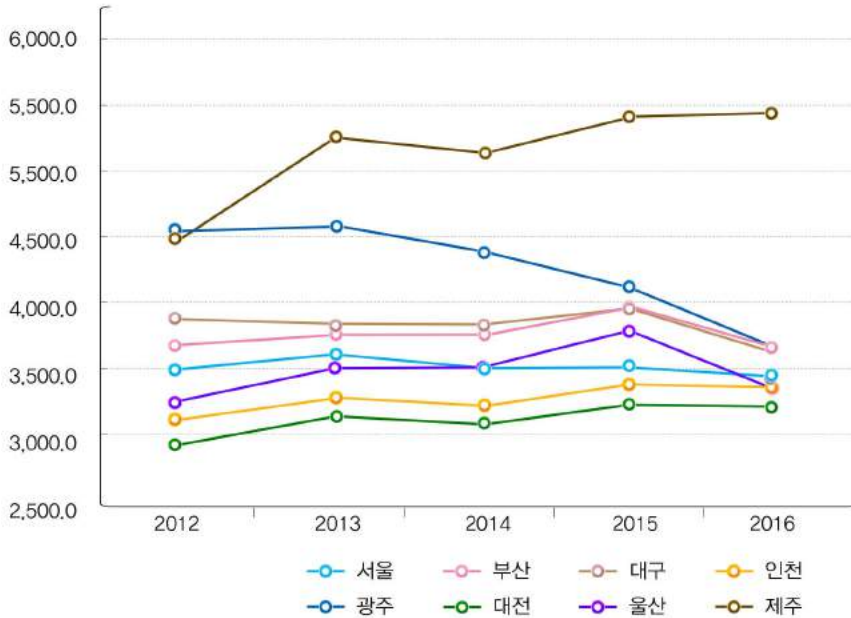
69) 현재 피의자원표 상의 분류방식으로는 정상, 정신질환(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주취로 구분되어 있음.

70) 발생비 = (발생건수 * 100,000) / 해당년도 추계인구수.

71) 다만, 제주도의 경우 지역 인구에 비해서 외부 지역 유동인구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방식이 범죄발생수준을 과대추정하게 하여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3-1-8]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광역시(+제주)의 범죄발생비 변화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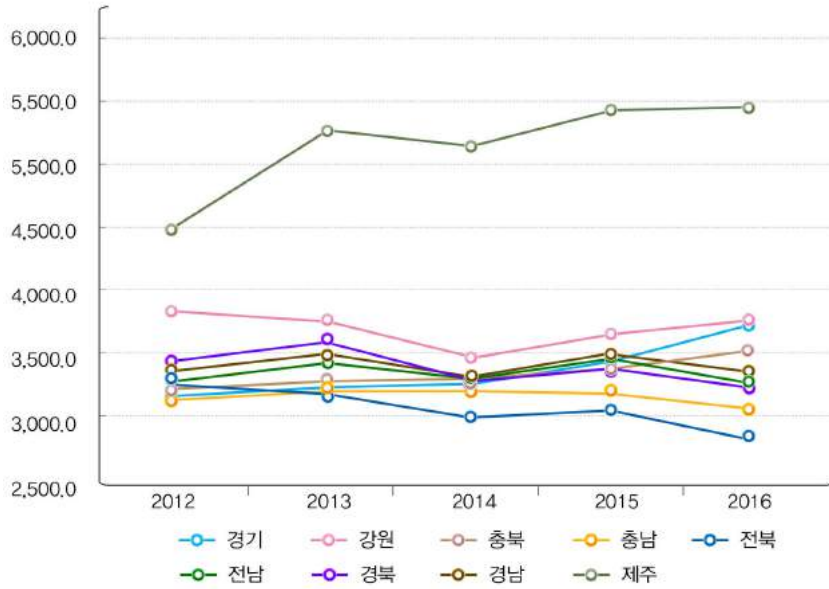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7)

반면 광역시 이외의 시도들의 경우 광역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범죄발생비가 낮은 특징을 보였었다. 하지만 2016년에 경기, 강원, 충북 등 수도권 또는 인접 지역에서 범죄율이 증가하는 반면, 그 이외 지역의 범죄율이 감소함으로써 지역들 간의 편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시도 지역간 편차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의 거주인구만을 고려하고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는 범죄발생비 계산 상의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의 경우 지역주민 대비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범죄발생비를 보이고 있다. 발생비가 5455.6건으로 두 번째인 강원도의 3792.5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발생수준이었다. 제주도만 놓고 본다면 2016년에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범죄발생비를 보여 제주도의 범죄발생비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2017년의 지역별 범죄발생비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2017년 초부터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범죄발생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9] 최근 5년간 각 시도별(+제주) 범죄발생비 변화 추이

(단위 : 건)



<표 3-1-10> 최근 5년간 지역별 범죄발생비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3,516.7	3,633.6	3,523.5	3,557.9	3,455.0
부산	3,715.7	3,788.1	3,800.5	4,004.2	3,693.3
대구	3,908.0	3,845.0	3,840.5	3,975.2	3,467.4
인천	3,161.4	3,308.2	3,245.7	3,414.9	3,411.0
광주	4,578.8	4,614.6	4,392.1	4,159.4	3,693.9
대전	2,962.3	3,163.1	3,105.2	3,265.3	3,238.2
울산	3,256.6	3,532.1	3,529.5	3,797.8	3,394.9
경기	3,190.3	3,285.5	3,272.3	3,440.1	3,745.8
강원	3,840.2	3,795.3	3,478.4	3,673.9	3,792.5
충북	3,224.1	3,310.5	3,221.0	3,390.4	3,529.7
충남*	3,153.9	3,252.5	3,206.6	3,207.7	3,080.3
전북	3,320.3	3,198.5	3,026.5	3,066.9	2,862.3
전남	3,308.9	3,454.7	3,316.1	3,491.0	3,298.2
경북	3,449.2	3,636.4	3,293.0	3,399.3	3,261.0
경남	3,380.5	3,497.8	3,350.6	3,532.1	3,391.1
제주	4,502.9	5,258.1	5,146.0	5,416.3	5,455.6

* 지역별 발생비 = (지역별 발생건수*100,000)/해당년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
 : 2018 치안전망부터 지역별 발생비의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전의 발생비 자료와 차이가 있음
 * 세종자치시의 경우 충남지역에 포함
 출처 : 경찰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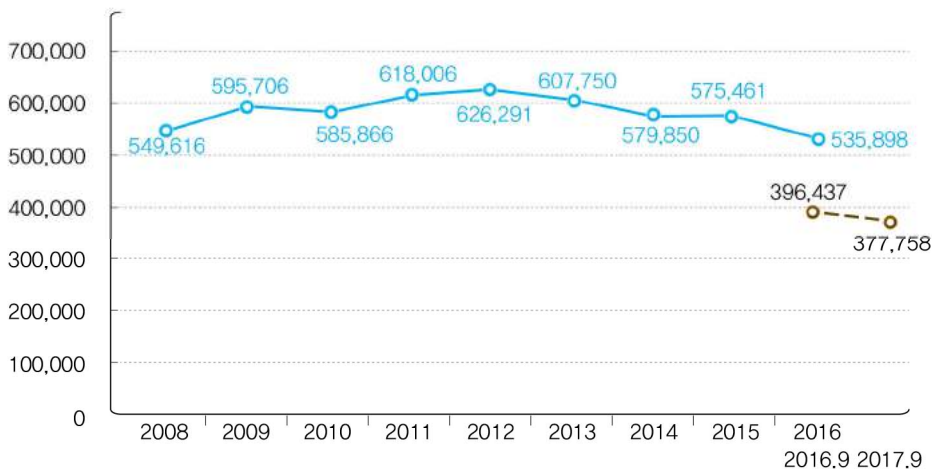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우리가 직관적으로 ‘범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이 범죄들은 국민들의 범죄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 범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5대 범죄는 주요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수사 와 예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등 강력한 범죄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5대범죄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최근 10년(2008~2017. 9)간 5대 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개별 범죄유형별로 발생 건수 변화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5대 범죄의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와 폭력 역시 최근 감소세에 있다. 5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강화 등을 고려하면, 2018년에도 5대범죄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강간 및 강제추행이 다른 범죄들의 발생추세와 달리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인 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5대 범죄 전체의 발생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10] 최근 10년간 5대 범죄 전체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7)

〈표 3-1-11〉 최근 10년간 5대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계
2008	1,111	4,842	15,024	223,204	305,435	549,616
2009	1,374	6,370	15,693	256,419	315,850	595,706
2010	1,252	4,425	18,258	269,439	292,492	585,866
2011	1,204	3,994	19,498	281,362	311,948	618,006
2012	995	2,587	19,670	290,460	312,579	626,291
2013	930	1,980	22,310	288,343	294,187	607,750
2014	914	1,586	21,055	266,222	290,073	579,850
2015	929	1,446	21,286	245,853	305,947	575,461
2016	906	1,149	22,193	202,874	308,776	535,898
2016. 9	701	876	16,095	149,507	229,258	396,437
2017. 9	647	737	17,991	138,164	220,219	377,758
전년대비	-7.3%	-16.0%	11.5%	-7.8%	-3.8%	-4.7%

출처 : 경찰청(2017)

개별 범죄에 있어서는 1년 후의 범죄 발생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 최근 5년, 2017년 9월까지를 포함하여 6년간의 추세를 활용하여 변화를 예측하였다. 특히 2016년 9월과 2017년 9월까지의 동기 간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하여 2018년의 5대 범죄 발생을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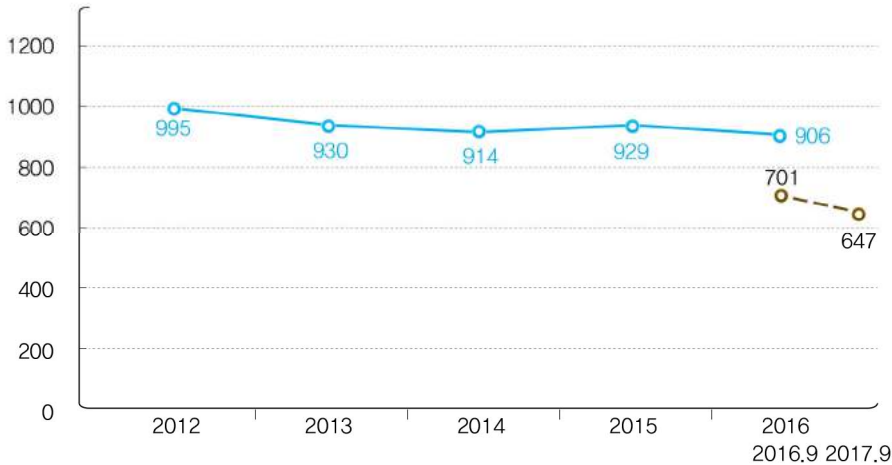
5대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 예측 범죄통계에 근거한 발생추세를 기본으로 하되, 2018년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외적 변수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5대 범죄의 발생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살인범죄 소폭 감소 전망

최근 6년간 살인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2016년에도 906건으로 900건에 근접해서 발생하였으며, 2017년 9월 기준 2016년의 동기 701건 대비 54건이 감소하여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1] 살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7)

2016년을 기준으로 살인범죄(기수)는 친족(31.1%), 친구·애인(13.7%), 또는 직장 동료(2.7%) 등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이웃·지인 간(10.3%)의 발생비율도 여전히 높았다. 고조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보복운전 등의 분노·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범죄들도 가정불화 및 현실불만의 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회전반에서 낮아진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빈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증가와 현실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실 불만과 가정불화 등 개인적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대상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살인의 피해자 중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2016년 7.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61세 이상의 피해자도 21.6%를 차지하였다.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기준 54.2%로, 2015년의 52.3%보다 약간 증가하였다.⁷²⁾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여성 피해자 비율이 51.0%를 차지했던 2008년 무렵에 미국 22.5%(2010), 영국 33.9%(2009), 프랑스 34.3%(2008), 호주 27.5%(2009)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⁷³⁾

72) 살인 피해를 입은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범죄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남성 사망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73)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Percentage of male and female homicide victims, latest year”에서 발췌 (<http://www.undoc.org/gsh/en/data.html>).

[그림 3-1-12] 살인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연령미상, 성별불상 제외)

(단위 : 명)



출처 : 경찰청, 2016 범죄통계, 2017

살인 범죄자 중에서 정신이상이나 정신박약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범죄자는 살인기수의 경우 8.7%(정신이상 3.7%, 정신박약 0.0%, 기타 정신장애⁷⁴) 5.0%)에 이르며, 이는 전체 범죄 평균 0.6%나 다른 5대 범죄 평균 1.2%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감소⁷⁵를 기계적으로만 적용한다면 살인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율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13] 살인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출처 : 경찰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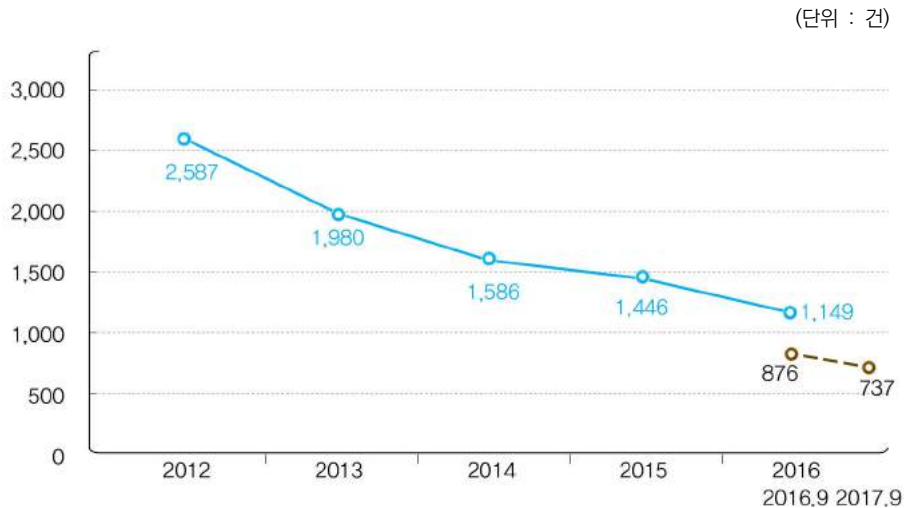
74) 범죄통계 상의 정신장애는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 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 변태성욕자 등))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정신분열병은 조현병, 조울병은 양극성장애로 용어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어 참고가 필요하다.

75)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년 유병률은 2001년 18.5%, 2006년 15.2%, 2011년 15.4%, 2016년 12.8%로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다.

2. 강도범죄 지속적 감소 전망

강도범죄의 발생 건수 역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5대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도범죄의 꾸준한 감소 추세, 그리고 2017년 9월까지의 발생 건수와 2016년 동기간의 발생 건수를 비교해봤을 때 16.0%가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강도의 발생은 2018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절도에 비해 처벌이 강한데 반해 이런 부담을 감수할 만큼 반대급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4] 강도범죄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7)

강도는 유형을 불문하고 감소추세에 있다. 2015년에는 마취강도나 약취유인 강도 등의 유형의 발생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2016년에는 모든 강도유형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비침입강도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상강도의 발생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노상범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12〉 최근 5년간 강도범죄의 범죄수법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402 (100.0)	1,822 (100.0)	1,547 (100.0)	1,446 (100.0)	1,149 (100.0)
침입강도	일반강도 (%)		313 (13.0)	275 (15.1)	243 (15.7)	205 (14.2)	169 (14.7)
	감금강도 (%)		23 (1.0)	25 (1.4)	23 (1.5)	16 (1.1)	11 (1.0)
	인질강도 (%)		29 (1.2)	25 (1.4)	11 (0.7)	14 (1.0)	14 (1.2)
	기타 침입강도(%)		662 (27.6)	508 (27.9)	416 (26.9)	372 (25.7)	289 (25.2)
비침입 강도	차내·운전자 상대 강도(%)		112 (4.7)	77 (4.2)	74 (4.8)	70 (4.8)	44 (3.8)
	노상강도 (%)		479 (19.9)	285 (15.6)	226 (14.6)	185 (12.8)	158 (13.8)
	차량이용강도 (%)		20 (0.8)	16 (0.9)	29 (1.9)	17 (1.2)	10 (0.9)
	마취강도 (%)		20 (0.8)	35 (1.9)	21 (1.4)	37 (2.6)	14 (1.2)
	약취유인강도 (%)		70 (2.9)	61 (3.3)	76 (4.9)	112 (7.7)	80 (7.0)
	기타 비침입강도(%)		654 (27.2)	507 (27.8)	414 (26.8)	407 (28.1)	355 (30.9)
해상강도(%)			0 (0.0)	0 (0.0)	1 (0.1)	0 (0.0)	0 (0.0)
강도강간(%)			20 (0.8)	8 (0.4)	13 (0.8)	11 (0.8)	5 (0.4)

* 연도별로 미상 또는 결측치의 편차가 커서 이를 제외하고 유형별 비율을 계산하였음(2012년: 185건, 2013년: 158건, 2014년: 39건, 2015년: 0건, 2016년: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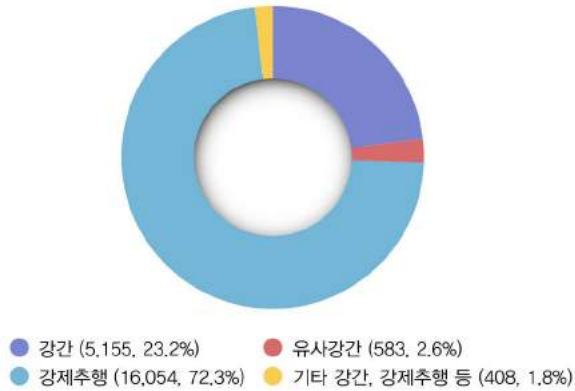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3~2017)

3. 강간·강제추행 소폭 증가 전망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격이 다른 몇 가지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강간(유사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강간·강제추행범죄 중 강제추행이 70.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24.2%, 유사강간이나 기타 강간·강제추행범죄는 각각 2.4%와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15] 강간·강제추행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 2016 범죄통계, 2017

2012년 12월에 형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2013년 6월부터 개정내용이 전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강간·강제추행범죄는 2013년 2만 2310건이 발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2014년 2만 1055건이 발생하면서 한 차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9월 기준 1만 7991건이 발생하여, 2016년 동기간 대비 11.5%가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건수는 2018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16] 최근 6년간 강간·강제추행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7)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최근 증가양상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연간물 ‘범죄분석 2016’에서 강간·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발생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발생건수가 2006년 517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증가하는 등 성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 발생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발생장소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간의 경우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사적인 주거공간이나 숙박업소·목욕탕 등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사적인 공간보다는 노상이나 유흥접객업소 등 타인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주요 발생 장소와 발생 시간대 중심의 순찰 확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17] 강간범죄의 주요 발생장소

(단위 : 건)



[그림 3-1-18] 강제추행범죄의 주요 발생장소

(단위 : 건)



* 미상·기타장소 제외 상위 10위 발생장소

출처 : 경찰청, 2016 범죄통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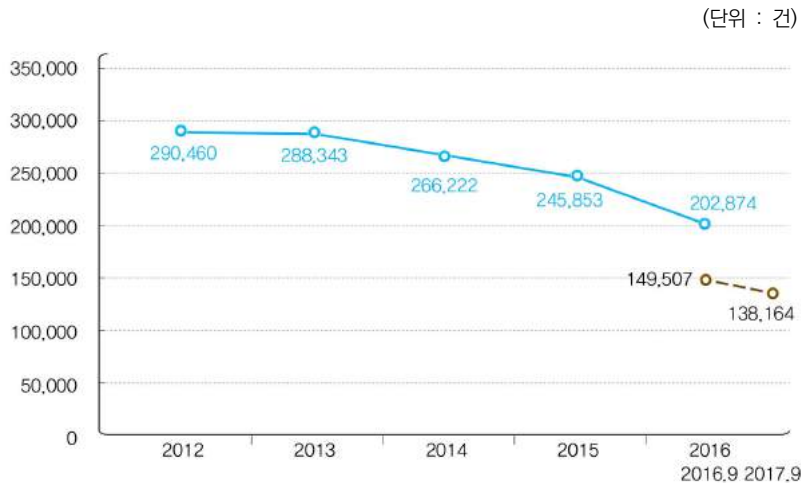
4. 절도범죄 지속적 감소 전망

절도범죄는 비교적 장기간 증가 추세가 이어지던 끝에 2012년 29만 460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수년 간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9월 기준 13만 8164건으로 2016년 동기간 대비 7.8%가 감소하여, 2018년에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도의 감소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6년 대폭 감소 후 2017년 9월까지의 2016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감소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수단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현금 등을 소지하거나 큰 금액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서 기대 가능한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강·절도의 주요 대상 중 하나였던 전자제품의 교환 가치가 감소한 것도 관련 범죄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절도 범죄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인구비율이 줄어드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절도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유형별 변화의 추세를 확인해보면 최근에 절도수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침입절도는 발생건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발생비율에 있어서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침입 절도의 경우 특히 기타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의 수법에 비해서 신종 절도수법들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1-19] 절도범죄 발생 추이



출처 : 경찰청(2017)

또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대한 절도가 한때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자전거의 경우 2014년과 2015년에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동수단의 경우 주차시설 등에 CCTV 설치가 증가하고 경로 추적 기술 등이 발달하여 적발 가능성이 높고 자전거 절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표 3-1-13〉 최근 5년간 절도범죄의 범죄수법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74,583 (100.0)	273,024 (100.0)	260,511 (100.0)	245,823 (100.0)	203,037 (100.0)
침입 절도	반집 절도 (%)		32,724 (11.9)	30,337 (11.1)	23,753 (9.1)	17,919 (7.3)	11,908 (5.9)
	사무실 절도 (%)		4,265 (1.6)	3,380 (1.2)	3,615 (1.4)	2,825 (1.1)	2,113 (1.0)
	공장 절도 (%)		1,347 (0.5)	1,096 (0.4)	1,393 (0.5)	819 (0.3)	466 (0.2)
	상점 절도 (%)		16,425 (6.0)	17,120 (6.3)	17,875 (6.9)	14,830 (6.0)	10,362 (5.1)
	숙박업소 절도 (%)		1,566 (0.6)	1,436 (0.5)	1,079 (0.4)	963 (0.4)	798 (0.4)
	기타 침입절도 (%)		36,295 (13.2)	35,911 (13.2)	34,605 (13.3)	29,904 (12.2)	22,098 (10.9)
비침입 절도	소매치기 절도 (%)		1,941 (0.7)	1,819 (0.7)	1,454 (0.6)	1,401 (0.6)	1,047 (0.5)
	날치기 절도 (%)		1,918 (0.7)	1,248 (0.5)	746 (0.3)	384 (0.2)	260 (0.1)
	기타 치기절도 (%)		4,276 (1.6)	4,674 (1.7)	4,409 (1.7)	5,327 (2.2)	5,192 (2.6)
	들치기 절도 (%)		26,656 (9.7)	26,439 (9.7)	23,128 (8.9)	22,809 (9.3)	19,628 (9.7)
	속임수 절도 (%)		5,600 (2.0)	4,442 (1.6)	2,967 (1.1)	2,572 (1.0)	2,149 (1.1)
	기타 비침입절도 (%)		80,172 (29.2)	92,459 (33.9)	94,644 (36.3)	99,645 (40.5)	94,970 (46.8)
기타	차량 절도 (%)		8,926 (3.3)	7,045 (2.6)	5,636 (2.2)	4,608 (1.9)	3,501 (1.7)
	오토바이 절도 (%)		22,001 (8.0)	17,669 (6.5)	13,365 (5.1)	9,627 (3.9)	6,394 (3.1)
	자전거 절도 (%)		16,047 (5.8)	15,774 (5.8)	22,357 (8.6)	22,538 (9.2)	15,170 (7.5)
	축산물 절도 (%)		436 (0.2)	473 (0.2)	571 (0.2)	580 (0.2)	540 (0.3)
	기타 절도 (%)		13,988 (5.1)	11,702 (4.3)	8,914 (3.4)	9,072 (3.7)	6,439 (0.0)

* 연도별로 미상 또는 결측치의 편차가 커서 이를 제외하고 유형별 비율을 계산하였음(2012년: 15,877건, 2013년: 15,319건, 2014년: 5,711건, 2015년: 30건, 2016년: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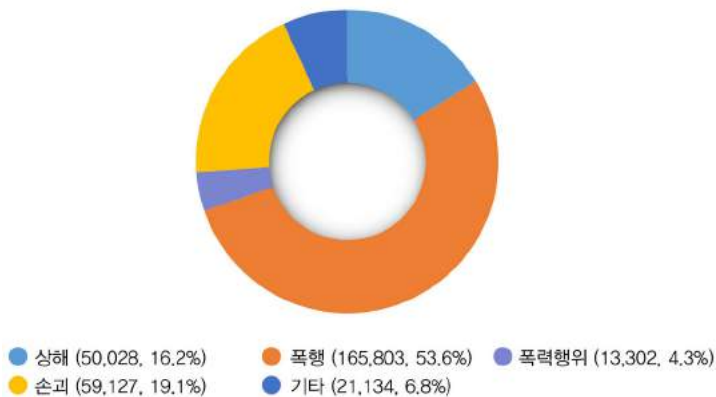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2013~2017)

5. 폭력범죄 발생수준 유지 전망

폭력범죄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손괴죄, 기타 등의 범죄를 포함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폭력범죄의 유형별로 비율을 확인한 결과 폭행이 53.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손괴 19.1%, 상해 16.2%, 폭력행위 4.3%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단순 폭력, 즉 폭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1-20] 폭력범죄의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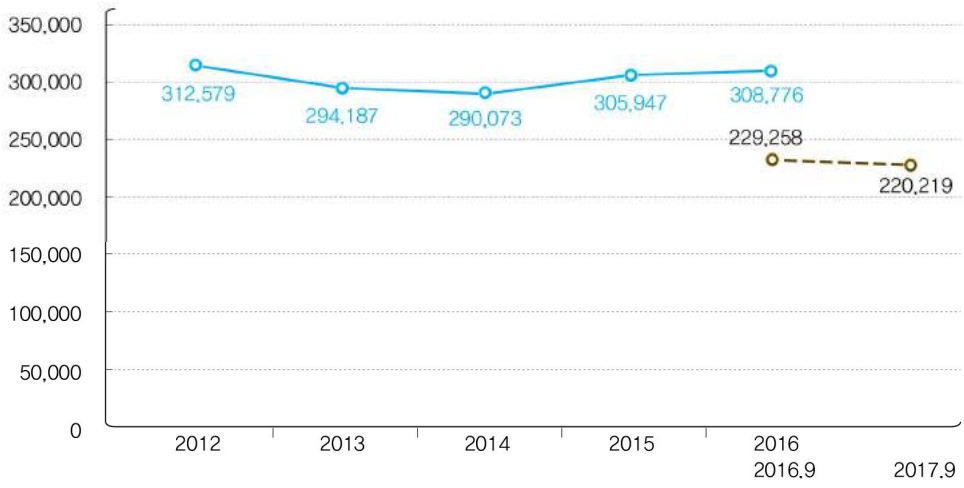
* 기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출처 : 경찰청, 2016 범죄통계, 2017

폭력범죄는 지난 10년 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31만 2579건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다시 30만 건 이상을 회복하였다. 2017년 9월 기준 22만 219건이 발생하여 2016년 동기간 대비 3.8%가 감소하여 2017년 발생건수는 201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력범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절대적인 발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증감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2018년에도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21] 폭력범죄 발생 추이

(단위 : 건)



출처 : 경찰청(2017)

Ⅲ. 지능 범죄 전망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과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능 범죄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능 범죄들은 계속하여 그 범행 수법을 변화시키고 다양화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 또는 수법을 이용하는 범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법집행기관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측의 한계로 인해 이미 일어난 범죄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사전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범죄의 추세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치안전망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특히 발달하는 기술과 통신을 악용하여 범행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지능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지능범죄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고, 범행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인 국민 개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있는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의 의의와 동향

전화금융사기는 흔히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진 범죄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정의에 따르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⁷⁶⁾

이처럼 사기인 보이스피싱과는 다르게, 불법사금융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76) “피싱사기 정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guide/define.jsp>).

정부의 규제를 위반하며 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들을 지칭한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형들은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 허가되지 않은 양태로 채권을 추심하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등이 있고,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하여 불법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이 있다.

비록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은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가계부채 1400조 시대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계유지라는 각박함 속에서 찾아온 절망감에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불법다단계 업체를 이용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조희팔 사건에서 가족, 친지, 친구까지 끌어들이고 빚까지 내어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사기 당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을 한 피해자들만 수십여 명에 달한다.⁷⁷⁾ 또한, 대부업으로 돈을 빌려쓰고 고리의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도 하고,⁷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액을 편취당하고 피해사실을 비관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⁷⁹⁾

그러나 전화사기범죄와 불법사금융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들은 그 유형과 수법을 변형시켜가면서 여전히 계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아래 <표 3-1-14>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보이스피싱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수법인 ‘공공기관사칭’ 형에서 ‘대출사기’ 형으로 진화를 하면서, 2017년 상반기에는 대출방자 형이 전체 173건의 전화금융사기 중 71.3%인 123건을 차지하였다. 즉, 2017년 들어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이 혼재되어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77) “강태용 리스트에 벌벌 떠는 檢·警”, 일요서울, 2015. 10. 19.

78) “[단독] 연 250% 조폭고리사채업자 빚 독촉에 자살”, MBC뉴스, 2011. 6. 10; “사채의 뒷, 유흥업소 여종업원 3명 자살”, 서울경제, 2010. 7. 11; “채무자 자살까지 부른 고리 사채”, 광주일보, 2012. 4. 24; “노점상 자살 기도까지-고리사채 40대 女 영장”, 뉴시스, 2007. 2. 26; “‘고리사채 힘들다’ 中企 대표 자살”, 동아일보, 2010. 2. 18.

79)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살 ‘괴로웠다’ 네티즌 ‘살인죄로 적용해라.’” 서울경제, 2017. 7. 28; “[데스크 칼럼] 목숨까지 앗아간 보이스피싱, 남의 일 같습니까?” 한국스포츠경제, 2017. 7. 29.

〈표 3-1-14〉 최근 3년간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

(단위 : 억 원, 건, %)

구 분	2015		2016		2017.상		월평균 증감(율) (B-A)			
	건수	월평균	건수	월평균(A)	건수	월평균(B)				
대포통장	건수	57,299	(4,775)	46,623	(3,885)	20,981	(3,497)	△388	(△10.0)	
보 이 스 피 싱	피 해 액	정부기관 사칭형 등	1,399	(117)	580	(48)	297	(50)	2	(4.1)
		대출빙자형	1,045	(87)	1,344	(112)	740	(123)	11	(9.8)
		합 계	2,444	(204)	1,924	(160)	1,037	(173)	13	(8.1)
	건 수	57,695	(4,808)	45,921	(3,827)	22,041	(3,674)	△153	(△4.0)	

출처 : 금융감독원(2017)

2017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와 불법금융사기 발생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2017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위 두 범죄를 모두 포함한 총 피해 신고는 전반기 대비 1만 2201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5〉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신고내용별 분류									계
	고금리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	대출 사기	불법 대부광고	불법중개 수수료	유사 수신	보이스 피싱	기타*	
2016.상	493	1,857	1,111	13,665	1,064	46	298	4,412	34,386	57,332
2016.하	523	608	1,195	13,539	1,108	39	216	6,533	37,103	60,864
2017.상	525	414	1,118	12,010	871	34	249	6,119	27,323	48,663
비중	1.1	0.9	2.3	24.7	1.8	0.1	0.5	12.6	56.1	100.0

* 법정이자율 상담이 가장 많으며 법률상담,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문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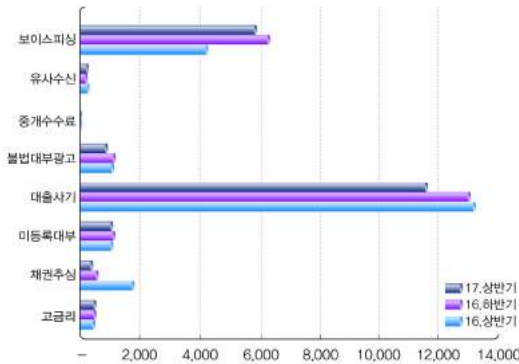
출처 : 금융감독원(2017)

하지만 여전히 4만 8663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 유형별로 2017년 위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3-1-22] 불법사금융 유형별 상담접수 추이 및 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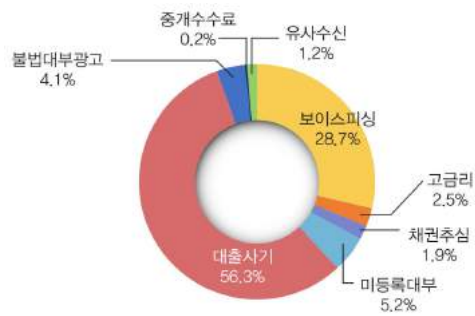
유형별 상담접수 추이

(단위 : 건)



유형별 비중('17.상반기)

(단위 : %)



출처 : 금융감독원(2017)

즉, 대출사기(1만 2010건, 24.7%)가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 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등 순서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9월까지 경찰에 의해 수사되어, 검거까지 된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현황은 <표 3-1-16>과 <표 3-1-1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표 3-1-16>에 나타나듯이, 총 1705건에서 5024명을 검거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검거 건수 대비 22.7%, 검거 인원 수 대비 45.3% 증가하였다. 특히 유사 수신은 전년도 대비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불법대부업의 경우 건수 대비 41.5%, 검거 인원수 대비 45.8%가 증가하여 다른 불법채권추심이나 불법다단계에 비해 더 높은 검거 건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단속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정부가 법정 상한 이자율을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가 줄었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합법적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틈을 불법 대부업체가 파고 들어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16〉 불법사금융 유형별 검거 건수 및 인원

구분	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12	7,298	12,798	5,987	9,713	796	1,361	363	1,127	152	597
2013	2,722	5,749	2,087	3,693	285	522	225	935	125	599
2014	1,802	4,209	1,259	2,330	216	387	232	1,089	95	403
2015	1,417	3,747	781	1,677	198	339	241	1,142	197	589
2016	1,821	5,010	808	1,755	229	472	628	2,053	156	730
2016. 9	1,390	3,458	634	1,365	163	321	476	1,404	117	368
2017. 9	1,705	5,024	897	1,990	200	386	467	1,499	141	1,149
전년대비	22.7%	45.3%	41.5%	45.8%	22.7%	20.3%	-1.9%	6.8%	20.5%	212.2%

출처 : 경찰청(2017)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아래 〈표 3-1-17〉에서 보듯이, 총 1만 6820건 발생하여 171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1만 4024건 1만 8325명을 검거하였다. 전년도 대비 발생과 피해액수가 각각 39.1%, 74.5% 증가하였으나, 검거 건수 및 인원수 또한 전년도 대비 각각 97.8%, 88.4% 증가하였다.

〈표 3-1-17〉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및 인원

구분	발생건수(건)	피해액(억 원)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2013	21,634	1,429	8,143	14,010
2014	22,205	1,887	8,170	12,814
2015	18,549	2,040	15,887	22,644
2016	17,040	1,468	11,386	15,566
2016. 9	12,090	990	6,933	9,482
2017. 9	16,820	1,728	14,024	18,325
전년대비	39.1% ↑	74.5% ↑	97.8% ↑	88.4% ↑

출처 : 경찰청(2017)

2016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도입됐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 명령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반 제도들의 도입으로 전화금융사기 발생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과 다르게 2017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늘어난

것은 범죄 대상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범죄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의 진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표 3-1-18>에서 보듯이 대출 수요가 높은 4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속이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으로 진화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이나, 실물 없이 카드 번호만 있으면 사용가능한 영수증 형식의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여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⁸⁰⁾ 또한, 아래 <표 3-1-19>에서 보듯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면서 원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건수 당 피해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다.⁸¹⁾

<표 3-1-18> 2017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자의 성별·연령 분포

(단위 : 건, %)

구 분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0대 이하	-	(-)	1	(0.0)	1	(0.0)	11	(0.1)	4	(0.0)	15	(0.1)
20·30대	365	(9.5)	2,002	(51.9)	2,367	(61.4)	2,655	(14.8)	2,379	(13.3)	5,034	(28.0)
40·50대	475	(12.3)	517	(13.4)	992	(25.7)	6,007	(33.5)	4,879	(27.2)	10,886	(60.7)
60대 이상	354	(9.2)	144	(3.7)	498	(12.9)	1,276	(7.1)	728	(4.1)	2,004	(11.2)
합 계	1,194	(30.9)	2,664	(69.1)	3,858	(100.0)	9,949	(55.5)	7,990	(44.5)	17,939	(100.0)

* () 안은 각 유형의 피해자 중 해당 연령·성별의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법인 제외)
출처 : 금융감독원(2017)

<표 3-1-19> 최근 3년간 건당 피해금액 현황(월평균)

(단위 : 만 원, 건, %)

구 분	2015년	2016년(A)	2017.상(B)	월평균 증감(율) (B-A)
피해 건수(월평균)	4,808	3,827	3,674	△153 (△4.0)
건당 피해금액	424	418	471	53 (12.7)

출처 : 금융감독원(2017)

80) '17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금융감독원 블로그(<http://fssblog.com/221070353656>).

81) 2017년 상반기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금융감독원 블로그(<http://fssblog.com/221078559869>).

2.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소폭 증가 전망

2017년 전화금융사기에 있어서 기존 공공기관 사칭형 보다 대출빙자 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훨씬 늘어나게 되고, 불법사금융 중에서도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불법대부업 범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1400조라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많은 서민들이 범죄의 피해자로 노출이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수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대출 이자의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의 발생은 범죄에 적당한 대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바, 대출을 필요로 하지만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 이자의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서민들은 대출 또는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제공을 미끼로 하는 불법사금융 및 대출빙자 형 전화금융사기 범죄 대상으로서 매력이 있다.

2018년에는 정부의 가계 대출에 대한 압박은 기준 금리 인상 조치와 최고 금리 인하 조치 등을 통해 계속하여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위험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은행이 2018년 7월쯤 경기개선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2018년 하반기 즈음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⁸²⁾ 2017년 11월 말 1.50%로 올라간 기준 금리는 2018년에 2.0%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⁸³⁾

82) “가계부채 때문에 … 내년 금리인상 늦출 듯”, 디지털타임스, 2017. 12. 6.

83) “[이슈+] ‘금리인상 열차’ 출발 … 저신용자 사채 쏠림 가속되나”, 세계일보, 2017. 12. 3.

[그림 3-2-23] 금리수준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단위 : %, 2017년은 10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리 인상기 고금리 대출 늘어”, 세계일보, 2017. 12. 4.에서 재인용)

시중 은행들은 2018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대출 금리에 이를 미리 반영해오고 있다. 10% 이상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올해 들어 2월 0.3%, 4월 0.4%로 조금씩 늘어나⁸⁴⁾ 위 [그림 3-2-23]에서 볼 수 있듯이 9~10월에는 0.5%까지 올라갔고, 반면에 저금리 가계대출은 2016년 대비 급감하여 2017년 7월 22.4%로 나타났고 이후 계속하여 2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미 2017년 3월 법정 상한 이자율 인하(34.9%→27.9%)에 이어, 2018년 2월부터는 현행 27.9%에서 24%로 한 차례 더 인하될 예정이다. 2017년 3월 인하로 대부금융협회 회원사 중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2016년 3월 79개에서 2017년 6월 말 49개로 30곳이나 줄었는데,⁸⁵⁾ 추가 이자율 인하로 인해 2018년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동시에 수익 유지를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 자격 요건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8년에도 범죄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4) “금리 인상기 고금리 대출 늘어”, 세계일보, 2017. 12. 4.

85) “‘관리사각지대’ 불법 사금융 24조 규모 … 실태조사없이 추정치뿐”, 뉴데일리경제, 2017. 7. 11.

IV.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대응 역량강화

1. 과학수사 환경의 검토

1) 외부 여건의 변화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를 통해 법과학 증거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CSI 효과’⁸⁶⁾ 일반명사가 될 정도로 자취를 남겼다. 이 효과가 남긴 과학수사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미디어와 사회 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이 현상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여건에서 과학수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문과 족윤적 등의 기초적인 증거자료의 절대수치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⁸⁷⁾

더불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2016년 7월 1일 EU에 대하여, 2017년 3월 15일 미국에 대하여 3단계에 걸쳐 법률시장 개방을 완료하였다.⁸⁸⁾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학수사에 대한 요구치는 더욱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2) 시민들의 높아진 요구치에 대한 내부의 준비

2016년 5월 10일 기존의 과학수사센터를 확대·개편한 과학수사관리관실이 출범하였다. 경찰청은 이를 통하여 과학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⁸⁹⁾

과학적 증거 수집을 위해 과학수사 요원을 2인 1조로 현장 감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치 인력이 적정하지 않아 관할 범위가 광역화되고 출동거리가 멀어져 신속한 대응이

86) 법과학 수사물 소설(스카페타 시리즈)에서 시작된 법과학 수사물 드라마는 CSI 효과를 일으키며 초기 원작 작가인 퍼트리샤 콘웰을 역만장자로 만들었고 2015년 전 세계를 강타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현재는 이 드라마에 대한 인기는 사그라지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CSI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

87) 지문은 1만 8860건 → 1만 6279건, 족윤적은 1만 2950건 → 5685건(기준: 2013년 → 2016년)으로 감소하였다.

88)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 외국 로펌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국내 법인과 합작해야만 내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그 지분·의결권 비율이 49%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어, 특히 미국 쪽 대형 로펌의 불만을 사고 있다.

89)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7, 2016, 97~98쪽; 하지만 외형과 달리 이에 따른 인력 증원과 실행동력은 확보되고 있지 않다.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무 공간 협소, 3교대 근무, 상위직위 보직의 부재⁹⁰⁾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전문 인력에 대한 유인이 약하다.

하지만, 과학수사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테러, 국민안전, 치안정책 수립 지원 등에 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요보호자 신속 신원확인을 위한 원스톱 신원확인 시스템의 운영, 뺑소니 및 범죄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현장 감식 체제 구축, 테러 사건에 대한 ‘대테러 현장감식대’ 출범 등이 그 예이다. 결국 과학수사의 업무 영역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경찰 과학수사 발전의 방향

과학수사관리관실은 세계 일류 스마트 치안의 선구자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과학수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법·장비의 첨단화, 인적자원 전문화, 대내·외 협력 강화, 조직인프라 확충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⁹¹⁾

기법·장비의 첨단화는 기법 및 장비 개발을 지속화하여 스마트 치안의 중심 부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체계적 범죄분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포함한다.

인적 자원 전문화는 과학수사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치안 현실의 수요변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이다. 전문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며, 과학수사전문관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교육 및 전문 자격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대내·외 협력 강화는 경찰 중심의 과학수사 거버넌스의⁹²⁾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내적으로 학계 및 관련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의 협력을 포함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포함하여 치안한류 사업과 국제인증의 확대를 포함한다.

조직인프라 확충은 법률적, 조직적 기반을 정비하여 지속적 발전이 계속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조직의 성격을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⁹³⁾화

90) 현장 과학수사요원으로서는 경감 이상의 보직은 전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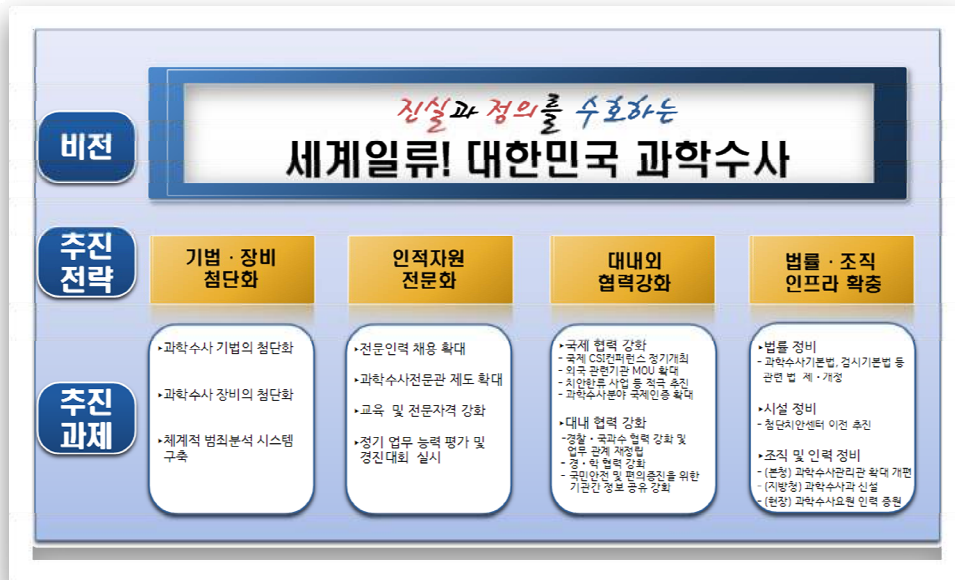
91)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세계일류로 도약을 위한 과학수사 발전 종합 계획”, 2017. 3. 15.

92)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부 역할의 축소와 서비스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조직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자동조동(self-steering)을 확보하여 투입과 산출 양 측면에서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사조를 말한다.

93) 학습조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강압이 아닌 조직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새로운 지식의 창조·

하여 과학수사관리관실이 지식 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3-1-24] 과학수사 추진 방향



출처 : 경찰청(2017)

3. 2018 과학수사 분야의 예상되는 변화

1) 과학수사 전공자 경력 채용 확대 전망

2017년 10월 25일 ~ 11월 1일 간 전화설문으로 실시된 2017년 경찰 과학수사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합만족도는 71.20점으로 이 중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⁹⁴⁾ 현장에서 감식활동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이 과학수사 요원들의 장비 사용 미숙, 형식적인 현장 감식,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 등을 인지하고 결국 현장에서 지문이나 단서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성의 부족과 연계시키게 되며, 사건 미해결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⁹⁵⁾

획득·공유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지식이 창출되고 이에 기초하여 환경 적응력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조직'이라고 정의된다.

94) 분야별 만족도는 '출동 신속성'(76.2점, 전년 대비 1.7% 상승) > '친절성'(74.3점, 전년 대비 1.3% 상승) > '전문성'(68.8점, 전년 대비 4.2% 상승)의 순이다.

〈표 3-1-20〉 과학수사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표본 수	신속성	친절성	전문성	전반	환산	
성별	남성	715	77.1	75.3	69.2	69.8	72.2
	여성	276	74.1	71.8	67.8	64.5	68.5
연령	20대	100	77.8	72.3	70.8	67.5	71.1
	30대	214	76.9	75.1	69.8	68.0	71.6
	40대	235	77.0	74.2	68.9	68.6	71.4
	50대	260	75.6	74.3	67.3	67.8	70.6
	60대	182	74.6	74.6	68.5	69.6	71.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0%p

출처 : 경찰청(2017)

현재는 대부분의 과학수사요원이 인사 발령 이후 부서 배치를 받고서야 업무를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수사관’ 등을 통한 내부적 인증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인지도는 떨어진다. 따라서 과학수사 전공자를 경력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검시조사관 107명, 범죄분석요원 30명, 과학수사 전공자 64명이 근무 중이며, 연구·감정 기능의 연구 직렬 특채추진 등과 아울러 매년 10~20명씩 경력자를 특채하고 있다.

〈표 3-1-21〉 과학수사 전공자 채용현황

채용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3	13	6	4	4	4	4	4	10	4	4	4	4	4	4	4	4	2
'13	17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14	21	3	2	1	1	1	1	1	3	1	1	1	1	1	1	1	1	0
'15	25	5	2	1	1	1	1	1	4	1	1	1	1	1	1	1	1	1
'16	17	3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출처 : 경찰청(2017)

2017년에도 경찰청은 서울 2명 등 전국 10명의 일반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를 순경 급으로 채용하여 중앙경찰학교와 수사연수원에서 총 37주의 교육을 거쳐 형사·지역 경찰 등 일선으로 배치할 예정이다.⁹⁵⁾

95) 반면에 중간 진행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및 형사에게 알려 준 경우에는 만족감과 더불어 전문성 역시 높게 평가 되어 대민 서비스 행동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상심리, 연쇄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지원과 범죄예방, 치안대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한 범죄분석요원 5명도 경장 직급으로 특채하여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범죄분석관은 Geopros⁹⁷⁾ 등 통계정보와 KICS⁹⁸⁾ 등 사건정보를 분석하여 기존 중요 범죄 및 이상 범죄에 대한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여 수사뿐만 아니라 예방과 정책 분야 등 다양한 경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과학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채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22〉 경찰청·지방청 범죄분석요원 배치현황 (2016. 4 기준)

구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	경기 (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원	32	3	6	2	2	1	2	1	1	2	1	2	2	1	1	1	1	2	1

2005년 이후 총 56명 특채, 현재 32명 근무, 나머지는 타부서 근무 또는 퇴직
출처 : 경찰청

2) 과학수사 위상의 국제화 예측

실무와 학문 중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 다만 수례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양자가 서로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다.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수사관리관실에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CSI 컨퍼런스’는 돋보인다. 2003년부터 ‘과학수사의 날’(11. 4)에 매년 개최하던 ‘과학수사 학술세미나’를 2015년부터는 국제컨퍼런스로 외연을 넓혀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2016년에는 영국·미국·일본·네덜란드가 참가하였다.

2017년에도 11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영국·일본·미국·캐나다가 참가하여 점차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컨퍼런스는 경찰청이 (사)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방과학수사연구소 등 기관과 관련 대학 교수들 뿐 아니라 초·

96) 2017월 12월 1일 총 10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여 12월 9일부터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하였고, 중앙학교의 34주 교육과 수사연수원의 3주 교육을 마친 후 2018년 9월 중에 부임할 예정이다.

97)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는 범행 시간대와 수법을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하여 다음 범행 장소를 예측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98)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문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중·고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⁹⁹⁾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과 그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안한류의 일환으로 과학수사요원들을 파견하여 우리의 선진 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91개국의 경찰관 등 35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파견은 4개국 14명에 이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국외 체류 우리 국민 대상의 강력범죄 발생시, 과학수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수사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우리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7년 과학수사요원의 해외 파견은 과테말라(4.24~5.5, 7.17~7.28; 2주 2회), UAE 아부다비(8.13~8.17, 9.15~9.23, 9.21~9.30; 1주 3회), 나이지리아(9.8~9.24; 2주 1회), 베트남 하노이(10.25~11.8; 2주 1회) 등지에서 행하여졌다.

3) 인증의 표준화 및 국제인증 획득성과

경찰청은 또한 지문 분야에서 감정 처리절차 및 방법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증되었다. 인증은 한국인정기구(KOLAS)¹⁰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기준을 통과하여 발급한 인증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 인증이 협정된 국가에서는 자국의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공인받은 것으로 취급된다. 현재 경찰청은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을 통하여 미국과 영국 등 59개국의 국제적 인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찰청의 인증은 2014년 7월 30일부터 4년간 유효하고, 이후 갱신을 통하여 계속 4년씩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이후 유전자, 미세증거물 분석, 필적, 문서감정, 영상분석 등에도 한국인정기구에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며, 이러한 표준인정과 국제적 공인은 우리 과학수사가 표준화, 객관화, 중립화된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공인받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과학수사의 수준을 인정받을 것을 의미한다.

99) 실제 사건 현장을 재구성한 현장 체험전은 어린 학생들에게 셜록홈즈의 꿈을 키워 주고 과학수사와 인권수사를 알리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우리 과학수사의 수준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실제 홍콩·라이베리아·아부다비 등에서도 직접 비용을 들여 참석하러 오고 있다.

100)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직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23개국이 KOLAS의 인증을 인정해 주고 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 강화 전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업무의 약 96%를 경찰에서 의뢰받고 있다.¹⁰¹⁾ 신속한 경찰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지원체제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원의 설치는 한정적이어서¹⁰²⁾ 중요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감정의 신속한 회보는 사건의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시민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국민을 위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절도·폭행과 관련한 비교적 단순한 DNA와 알코올 등의 증거물을 신속히 감정하는 감식·감정센터의 설치 중심이 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우리 과학수사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은 2018년에 지리적으로 떨어진 제주와 경기북부지방청 등 2개소의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감정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¹⁰³⁾ 현재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감식·감정센터’의 설립을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센터 설립의 표준 모델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찰과 업무협조가 가장 많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국가장기 과학수사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의 신설 예상

법률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증거의 무결성 입증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력관계 뿐 아니라 경찰청 자체 내에서의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경찰청은 형사과 내에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있으며, 담당하는 업무도 과학수사운영(기획, 장비관리, 수법 등 과학수사 자료 관리), 현장감식, 범죄분석(프로파일링, 거짓말탐지, 법최면 등), 지문감정, 영상분석, 미세증거분석 등 증거물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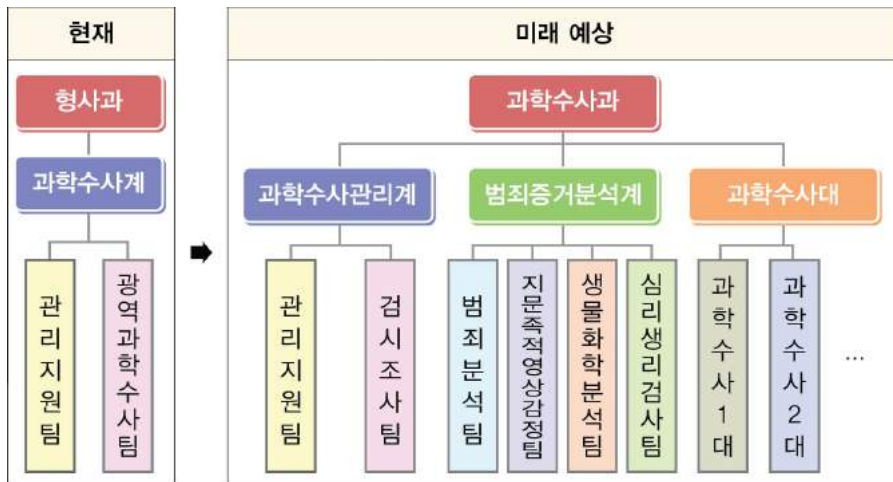
101) 2016년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감정건수 47.7만 건중 45.5만 건이 경찰에서 의뢰된 감정 건이다.

102) 본원은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며, 분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총 6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103)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감정의뢰건수가 많은 곳이면서, 역시 의뢰건수가 많은 서울·인천과 관할이 중첩되며, 제주의 경우에는 감정건수는 가장 적으나 지리적으로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감정의뢰에 항공편의 이용 등 불편이 있는 지역이다.

먼저, 체계적으로는 경찰청 조직과 조화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과학수사관리관실이 국장급 조직으로 있고, 수사국 편제 안에 형사과가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지방경찰청은 형사과¹⁰⁴⁾ 안에 과학수사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과학수사계)가 있다. 합리적인 편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청에서 2018년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3개소부터 별도의 과학수사과를 신설·운영하는 계획은 고무적이다.

[그림 3-1-25] 지방경찰청 예상 조직도



출처 : 경찰청

또 다른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2014년 10월부터 꾸준히 광역과학수사체제를¹⁰⁵⁾ 안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검시조사관은 연간 1인당 436.9건의 변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청별로 1~3명이 배치된 범죄분석요원의 경우 통합분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은 아니다. 또한 감정과 분석업무는 경찰관이 겸업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진다.¹⁰⁶⁾ 기술적인 업무, 특히 과학수사의 증거 관련 업무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104)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1과에 소속되어 있다.

105) 광역과학수사체제란 2인1조의 현장감식을 통해 증거물의 객관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으로, 현재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서별 2인1조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방청별(광역단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06) 전문 분야의 업무를 맡기려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탁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청이 지문·축적의 감정과 영상분석 및 거짓말탐지기 업무를 교육 수료한 경찰관에 맡기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NYPD)의 경우 증거수집 전담팀, 포렌식팀에서 증거 수집과 감정을 실시하는데 전원 경찰관이 아니며, 영국도 감정관·분석관이 경찰서에 주재하며 근무하지만 역시 경찰관이 아니다. 프랑스도 감식, 감정, 분석은 직종별로 '엔지니어', '기술자', '전문요원' 등으로 분류하여 채용하고 있다.

V. 사이버범죄 전망

경찰은 지난 2014년 사이버안전국 출범 이래 지난 2016년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사이버범죄 발생은 2014년 11만 109건에서 2015년에 14만 4679건, 2016년 15만 3075건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한 반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14년에 65.3%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2015년에 72.5%, 2016년에는 83.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에 들어서는 9월까지 사이버범죄는 10만 1653건 발생하였고, 8만 4197건을 검거하였다(검거율 82.8%). 이는 2016년 동기 대비 사이버범죄가 11만 5099건 발생하고, 9만 6310건을 검거(검거율 83.7%)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건수는 2016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하였으며 검거건수도 12.6% 감소한 것이다.

경찰의 그간 지속적인 사이버범죄 차단 노력에 따라 이처럼 2017년 9월까지 발생건수는 2016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에, 검거율은 약 83%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검거인원 규모의 축소 가운데서도 2017년 구속 수사 인원이 2016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여 중요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23〉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4~2017. 9)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4	110,109	71,950	65.3%	59,220 (731)
2015	144,679	104,888	72.5%	75,250(1,041)
2016	153,075	127,758	83.5%	75,400(1,319)
2016. 9	115,099	96,310	83.7%	56,756(1,036)
2017. 9	101,653	84,197	82.8%	45,169(1,126)
전년대비	-11.7%	-12.6%	-0.9%p	-20.5%(8.7%)

* ()는 검거인원 중 구속인원

*** 사이버범죄 통계는 2014년부터 사이버범죄 죄종 등에 새로운 통계 산출방식이 적용되어 2013년까지의 통계와는 세부 분류체계에서 상이함

출처 : 경찰청(2017)

2017년 9월까지 사이버범죄의 발생유형을 보면 인터넷사기 및 저작권침해 죄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8만 3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및 명예훼손·모욕 등의 죄종이 주로 포함된 불법콘텐츠 범죄가 1만 560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DDoS 등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총 2399건 수준에 머물렀다.

보다 세부적인 범죄 유형을 보면 예년과 같이 인터넷 사기(7만 1980건, 전체 사이버 범죄의 70.8%)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명예훼손·모욕(9760건, 전체 사이버범죄의 9.6%)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저작권침해(5292건), 사이버 금융범죄(4996건), 사이버 도박(3883건) 등 세 범죄 유형 그룹이 사이버 범죄의 주종을 이루는 양상을 띠고 있다.

〈표 3-1-24〉 2017년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017. 9 기준

구분	유형	총 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소계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기타	소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발생(건)		101,653	2,399	1,917	33	119	330	15,604	1,818	3,883	9,760	47	96
검거(건)		84,197	1,077	835	23	86	133	12,930	1,649	3,861	7,303	41	76
검거인원(명)		45,169	820	469	46	149	156	16,007	1,554	4,714	9,601	42	96
구분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소계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침해	기타						
발생(건)		83,650	71,980	4,996	294	5,292	1,088						
검거(건)		70,190	63,716	2,257	213	3,294	710						
검거인원(명)		28,342	20,357	2,508	215	4,403	859						

* 사이버범죄 유형은 2013년까지 '사이버테러형 범죄' 및 '일반 사이버범죄'로만 구분하였으나, 최근 다양화한 사이버 범죄 실태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등으로 구분 출처 : 경찰청(2017)

경찰은 사이버 음란물 차단에도 주목하여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집중단속(2016. 11. 21~2017. 1. 20)을 통해 총 298건 362명(구속 7명)을 검거하였다. 집중단속으로 특히 일반음란물 대량공급자 39명 검거, 음란물 서버 12개 사이트 차단, 아동음란물 게시물 1275건 삭제, 범죄수익금 5억 9천만 원 환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탈세혐의자 642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¹⁰⁷⁾

107)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일반음란물>의 경우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부당이득(100만 원 이상)을 취한 대량공급자 25명 검거사건(경남·사이버)이 있고, <아동음란물>의 경우 음란물 게시·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을 통해 1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7명 검거(2명 구속)

〈표 3-1-25〉 사이버 음란물 집중단속 추진결과(2016. 11. 21 ~ 2017. 1. 20)

구분	계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건수	298	164	134
인원(구속)	362(7)	187(4)	175(3)

출처 : 경찰청(2017)

그 외에도 경찰청은 2017년 상반기 중에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에 따른 사이버반칙 집중단속(17. 2. 7 ~ 5. 17, 100일간)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터넷 먹튀(사기), 금융사기,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단속을 겨냥한 것으로 추진결과 총 3만 1557건 1만 3009명을 검거하고, 특히 단순 피의자보다는 상습적이고 피해가 심한 중범(重犯) 중심 단속의 성과로 344명 구속하였다.

〈표 3-1-26〉 사이버 반칙 특별단속 추진결과(2017. 2. 7 ~ 5. 17, 100일간)

구분	계	인터넷 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건	31,557	27,590(87%)	943(3%)	3,024(10%)
명(구속)	13,009(344)	8,068(310)	1,114(31)	3,827(3)

출처 : 경찰청(2017)

사이버범죄 수사 활동에서 긴요한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2009년 5493건, 2010년 6247건에서 2015년 2만 4295건, 2016년 3만 228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7년간 연평균 28.8%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기기의 증거분석 건수는 2009년 658건에서 2016년 2만 6408건으로 연평균 69.5%씩 급증함으로써 전체 디지털 증거분석 활동에서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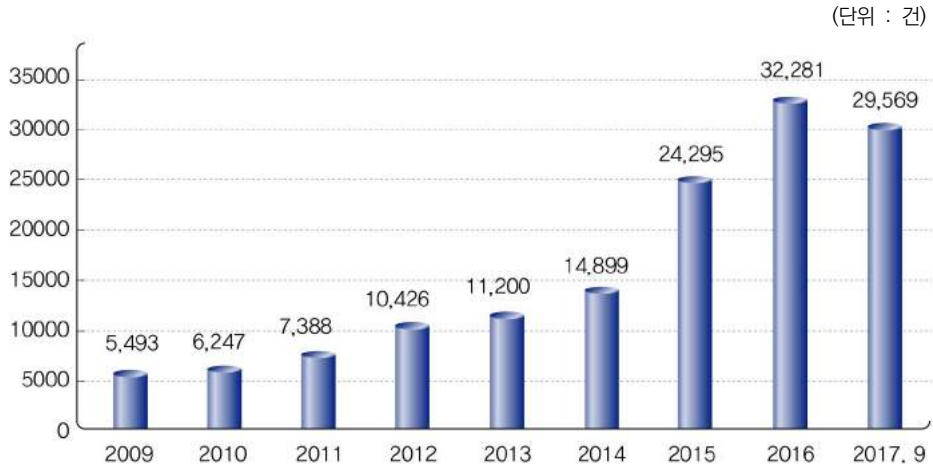
2017년 들어서도 9월까지 전체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2만 9569건에 달하여 전년 동기 2만 4853건에 비해서 18.0%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이미 2016년에 이루어진 총 분석건수 약 3만 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17년에도 스마트폰 등 혁신을 가속화하는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중요도가 증가하는 상황 아래, 이처럼 급증하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신

사건(부산 · 사이버) 등이 있다.

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분석관 증원, 첨단 분석장비의 확보, 분석기법의 연구·개발에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6]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추이



출처 : 경찰청(2017)

<표 3-1-27>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컴퓨터기기 (PC, 노트북 등)	디지털기기 (CCTV, 네비)	모바일기기 (스마트폰, 휴대폰)	파일/기타 (해킹, 암호, DB 등)
2009	5,493	3,820	187	658	828
2010	6,247	3,864	276	1,611	496
2011	7,388	3,356	479	3,352	201
2012	10,426	3,830	393	5,870	333
2013	11,200	3,138	483	7,332	247
2014	14,899	3,079	510	10,656	654
2015	24,295	3,357	712	19,526	700
2016	32,281	3,923	794	26,408	1,156
2016. 9	24,853	2,971	629	20,265	988
2017. 9	29,569	3,427	688	24,816	638
전년대비	18.0%	15.4%	9.4%	22.5%	-39.4%

출처 : 경찰청(2017)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전망

1) 사물인터넷(IoT) 및 비트코인 보안위협 증가

해킹범죄 발생은 2016년 1878건으로 전년 2247건에 비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17년 들어 9월까지 발생건수는 이미 1917건으로 2016년의 총 발생건수를 넘어서 전년 동기간 1372건에 비해서 39.7%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 경찰의 해킹범죄 대응 노력을 통해, 매년 20% 대에 머물러 있던 해킹범죄 검거율이 2017년 9월 현재 43.6%로 증가하여 40% 대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해킹은 계정도용과 침입, 자료유출 및 훼손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한 보안위협과 사이버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범죄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3-1-28〉 해킹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7.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2,247	524	23.3%	633
2016	1,847	537	29.1%	615
2016. 9	1,372	393	28.6%	432
2017. 9	1,917	855	43.6%	469
전년대비	39.7%	117.6%	15.0%p	8.7%

출처 : 경찰청(2017)

가정용 네트워크 카메라가 해킹될 경우 개인 사생활이 즉시 노출되고, 자동차가 해킹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진료 의료기기가 해킹될 경우 생명이 위협해 질 수도 있다. IoT 기기에 보안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oT 기기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2014년 1월 미국에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TV와 냉장고가 해킹되어 수십만 건의 스팸메일을 보낸 사고가 있었고, 2015년 8월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가 해킹되어 마음대로 조작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자동차 회사가 차량 140만 대를 리콜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oT 보안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2016년 IoT 기기를 감염시켰던 악성코드 ‘미라이(Mirai)’ 사태 이후 보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높아졌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¹⁰⁸⁾ 그러나 2017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 관련 대책을 지시하고¹⁰⁹⁾ IP 카메라나 스마트 홈 기기를 해킹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와 다수의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IoT 보안 위협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¹¹⁰⁾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IoT 기기가 보급되어 IoT 기기의 수가 휴대폰의 수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¹¹⁾ 이 같은 IoT 기기의 증가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시도하는 보안위협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의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 스마트 TV, NAS(Network-Attached Storage) 등 IoT 기기에 대한 해킹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관련, 2017년 3분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국내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B사의 비트코인 유출 사고라 할 수 있다. 6월 말부터 원인 불명의 웹 사이트 마비 사태를 시작으로 직원PC를 통해 고객 계정 정보가 도난당하고 이를 통해 회원 계좌의 비트코인이 인출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었다. 또한, 도난당한 고객정보 파일이 문서 공유 사이트에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양산되기도 하였다.

[그림 3-1-27] 비트코인 거래소 B사 사고 관련 보도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17, 5쪽.

108) “한국, 미라이 봇넷 감염 기기 급증”, 데일리시큐, 2017. 2. 2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3분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2017, 7쪽.
 109) “문재인 대통령,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 마련하라”, 한국경제, 2017. 8. 30.
 110) “누군가 몰래 엿본다 ... IP 카메라 해킹 무더기 적발”, MBC뉴스데스크, 2017. 9. 19.
 111) “꼭 봐야할 2018년 보안위협 동향 5가지”, 보안뉴스, 2017. 11. 15.

국내 D사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중 30% 이상이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약 45%가 SSL 보안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등 해킹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¹¹²⁾ IoT 기기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운영체제와 처리 능력의 한계 등으로 적절한 보안기능을 미처 갖추지 못한 취약 지점들이 공격자의 표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에서도 2018년 비트코인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사이버범죄자들이 가상화폐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한 블록체인 자체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격이 쉽고 수익성이 높은 비트코인 거래나 비트코인 지갑을 가로채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¹³⁾

이처럼 IoT 기기 보급과 확산에 편승하여 개인적 보안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주요 공공·민간시스템에 대한 정보유출 및 비트코인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들이 2018년에도 지속되면서 그 수법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악성코드 위협의 지속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도메인 및 ULR에서의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2010년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이용자 또한 늘어나면서 악성코드도 계속 증가하였다. 모바일 악성코드의 경우 2012년 26만 2699건이었던 발견 건수는 2015년 321만 99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지난 2016년에도 398만 3064건으로 전년 대비 24.0% 증가하였다. 다만 2017년 들어서 최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는 67만 2251건으로 2016년 동기 115만 1724건에 비해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모바일 환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악성코드 피해는 특히 랜섬웨어의 등장으로 더욱 사용자를 위협하고 있다.

〈표 3-1-29〉 모바일 악성코드 발견 건수(2011 ~ 2017)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9~11	2017. 9~11
발견건수	262,699	1,251,586	1,430,247	3,210,992	3,983,064	1,151,724	672,251

출처 : AhnLab, *ASEC REPORT*, 2015-2016; AhnLab, 보안통계.

112) “대다수 비트코인 거래소 웹방화벽 및 SSL 보안서버 등 해킹위험에 무방비 노출”, 데일리시큐, 2017. 7. 31.

113) “내년 비트코인 노리는 사이버범죄 급증할 것”, 머니투데이, 2017. 12. 6.

납치된 사람에 대한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결합한 용어인 랜섬웨어(Ransomware)는 사용자의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암호화된 파일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해킹수법이다.

국내에서도 2015년 4월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글화된 랜섬웨어가 최초 유포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 당시 랜섬웨어 사건 16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 및 피해 사례가 확산되어 왔다. 랜섬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악성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될 뿐만 아니라, 회사문서나 윈도우 업데이트 등으로 위장한 이메일 형태로도 유포됨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전 세계적 규모로 큰 피해를 입혀 온 랜섬웨어의 경우 최근까지도 계속 발생되어 2017년 상반기의 양상을 보면 그 위협은 적색경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만하다. 한동안 잠잠했던 록키(Locky) 랜섬웨어가 복귀한데 이어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케르베르(Cerber) 랜섬웨어도 더욱 강력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초에 등장한 워너크립터(Wanna-Cryptor)는 단기간에 확산되며 세계 곳곳의 주요 기관 및 기업을 마비시켰다.¹¹⁴⁾

한편 범죄수익 모델과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일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하면서 랜섬웨어 수익 모델과 시장이 형성된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는 랜섬웨어 시장 자체의 확대와 함께 기존 랜섬웨어 재활용의 일반화·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 as a service, RaaS)의 보편화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랜섬웨어를 비롯한 악성코드에 대해 범죄자들이 추적 우회기술을 개발하고 가상화폐(비트코인) 사용을 넓혀감에 따라¹¹⁵⁾ 앞으로도 경찰의 추적수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에 있는 반면, 악성코드 수익 모델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는 쉬워져 2018년 역시 악성코드 불법시장을 통한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14) AhnLab, ASEC REPORT, vol. 87, 2017, 12쪽.

115) 악성코드 및 비트코인 사건과 관련, 최근 2017년 7월에도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웹호스팅업체의 가상호스팅 서버의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경찰청 사이버테러).

2. 불법콘텐츠 범죄 전망

1) 사이버 도박의 지능화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3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매출기준 83조 782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조사(2차)에서의 75조 1474억 원 보다 11.5%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불법 인터넷도박은 25조 355억 원, 사설 스포츠도박은 21조 8119억 원, 사설 경마·경륜·경정은 12조 734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1-30〉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종류	불법 인터넷도박*	사설 스포츠도박**	불법 하우스도박	불법사행성 게임장	경주 게임***	사설 카지노	계
1차 조사 (2008)	320,000	-	N.A.	115,596	31,817	69,615	537,028
2차 조사 (2012)	170,985	76,103	193,165	187,488	99,250	24,484	751,474
3차 조사 (2016)	250,355	218,119	62,700	145,152	127,342	34,155	837,822

* 온라인카지노, 웹보드, 릴게임

** 1차 조사에서 사설 스포츠도박은 불법 인터넷도박 범주에 포함됨

***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출처 :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2016, 150쪽

가장 규모가 큰 불법 인터넷도박 규모는 2012년도 당시 추정 금액(17조 985억 원) 보다 무려 46.4%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불법도박 금액의 평균 증가율 11.5%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토도와 같은 사설 스포츠도박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서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IT 기술발전,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 등으로 2016년 사설 스포츠도박의 매출은 2012년 2차 조사 당시 7조 6103억 원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대 속에 최근 사이버 불법도박 사건의 발생건수 및 경찰에 의한 검거건수도 지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경찰의 지속적인 불법 사이버 도박 차단 노력에 따라 금년 들어서는 그 발생 및 검거 규모가 다소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7년 9월까지 사이버 도박의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는 각각 3883건 발생, 3861건 검거로 전년 동기 대비

45.2% 감소하였다.

〈표 3-1-31〉 사이버 도박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7.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3,352	3,365	100.4%	5,459
2016	9,538	9,394	98.5%	13,702
2016. 9	7,092	7,043	99.3%	10,625
2017. 9	3,883	3,861	99.4%	4,714
전년대비	-45.2%	-45.2%	0.1%p	-55.6%

출처 : 경찰청(2017)

이러한 사이버 도박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그간 성장해 온 상당한 크기의 불법시장 규모는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그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FIFA 러시아 월드컵이 6월부터 열릴 예정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2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 행사 일정과 병행하여 불법도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2018년에도 불법 스포츠도박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최근 사이버 도박은 해외 서버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 중계¹¹⁶⁾·인출조직 별도 운영¹¹⁷⁾ 등의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향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와 국제화로 신속한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적으로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민·경 협력 차원의 누리갑스¹¹⁸⁾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16) 102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운동경기 영상 등을 중계하며, 16.8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 16명 검거(서울·사이버팀, 2017. 8. 10)

117) 중국에서 2,7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지시로 국내 ATM기에서 대량의 현금을 출금하던 피의자 검거(경기남부·성남수정, 2017. 8. 16)

118)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발족하였으며 2017년 11월 현재 총 807명이 활동하고 있다.

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지속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불법콘텐츠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불법콘텐츠 범죄 발생건수(2만 8438건)의 절반을 상회하는 52.4% (1만 4980건)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5년 1만 5043건으로 큰 폭의 증가(69.4%)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발생건수는 1만 4908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약 1만 5천 건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경찰의 사건 검거율은 70.7%로 높아졌다.

2017년 들어서 9월까지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9760건으로 전년 동기 1만 1500건과 비교하여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발생 규모의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 반면에 검거율은 74.8%로 전년 대비 5.2%p 높아진 상태이다.

〈표 3-1-32〉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7.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15	15,043	10,202	67.8%	14,017
2016	14,908	10,539	70.7%	14,545
2016. 9	11,500	8,006	69.6%	11,089
2017. 9	9,760	7,303	74.8%	9,601
전년대비	-15.1%	-8.8%	5.2%p	-13.4%

출처 : 경찰청(2017)

비록 2015년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급증세가 꺾이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확대되어온 주요 원인은 방송인을 비롯한 유명인사의 악성댓글 피해에 대한 고소 사례가 늘어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고소가 대중화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2018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고소사건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예인 등 피해 유명인사들이 과거와 달리 악성댓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 대량 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성 사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어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비난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상에서의 분쟁이 사실상 합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선거와 관련 인터넷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지후보·정당 간 경쟁, 정치성향 웹사이트 상 논쟁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악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선거 관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고소 사건도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전망

1) 모바일 환경에서의 금융범죄 위협 증가

사이버 금융범죄는 경찰의 적극적인 악성 금융범죄 척결 활동과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2016년의 경우 몸캠피싱이 1193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피싱과 파밍 외에 스미싱, 메모리해킹, 기타 사이버 금융범죄까지도 전체적으로 급감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 금융범죄총 건수가 6721건으로 전년 대비 상당 폭 감소(-54.2%)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들어서도 9월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 규모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4996건에 머물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금융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밍이 19.7% 감소하고, 메모리해킹도 41.7%나 감소하였다. 다만 스마트폰 이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스미싱 범죄가 28.7% 증가하고 피싱 또한 비슷한 규모인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 화상채팅 등을 유도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발생 건수는 2016년 급증한 이래 2017년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9월까지 몸캠피싱 발생 건수를 보면 총 932건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캠피싱은 과거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높은 만큼, 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범죄 위협으로서 그 증가 추세를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33〉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건수(2015 ~ 2017. 9)

연 도	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기타
2015	14,686	1,726	9,233	1,120	124	102	2,381
2016	6,721	427	2,817	562	12	1,193	1,710
2016. 9	5,044	304	2,103	464	12	894	1,267
2017. 9	4,996	392	1,688	597	7	932	1,380
전년대비	-0.1%	28.9%	-19.7%	28.7%	-41.7%	4.3%	8.9%

* 2015년 7월부터 사이버범죄 유형 분류에서 금융범죄 내 '몸캠피싱' 추가.

출처 : 경찰청(2017)

한편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4월과 7월에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이체·송금 및 입출금 등 운영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따라 거래상의 편의성이 보다 높아지고는 있으나, 신분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통장대여, 또는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계좌개설 및 실질이용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상 범죄 유형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의 보완, 범죄예방 및 피해회복 모형 개발 등 실질적 대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 저작권 고소 사건 우려의 지속

2017년 들어 9월까지 사이버 저작권 침해 건수는 5292건으로, 전년 동기 7597건에 비해 30.3%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정점에 달했던 사이버 저작권 침해 건수 1만 8770건(검거건수 8832건, 검거인원 1만 2533명)로부터, 2016년 침해 건수 9796건(검거건수 5616건, 검거인원 8037명) 등으로 줄어온 추세를 고려할 때, 감소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경찰의 사건 검거율은 2015년 47.1%에서 2016년 57.3%, 2017년 9월 62.2%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사이버 저작권 침해 차단 및 단속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34〉 사이버 저작권 침해 발생 및 검거 현황(2015~2017. 9)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 인원
2015	18,770	8,832	47.1%	12,533
2016	9,796	5,616	57.3%	8,037
2016. 9	7,597	4,383	57.7%	6,190
2017. 9	5,292	3,294	62.2%	4,403
전년 대비	-30.3%	-24.8%	4.5%p	-28.9%

출처 : 경찰청(2017)

고소 대상 저작물은 음원, 사진, 동영상, 폰트(글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터넷 소설 등 다양하다. 문제는 침해 발생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친고죄’라는 점을 악용해 대량 고소가 다시 지속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이다.¹¹⁹⁾

일선 관서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대량 고소의 남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명백한 무혐의 사건에 대한 각하 처리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가 사실상 민사적 성격의 사안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고소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현행의 손쉬운 고소 접수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결국 고소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9) 사이버 저작권 침해는 전체 사이버 범죄의 12.9%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 단계에서 기소율은 단 35%(2015년 기준)에 머무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



제2절 생활안전 분야 전망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126
II. 젠더폭력 전망	130
III. 학교폭력 전망	141

I. 112신고 추이와 전망

1. 112신고 건수 안정세 유지 전망

〈표 3-2-1〉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12신고 건수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112신고는 2013년 이후 1900만 건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처음으로 1900만 건을 넘은 이후 2014년에 조금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다시 1900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1440만 건 정도 접수되었고, 이 추세라면 대략 1920만 건 정도로 집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에도 비슷한 건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들어 112신고 건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입장에서 112신고 건수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불과 10여 년 전인 2007년도에 112신고 건수가 620만 건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¹²⁰⁾ 이는 휴대폰 등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112신고가 간편해졌고, 경찰활동을 서비스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에 경찰청은 출동신고와 비출동신고를 구분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¹²¹⁾

〈표 3-2-1〉 최근 5년간 112신고 접수 현황

(단위 : 천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9
총 접수	19,115	18,778	19,104	19,567	14,409
출동신고	9,344	10,387	10,719	10,701	8,011
비출동신고	9,771	8,390	8,385	8,865	6,398
출동신고 비중(%)	48.9	55.3	56.1	54.7	55.6

출처 : 경찰청(2017)

120) 최근 10여 년간 112신고 건수 등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경찰청, 2016 경찰통계연보, 2017, 74쪽.

121) 2010년, 경찰은 112신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12신고 시 필요성·긴급성을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긴급출동(Code 0,1), 비긴급출동(Code 2,3), 비출동(Code 4)등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출동신고 비중은 90%수준에서 50%중반대로 감소하였다.

2. 112신고 유형별 전망

〈표 3-2-2〉는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12신고를 유형별로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각 유형별로 일정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중요범죄는 40~60만 건 정도, 기타범죄는 220~280만 건 정도, 질서유지는 290~350만 건 정도, 교통은 180~210만 건 정도, 기타경찰업무는 280~440만 건 정도, 타기관·기타는 640~840만 건 정도로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2018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요범죄는 소폭의 증가도 치안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체 112신고 건수에서 중요범죄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도에는 2.4% 정도에 머물렀으나, 2016년 처음으로 3%를 넘었고 2017년은 현재까지 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2018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2-2〉 최근 5년간 사건종별 112신고 접수 현황

(단위 : 천 건)

구 분	계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	타기관, 기타
2013	19,115	452,345	2,601,594	2,983,473	1,868,052	2,854,471	8,355,684
2014	18,778	488,304	2,757,954	3,181,228	2,051,685	3,526,842	6,772,092
2015	19,104	461,639	2,582,801	3,373,601	2,076,256	4,126,991	6,483,595
2016	19,567	594,910	2,257,913	3,467,011	2,088,421	4,351,256	6,627,572
2017. 9	14,409	479,148	1,666,499	2,636,712	1,443,698	3,267,851	4,915,567

* 중요범죄란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의미한다.

출처 : 경찰청(2017)

3. 112신고 현장출동 관련 전망

〈표 3-2-3〉은 2013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112신고 출동시간을 보여준다. 표의 좌측은 긴급출동 대상인 Code 0, 1의 출동시간이고, 우측은 비긴급출동 대상인 Code 2, 3신고의 출동시간을 나타낸다.¹²²⁾ 2013년~2014년도에는 출동시간이 3~4분 이

122) 각 Code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de 0 :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

내에서 관리되었으나, 2015년도에 출동시간이 처음으로 5분을 넘은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2018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출동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도착보고 관행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신고자를 직접 만나거나 현장에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 도착처리를 하도록 지속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 순찰차 수동도착 처리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통계상 현장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²³⁾ 최근의 현장출동 시간 증가는 이러한 변화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2-3〉 최근 5년간 112신고 평균출동시간

(단위 : 분, 초)

구 분	긴급출동 (Code 0,1)					비긴급출동 (Code 2,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착시간	04:30	03:50	05:04	05:02	05:21	04:34	04:00	05:15	05:20	05:52

출처 : 경찰청(2017)¹²⁴⁾

4. 112신고 비출동 관련 전망

〈표 3-2-4〉에서 보듯, 최근 5년간 112 비출동(Code 4)은 900만 건 전후로 유지되고 있다. 2013년에는 977만 건에 이르렀으나 2014년 이후 3개년 연속 800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도에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도에도 800만 건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Code 1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
- Code 2 :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Code 3 :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 Code 4 : 긴급성이 없는 민원 상담 신고

123) 자동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전으로 도착 보고를 하면, 지령요원이 폴맵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 도착처리를 하고 있다.

124) 2017년 자료는 2017년 11월 기준이다.

〈표 3-2-4〉 Code 4 처리 현황

(단위 : 천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11
계	9,771	8,390	8,385	8,865	7,765

출처 : 경찰청(2017)

5. 2017년도 시행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전망

신속한 현장출동이 국민안전 확보 및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대응시간을 단축하거나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고자들도 실제로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한다고 체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이 신속출동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과 신고자들이 체감하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은 ‘지령을 완료하고 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도착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고자는 ‘접수경찰관과 통화를 완료한 이후’부터 순찰차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도착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찰이 관리해온 도착시간과 신고자가 생각하는 도착시간 간에 ‘통화완료 후부터 지령’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해 온 셈이다.¹²⁵⁾

이러한 괴리를 좁히기 위해 경찰은 2017년 3월 ‘112 긴급신고 신속출동을 위한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¹²⁶⁾ 경찰청은 2017년도에는 현장대응시간 7% 단축을 목표로 삼고 지방청별로 ‘현장대응시간 단축목표’를 차등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현장출동 시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5분 중반 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찰차 도착시간의 경우 ‘자동도착처리’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출동 경찰관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현장 대응시간에 대한 개념을 신고자 위주로 재정비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현장대응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현장대응시간 및 자동도착 처리율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행도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지속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8년도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5) 2016년 기준, 총 64초(통화완료 후 처리시간 31초, 지령소요시간 33초)의 갭이 발생하였다.

126) 현장대응시간이란 통화완료 후 현장도착시까지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즉, 신고자 입장에서 느끼는 출동시간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기존의 출동시간 통계와는 별도로 현장대응시간을 수치화하고 단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II. 젠더폭력¹²⁷⁾ 전망

1. 성폭력 피해자 수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 예상, 카메라 등 이용 성폭력 예방 필요성 증대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성폭력의 추이에 대한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성폭력의 개념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련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넓게 파악한다면, 성희롱 등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성폭력을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분석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국한된다.

먼저, 광의의 개념에 따른 성폭력의 추이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¹²⁸⁾」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의 유형을 강간, 성추행, PC 등을 이용한 음란메시지 등, 몰래카메라, 스토킹, 성기노출, 성희롱으로 세분화하여,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8일까지 7만 20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성폭력의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암수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실태조사는 경찰청의 공식 범죄통계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평생 성폭력 피해율은 2013년 10.2%, 2016년 11.0%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난 1년간 피해율에 관한 설문에서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3년이 1.5%, 2016년이 0.8%로 2013년 조사에 비하여 무려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란 메시지 등에 의한 피해율¹²⁹⁾ 역시 약 80.2%p 가량 줄어드는 등 최근 성폭력 피해율은 지난 2013년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음란메시지 등에 의한 피해율은 피해 유형 중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127)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특정 성(gender)에 대한 혐오에 기인하여 저질러지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간접적 폭력을 의미한다. 남성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도 그 개념 범위에 포함되지만, 주로 여성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본 전망에서는 그중에서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에 한정하여 젠더 폭력을 논하고자 한다.

128) 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6.

129) PC, 휴대폰, 일반 전화 등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 또는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 희롱, 비하, 공격 댓글, 쪽지, 문자 등을 받는 행위로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 메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도구로서의 SNS 및 모바일 메시지의 악용 가능성, 불법촬영의 위험성 등에 대한 대책은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¹³⁰⁾

〈표 3-2-5〉 성폭력 피해율

(단위 : %)

구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PC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등	몰래 카메라	스토킹	성기노출	성희롱
	계	성추행 (폭행 협박 미수반)	성추행 (폭행 협박 수반)	강간 (미수 포함)							
지난 1년간	2013	전체	1.5	1.4	0.2	0.13	27.8	-	0.2	1.7	0.9
		여성	2.7	2.4	0.4	0.2	26.4	-	0.5	3.0	1.9
		남성	0.3	0.3	0.0	0.0	29.8	-	0.0	0.3	0.0
	2016	전체	0.8	0.8	0.0	0.0	5.5	0.1	0.1	1.0	0.5
		여성	1.5	1.5	0.0	0.0	4.0	0.1	0.1	1.6	0.9
		남성	0.1	0.1	0.0	0.0	7.0	-	-	0.4	0.1
평생	2013	전체	10.2	9.9	1.1	0.9	51.0	-	1.7	21.3	5.3
		여성	19.5	18.7	2.3	1.7	52.3	-	2.9	36.8	10.1
		남성	1.3	0.0	0.0	0.0	49.6	-	0.6	6.4	0.7
	2016	전체	11.0	10.7	0.4	0.6	13.6	0.1	0.9	16.9	3.9
		여성	21.3	20.6	0.9	1.1	12.1	0.2	1.5	30.4	7.2
		남성	1.2	1.2	-	-	15.0	-	0.3	4.0	0.8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2013, 2016)

다음으로,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 범죄로 한정한다면 경찰청의 통계가 유용한 분석 자료가 된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및 검거건수는 지난 5년간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9월까지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는 2만 4172건, 검거건수는 2만 3380건, 검거인원은 2만 419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4.6%, 14.9%, 14.1% 증가하였다.

130) 경찰청에서는 2017년 9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불법촬영)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촬영 집중검거, 불법카메라 유통단속, 사이버 음란물 단속·삭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6〉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조치(명)	
					구속	불구속
2012	22,933	19,386	84.5%	21,259	2,492	18,767
2013	28,786	25,591	88.9%	24,835	2,651	22,184
2014	29,517	28,034	95.0%	25,306	2,292	23,014
2015	30,651	29,539	96.4%	27,166	2,159	25,007
2016	28,993	27,863	96.1%	29,414	1,926	27,488
2016. 9	21,084	20,347	96.5%	21,210	1,509	19,701
2017. 9	24,172	23,380	96.7%	24,193	1,477	22,716
전년대비	14.6%	14.9%	0.2P%	14.1%	-2.1%	15.3%

출처 : 경찰청(2017)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른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본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와 상반된다. 이는 암수화되어 왔던 성폭력 범죄가 점차 표면화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MeToo Movement)¹³¹⁾」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는 등 과거에 비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공식 통계상 성폭력 범죄의 증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더불어 성폭력 관련 구제 절차의 홍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7〉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유무

(단위 : %)

구분	없음	있음
전체	62.1	37.9
여성	51.9	48.1
남성	86.0	14.0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2016)

131) 미국 여배우 엘리사 밀라노가 시작한 성폭력 고발 운동으로 SNS에 「나도 그렇다」라는 「Me Too」에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고백함으로써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2017년 10월 15일 처음 시작된 이래 전 세계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SNS 상에서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표 3-2-8〉 정부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노력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분	없음	여성	남성
전혀 모른다	15.3	15.2	15.5
들은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69.3	71.5	67.2
내용은 잘 알고 있다	15.3	13.3	17.3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2016)

2. 가정폭력 신고율은 여전히 저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시스템의 지속적 구축 필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¹³²⁾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벌어지고 가·피해자가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피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거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경찰에서 처리한 가정폭력사건 및 인원은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인한 관심도 집중과 젠더폭력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여전히 강조될 것이다.¹³³⁾

1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재(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를 말한다.

133) 2015년 순 경찰관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신설하여, 기존 형사과에서 일반 폭력사건과 같이 처리하던 가정폭력 사건을 이관,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3-2-9〉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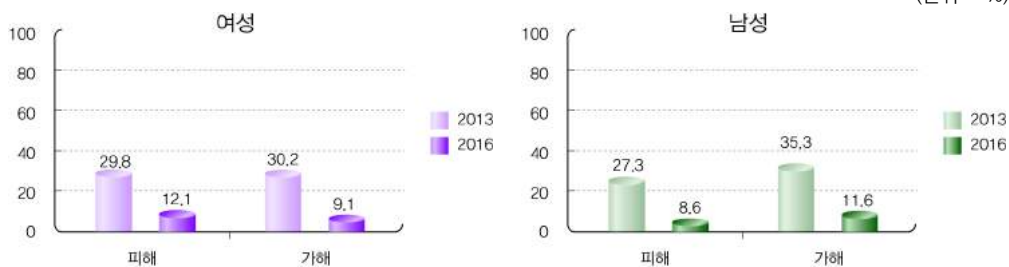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명)	
			구속	불구속
2014	17,557	18,666	250	18,416
2015	40,828	47,543	602	46,941
2016	45,619	53,511	503	53,008
2016. 9	35,004	40,834	411	40,423
2017. 9	28,866	33,815	309	33,506
전년대비	-17.5%	-17.2%	-24.8%	-17.1%

출처 : 경찰청(2017)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발생한 부부 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피해 및 가해 경험이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정서적 폭력(여성)의 경우 2013년 28.6%에서 2016년 10.5%로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 부처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2015년 1월 가정폭력 전수 합심조사제를 도입하고, 2016년 4월 학대예방경찰관(기존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확대 개편)을 출범시키는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림 3-2-1〕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을 비교(2013, 2016)

(단위 : %)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3,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암수화와 조기 발견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위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여전히 6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의 57.5%에 그치는 등 시민들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의 인지

을 역시 결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3-2-10〉 부부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 의사

(단위 : %)

구분	본인가정 발생시			구분	이웃가정 발생시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신고의사	61.4	67.2	55.5	신고의사	65.0	66.7	63.2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6)

〈표 3-2-11〉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도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83.5	82.4	84.7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65.3	63.6	67.1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52.5	51.1	54.0
가정 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57.5	57.0	58.0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	62.1	61.0	63.1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73.1	71.8	74.4

출처 :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2016)

3. 채팅앱 등 스마트폰을 악용한 성매매 우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경찰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특성상 성매매의 단속 추이를 토대로 성매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단속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 성매매의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다.

먼저, 업종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매매 단속 건수는 해마다 차이가 있기

는 있지만, 신변종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 비율은 대체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매매의 형태가 기존의 점포형 성매매에서 벗어나, 마사지, 오피스텔, 립카페 등 신변종 업소로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12〉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단위 : 건)

구분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안마시술소	주요 신변종업소				
					계	마사지	오피스텔	립카페	기타
2013	279	203	71	276	4,543	1,235	615	228	2,465
2014	299	432	220	383	6,159	2,575	1,546	304	1,734
2015	456	451	163	242	6,010	2,277	1,809	247	1,677
2016	231	295	60	215	5,180	1,866	2,006	242	1,066

출처 : 경찰청(2017)

또한 죄종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특히 문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9월말까지 성매매 전체 건수 및 검거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5%, 33.4% 감소한 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속한 건수 및 인원은 각각 80.0%, 13.7% 증가하였다. 이들에 대한 성매매 비율의 증가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 계층이 성적으로 학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13〉 성매매 단속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명)			
	합계	성매매	아청법	합계	성매매	아청법	구속		불구속	
							성매매	아청법	성매매	아청법
2013	9,018	8,668	350	22,617	21,782	835	207	59	21,575	776
2014	9,305	8,977	328	25,251	24,475	776	244	83	24,231	693
2015	8,742	8,455	287	20,097	19,387	710	243	79	19,144	631
2016	15,474	15,086	388	42,950	41,929	1,021	442	135	41,487	886
2016. 9	10,948	10,643	305	28,876	28,093	783	320	103	27,773	680
2017. 9	9,220	8,671	549	19,612	18,722	890	349	94	18,373	796
전년대비	-15.8%	-18.5%	80.0%	-32.1%	-33.4%	13.7%	9.1%	-8.7%	-33.8%	17.1%

출처 : 경찰청(2017)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증가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채팅앱의 성행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채팅앱 등을 통한 개인 간의 성매매는 전통적인 업소형 성매매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행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가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이 그 피해자가 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¹³⁴⁾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은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협업, 채팅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33일 동안 실시된 하반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는 523건, 단속인원은 830명이며, 그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각각 120건, 168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층의 인구비율을 감안했을 때, 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앱은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14〉 채팅앱 집중 단속현황

(단위 : 건, 명)

단속기간	전체 (성매매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2016. 2. 22 ~ 5. 31(100일)	1,972건 / 8,502명	168건 / 419명
2016. 11. 28 ~ 2017. 1. 26(60일)	494건 / 951명	61건 / 105명
2017. 7. 24 ~ 8. 25(33일)	523건 / 830명	120건 / 168명

출처 : 경찰청(2017)

청소년들의 높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을 감안할 때¹³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간의 성매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성매매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4. 데이트 폭력은 증가 추세, 주요 치안 이슈 중 하나로 계속 부각 예상

연인사이 또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남녀 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최근 여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도 데이트 폭력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34) 김혁,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2017, 69~70쪽.

135)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7.6%이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1.7%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인터넷 이용 제한해야”, 세계일보, 2017. 11. 16(www.segye.com/newsView/20171116001683, 2017. 11. 27 검색).

특히 2017년의 경우 9월말 기준 사건처리 인원은 총 7888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하여 무려 18.2%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홍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와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2-15〉 데이트 폭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상해	폭행	폭처법 위반	살인(미수포함)	강간·강제추행
2015	7,692	2,306	3,670	1,105	102	509
구분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미수포함)	성폭력	경범죄 등
2016	8,367	6,233	1,017	52	224	841
2016. 9	6,674	4,915	864	42	193	660
2017. 9	7,888	5,788	921	51	120	1,008

출처 : 경찰청(2017)

더욱이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의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6994건, 경범죄 위반 등이 2153건, 체포·감금·협박이 1139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및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도 각각 122건, 51건이 발생하는 등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표 3-2-16〉 데이트 폭력 신고유형별 처리 현황(2017. 1~9)

(단위 : 건, 명)

유형	신고건수	처리현황		
		계	구속	불구속
총계	10,459	7,888	336	7,552
폭행·상해	6,994	5,788	135	5,653
체포·감금·협박	1,139	921	81	840
살인	51	51	46	5
성폭력	122	120	32	88
경범죄 등	2,153	1,008	42	966

출처 : 경찰청(2017)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 및 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장기간 지속·은폐되기 쉽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에 이르기까지 폭력 피해의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

지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실시한 「데이트폭력 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¹³⁶⁾ 전체 설문
에 답변을 완료한 성인 여성 중 무려 61.6%가 폭력 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성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여성 중
95.2%는 피해 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여타 범죄
에 비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의 경우 직접적인 개념 정의나 행위 규제를 규율하
는 법령이 없어 살인, 성폭력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따른 대응 외에는 경찰이 적극
적으로 개입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물론,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2016년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데
이트폭력에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
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시켜 대비
하도록 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 직무집
행법」에 근거하여 경고장을 적극 발부함으로써,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보호
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등 각
종 신변보호제도와 지원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이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¹³⁷⁾

그런데 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별 조치만으로는 그 대응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조문은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적지
않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없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근거하여 법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혼 또는 법률혼 상태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
이 각종 개입을 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¹³⁸⁾

136) 손문숙·조재연,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 전화, 2016, 1~37쪽. 동 보고서는
응답을 완료한 108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137) 경찰청,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추진”, 2017. 3. 3 보도자료.

138) 일본의 경우 2013년 「배우자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동거 중이거나 동거하였던 남녀 간의 관계에도 동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김희,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6,
103~106쪽).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¹³⁹⁾ 데이트 폭력은 앞으로도 중요한 치안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 법안의 성립 및 이를 근거로 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가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139)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102, 2016. 6. 3)”,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063, 2016. 9. 2)”,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537, 2016. 9. 30)”,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2641, 2016. 10. 13)”,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8108, 2017. 7. 20)” 등이 있다.

Ⅲ. 학교폭력 전망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증가 추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지난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개정을 통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이다. 즉, 2004년 제정된 동 법에서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행위유형으로서 ‘폭행, 협박, 따돌림’이 해당되었으나, 2008년 개정 법률에서는 ‘상해,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 행위’가 추가되었고, 2012년 개정 법률에서는 ‘강제적인 심부름’과 ‘사이버 따돌림’이 추가되었다. 관련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확대되어 온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실태는 전국적 규모의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그리고 경찰에서 집계하는 공식적인 학교폭력 통계를 통해 파악된다. 각 조사 및 집계 자료는 나름의 특성을 갖는데, 교육부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서, 학교당국이나 경찰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경험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는 학교당국에 드러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결과로서,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검거 현황 자료는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집계자료로서 각각 그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를 포함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중요한 지표로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이 지표는 학교폭력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추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서 조사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지고 있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수 실태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전체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6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12년(1차)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3%를 나타냈으나, 2013년(1차) 조사에서는 2.2%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서 2017년(1차) 조사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0.9%를 기록하고 있다.

〈표 3-2-17〉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

조사 시기	2012(1차)	2013(1차)	2014(1차)	2015(1차)	2016(1차)	2017(1차)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2.3	2.2	1.4	1.0	0.9	0.9

* 연도와 병기된 차수는 해마다 두 차례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차수임.
출처 : 교육부(2017)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 규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온·오프라인 표집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 방식의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것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처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이후 감소 추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즉, 2012년 12.0%에 이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4년에는 3.8%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조사에서는 4.6%, 2016년 조사에서는 6.4%로 증가함으로써 추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18〉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단위 : %)

조사 시기	2012	2013	2014	2015	2016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2.0	6.3	3.8	4.6	6.4

출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7)

대표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관인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결과상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의 의미는 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당국은 학

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심의 처리하는데, 심의건수 추이는 학교당국에 드러난 학교폭력 발생추이를 가장 잘 반영한다.

〈표 3-2-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심의 건수	24,709	17,749	19,521	19,968	23,673

출처 : 교육부 2017 국감자료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감소 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13년 동 위원회 심의건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1만 7749건을 기록했는데, 2014년 이후 3년 동안 심의건수는 증가하여 2016년에는 2만 3673건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추이로 본다면,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은 2013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추세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장중심의 학교폭력대책 수립 연도인 2013년에는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지만, 이후 줄곧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12년 시기의 수준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표 3-2-20〉 학교폭력 검거 현황

(단위 : 명)

조사 시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9	2017. 9
검거인원	23,877	17,385	13,268	12,495	12,805	9,214	10,431(13.2% ↑)

출처 : 경찰청(2017)

학교폭력 발생 추이 변화는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이후 2017년 9월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만 3877명이던 검거 가해학생 수는 2015년 1만 249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만 280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7년 9월 현재에는 2016년 동기대비 13.2% 증가한 상태이다. 경찰에 검거된 가해학생 수 추이로 보더라도 학교폭력 발생 추이는 한 동안 지속된 감소추세를 멈추고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2-21〉 학교폭력 신고·도움 응답 추이(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

조사 시기	2014(1차)	2015(1차)	2016(1차)	2017(1차)
피해 후 알림·신고 비율	78.3	79.6	80.3	78.8
목격 후 알림·도움 비율	79.1	85.2	87.3	78.9

출처 : 교육부(2017)

한편, 학교폭력 발생 추이의 변화는 학교폭력 피해 및 목격 신고율의 변화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 그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한 비율은 2016년 1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7년 1차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1.5%p 감소했고, 학교폭력을 목격 후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준 비율도 2016년 1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1차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나 주변사람들의 신고의식이 학교폭력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학교폭력 신고의식의 고양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 학교폭력 신고율의 감소는 학교폭력 억제요인의 약화로 해석된다.

교육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추이와 경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현황 추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실태조사상의 피해응답률 추이가 보여주는 대로, 한동안 지속된 학교폭력 감소추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 및 목격 신고율의 변화도 학교폭력 추세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상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여전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의 개편이 논의되고 상반기 전수조사, 하반기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상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상승 전환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의 증가 추이,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추이에 기초하여 볼 때, 최근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를 멈추고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학교폭력 집단성 및 폭력성 지표 안정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폭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 학교폭력의 대표적 이미지는 집단적인 따돌림과 폭력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개별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 현황자료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인지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와 조치 결과를 담고 있다. 학교폭력의 집단화 지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수치는 심의건당 가해학생 수이다. 이는 한 사건에 몇 명의 가해학생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표 3-2-22〉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

(단위 : 건, 명)

연도	심의 건수	가해 학생 수	심의 건당 가해 학생 수
2011	7,443	27,021	3.63
2012	24,709	42,232	1.71
2013	17,749	29,325	1.65
2014	19,521	28,949	1.48
2015	19,968	28,393	1.42
2016	23,673	32,947	1.39

출처 : 교육부 2013 국감자료; 교육부 2017 국감자료

위 〈표 3-2-22〉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동 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 평균 수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는 평균 3.63명이었는데, 이후 5년 동안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39명으로 낮아졌다. 최근 6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는 6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의 감소추세는 학교폭력 집단화 경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당 가해학생 수 추이를 통해 볼 때,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집단화 경향은 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함께 주목해야 할 특성은 폭력성이다. 폭력성은 학교폭력의 질을 결정하는 특성으로서 폭력적인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체감 안전도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물리적 신체폭력 발생 비중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행위유형별 피해응답 건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응답 건수 추이는 학교폭력의 폭력성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표 3-2-23〉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 건수(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단위 : 건)

조사 시기	2013(1차)	2014(1차)	2015(1차)	2016(1차)	2017(1차)
신체 폭행	4.7	3.1	2.4	2.2	2.2

출처 : 교육부(2017)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 천 명당 신체 폭행 피해건수는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1차) 조사에서 학생 천 명당 신체폭행 피해건수는 4.7건으로 조사되었는데, 2014년(1차) 조사에서는 3.1건, 2015년(1차) 조사에서는 2.4건, 2017년(1차) 조사에서는 2.2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3-2-24〉 학교폭력 가해유형 중 상해·폭행비율(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위 : 건, %)

연도	가해유형 계	상해·폭행	상해·폭행 비율
2012학년도	28,754	16,525	57.5%
2013학년도	19,980	11,702	58.6%
2014학년도	21,130	12,628	59.8%
2015학년도	21,459	12,703	59.2%
2016학년도	24,761	14,347	58.0%

* 각 학년도는 해당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9일까지임.

출처 : 교육부 국감자료 재구성(2016, 2017)

이러한 경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서도 확인된다. 학교폭력의 폭력성은 가해유형 중에서 상해와 폭행의 비중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유형 가운데 폭행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상해와 더불어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가해 유형에 속한다.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시 ‘강제적인 심부름’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학교폭력 유형으로 추가 포함된 후, 학교폭력 유형상의 새로

은 변화는 없으므로 2012년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유형 비교는 가능하다. 2012학년도부터 2016 학년도까지 5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유형 중 상해와 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60%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2014학년도에 59.8%를 기록한 후 2016학년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6학년도 학교폭력 가해유형에서 상해와 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58.0%로서, 2015학년도 대비 1.2%p 감소한 상태이다.

최근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학교폭력의 흉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흉포화의 내용을 이루는 집단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지표상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자료에 근거해 볼 때,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폭력성은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집단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학교 내 재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이다.

3.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 증가 추세

학교폭력 가해유형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금품갈취, 강요, 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정보,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등을 포함되는데, 각 가해유형별 증가추이로 볼 때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성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표 3-2-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

(단위 : 건)

조사 시기	2012	2013	2014	2015
성폭력 심의건수	652	878	1,429	1,842

출처 : 교육부(2016)

학교폭력의 유형으로서 학생 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심의건수 추이에서 나타난다. 동 위원회의 성폭력 심의건수는 2012년 65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성폭력 심의건수는 2.8배 증가했다.

〈표 3-2-26〉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유형별				조치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기타
2011	21,957	14,837	3,902	444	2,774	103	16,228	1,473	4,153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333	15,615	2,657	5,272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94	11,016	1,824	4,251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167	8,586	1,191	3,324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93	9,157	1,059	2,186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62	9,852	1,097	1,794
2016. 9	9,214	6,751	840	989	634	52	7,083	781	1,298
2017. 9	10,431	7,577	865	1,261	728	53	7,882	971	1,525
전년대비	13.2%	12.2%	3.0%	27.5%	14.8%	1.9%	11.3%	24.3%	17.5%

출처 : 경찰청(2017)

학생 간 성폭력 증가 추이는 경찰에서 집계한 학교폭력 범죄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이 개입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유형별로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으로 구분되는데, 폭행·상해와 금품갈취 사건이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444명이던 성폭력 가해학생은 2016년 1364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9월 현재 1261명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한 상태이다.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도별 성폭력 심의건수와 경찰의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에 근거해 볼 때, 학생 간 성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다.

법률적으로 성폭력범죄에는 강간·강제추행 행위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을 포함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집계자료와 경찰의 성폭력 사건집계자료도 이러한 법률적 성폭력 범죄개념에 근거하여 성폭력 사건이 집계되고 있는데, 학생 간 성폭력 증가는 구체적 행위유형으로 보자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속칭 ‘몰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찰의 범죄통계에 의하면, 18세 이하 미성년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은 572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25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미성년 범죄자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 간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는 성폭력범죄 유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등 비접촉형 성범죄가 증가한 데 따

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27〉 미성년 범죄자 비접촉형 성범죄 발생추이

(단위 : 명)

조사 시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접촉형 성범죄 인원	572	734	820	801	892	1,258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2011~2016)

인터넷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도 음란물 유통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음란물 유통공간의 확장은 성폭력 증가 추세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날로 확장되는 외적 환경과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학교 밖 가해학생 증가 추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물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그 경우이다. 이 사건의 가해학생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 학교폭력의 실태는 경찰의 학교급별 학교폭력 현황에서 나타난다.

〈표 3-2-28〉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유형별				학교급별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초	중	고	학교밖(%)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1,182	11,845	8,795	2,055(8.6)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593	6,513	5,857	4,422(25.4)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291	4,502	4,276	4,199(31.6)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357	3,127	3,842	5,169(41.4)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358	3,365	3,957	5,125(40.0)

출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2017)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인계된 학교폭력 사안은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학교폭력 사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최근 40%에 이르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난 5년 동안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2012년에는 8.6%였는데, 2015년과 2016년에는 40%대에 이르고 있다. 경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급별 현황자료에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까닭은 경찰에 검거되는 사안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외에도 학교폭력대책 사안 처리과정에서 퇴학 처리되거나 자퇴하여 더 이상 재학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해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떠한지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학교폭력의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29〉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추이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년범죄	전체	107,018	90,694	78,794	80,321	76,356
	학교 밖	37,817	40,411	34,403	36,185	32,466
	비율(%)	35.3	44.5	43.6	45.0	42.5

출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2017)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에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소년범(만 14세~18세)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5.3%였는데 2013년에는 44.5%로 크게 높아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범죄는 드러난 현상의 이면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위기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가정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기 가정이 증가하면서 제대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의 보호와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와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다. 반면에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관리와 통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과 비행 예방을 위한 관리 및 보호 지원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사건과 강릉 여고생 집단폭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정 혹은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관리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때 학교폭력 개선효과는 비로소 체감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교통분야 전망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154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157

I. 교통 환경의 변화와 전망

1. 교통 관련 지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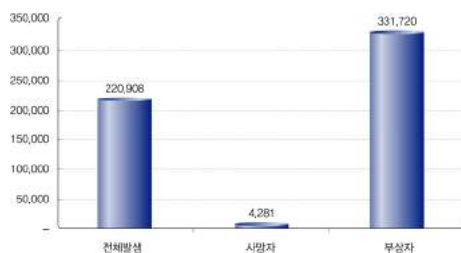
최근 교통여건을 설명하는 교통관련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인구 5117만 명, 도로연장 10만 8780km, 자동차 등록대수 2180만 3351대, 운전면허 소지자 3119만 359명, 교통사고 발생건수 22만 908건으로 나타났다.

〈표 3-3-1〉 주요 교통 지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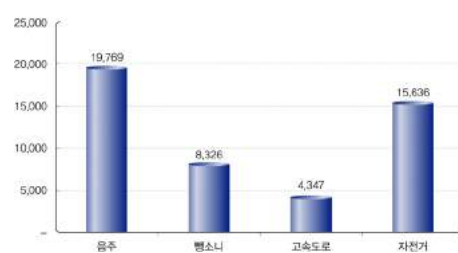
연도	인구 ¹⁾ (천명)	도로연장 ²⁾ (km)	자동차 등록대수 ³⁾ (천대)	교통사고 발생건수 ⁴⁾	운전면허 소지자 ⁵⁾ (천명)
2007	48,456	103,019	16,428	211,662	24,681
2008	48,607	104,236	16,794	215,822	25,268
2009	48,747	104,983	17,325	231,990	25,822
2010	48,875	105,565	17,941	226,878	26,402
2011	48,989	105,931	18,437	221,711	27,251
2012	50,004	105,703	18,870	223,656	28,263
2013	50,219	106,414	19,401	215,354	28,848
2014	50,423	105,673	20,117	223,552	29,544
2015	50,801	107,527	24,755	232,035	30,293
2016	51,170	107,527	21,803	220,908	31,190

출처 : 1), 2), 3) 통계청, e-나라지표(kosis.kr), 2017. 12.
4), 5) 경찰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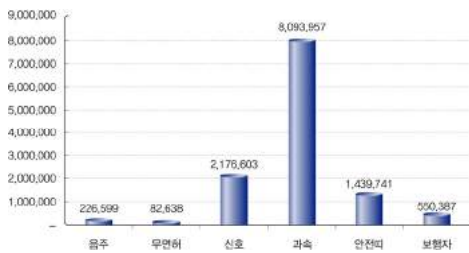
[그림 3-3-1] 2016년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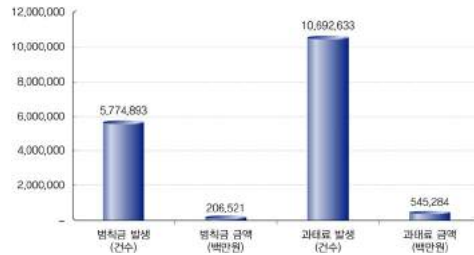
[그림 3-3-2] 2016년 부문별 사고



[그림 3-3-3] 2016년 교통단속



[그림 3-3-4] 2016년 범칙금 및 과태료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는 발생 22만 908건, 사망 4281건, 부상 33만 1720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종류별로 분류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8326건, 고속도로 교통사고 4347건, 자전거 교통사고 1만 5636건이 발생하였다. 교통단속 부문에서는 현장 교통단속이 1548만 4675건이고, 그 중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22만 6599건이었으며 무인 교통단속은 955만 36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교통단속 범칙금 부과가 577만 4893건에 2065억 2100만원, 과태료가 1069만 2633건에 5452억 840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민간에서 교통경찰에 신고되는 영상(블랙박스), 신고엽서, 전화, 방문 등의 신고건수가 109만 1435건이 접수(2015년, 65만 5291건)되어 처음으로 1백만 건을 돌파하는 급신장세를 보였다.

2.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교통 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 관련 주요 지표는 인구, 도로연장, 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 수 등이다. 교통의 변화요인은 이들 각 주요지표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유발요인과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지표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의 증감과 가족구성의 변화, 평균수명의 변화, 생산활동 인구의 증감, 직장과 가정의 이동패턴 등이다. 특징적인 변화는 최근 10년간 ‘노인인구 > 세대수 > 인구증가율’ 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활동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의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수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대수,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늘고 있어 교통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이를 처리할 도로연장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증가(1.2%)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도로용량 증가에 의한 교통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교통 여건은 계속 악화

될 전망이다.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180만 3351대로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운전면허 소지자도 3119만 359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여 교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통 유발요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교통 정책과 첨단 교통기술 개발에 의한 효과로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은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사고 사망자가 2015년 대비 7.9%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4281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1.96명으로 OECD 평균 1.1명에 비해 2배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1.1명)의 진입과 중·장기적으로는 OECD 최상위 그룹(0.5명)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혁신적인 대책마련과 실천이 중요하다.

2018년에는 이러한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자율주행 및 C-ITS¹⁴⁰⁾ 기술 등 첨단교통기술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스마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신호제어기도 디지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이다. 또한 비혼잡 교통신호제어기법 도입, 고속도로 운영관리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 강화, 교통경찰 특채인력 활용, 고령자 및 중증환자 운전면허 관리, 도로교통법 현실화 등 정책과 기술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선순환 구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0)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과 차량, 차량과 교통시설, 차량과 사람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및 위험정보를 주고 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교통시스템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

1. 2018년 전체 교통사고는 예년 수준, 사망자 수 감소 예상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연평균 변화율은 0.43%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는 연평균 3.58%, 부상자는 0.13% 감소하였다.

〈표 3-3-2〉 전체 교통사고 현황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07	211,662	437	106	6,166	12.7	3.1	335,906	693	168
2008	215,822	444	106	5,870	12.1	2.9	338,962	697	166
2009	231,990	476	111	5,838	12.0	2.8	361,875	742	174
2010	226,878	464	106	5,505	11.3	2.6	352,458	721	164
2011	221,711	453	120	5,229	10.7	2.8	341,391	697	185
2012	223,656	447	119	5,392	10.8	2.4	344,565	689	152
2013	215,354	428	93	5,092	10.1	2.2	328,711	654	142
2014	223,552	444	96	4,762	9.3	2.0	337,497	661	143
2015	232,035	455	111	4,621	9.0	2.2	350,400	687	167
2016	220,908	432	101	4,281	8.4	1.9	331,720	649	152

출처 : 1) 경찰청(2017)
2) 통계청, e-나라지표, 2017. 12. 검색

2017년도 9월말 기준 경찰통계(잠정)에 의하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만 200건으로 2016년보다 1.7% 감소하였다. 사망자도 3019명으로 0.3% 감소하였으며, 부상자 역시 23만 7086명으로 3.4% 감소하였다.

〈표 3-3-3〉 전년 대비 전체 교통사고 현황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6. 9	162,896	3,028	245,373
2017. 9	160,200	3,019	237,086
전년대비	-1.7%	-0.3%	-3.4%

출처 : 경찰청(2017), 본 통계는 잠정통계로서 경찰청의 확정통계 발표로 변경될 수 있음

2016년과 2017년의 1월~9월 통계를 이용해 연말 통계를 추정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만 7100건, 사망자 4260명, 부상자 32만 4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4〉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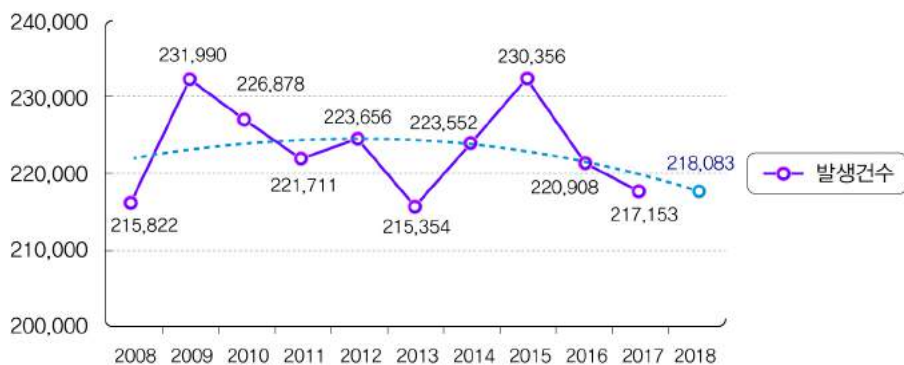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17 (추정)	217,153	427	100	4,268	8	2	320,442	627	147

2018년도 전체 교통사고 발생을 전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의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트렌드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예측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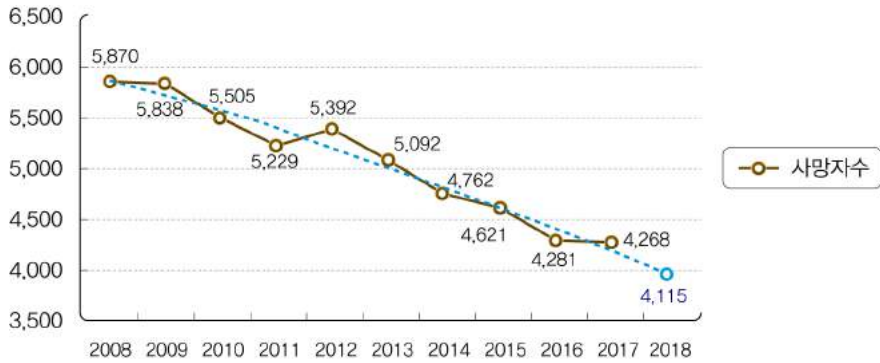
〈표 3-3-5〉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예측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수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 1만 대당
2018 (예측)	218,083	427	100	4,115	8	2	320,040	626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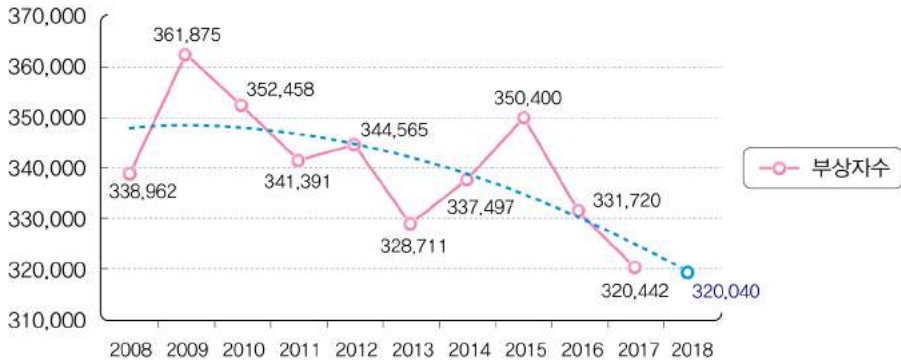
[그림 3-3-5] 2018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예측결과



[그림 3-3-6]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결과



[그림 3-3-7] 2018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결과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8년도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예상되나, 사망자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약 21만 80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4100명 선에 진입하며 2017년 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부상자 수 역시 32만명 초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음주교통사고는 확연한 감소세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연평균 2.9% 감소하여 전체 교통사고가 0.43%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음주량의 감소와 함께 다양화, 건전화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행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데이터라고 분석된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약 12% 선을 정점으로 반전되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 976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8.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교통사고 10건 중 1건 정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20% 감소하여 괄목할 만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율이 아직도 11.2%나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5% 이상 높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신규 단속방법 개발과 엄격한 처벌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동일 기간 동안 부상자 수는 전년 대비 6.4%의 감소폭을 보였다. 전체 부상자 수에서 차지하는 음주운전 부상자의 비율도 약 10%로 아직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6〉 음주운전 교통사고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07	28,416	13.4	991	16.1	51,370	15.3
2008	26,873	12.5	969	16.5	48,497	14.3
2009	28,207	12.2	898	15.4	50,797	14.0
2010	28,641	12.6	781	14.2	51,364	14.6
2011	28,461	12.8	733	14.0	51,135	15.0
2012	29,093	13.0	815	15.1	52,345	15.2
2013	26,589	12.3	727	14.3	47,711	14.5
2014	24,043	10.7	592	12.4	42,772	12.6
2015	24,399	10.5	583	12.6	42,880	12.2
2016	19,769	8.9	481	11.2	34,423	10.4

출처 : 경찰청(2017)

2016년 9월 기준으로 경찰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각각 3.6%, 20.1%, 6.4%의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7〉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9월 기준)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6. 9	14,384	338	25,033
2017. 9	13,871	270	23,429
전년대비(%)	-3.6%	-20.1%	-6.4%

출처 : 경찰청(2017), 본 통계는 잠정통계로서 경찰청의 확정통계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음

2016년과 2017년의 1월~9월 통계를 이용해 2017년 연말 통계를 추정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9000건, 사망자 380명, 부상자 3만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8〉 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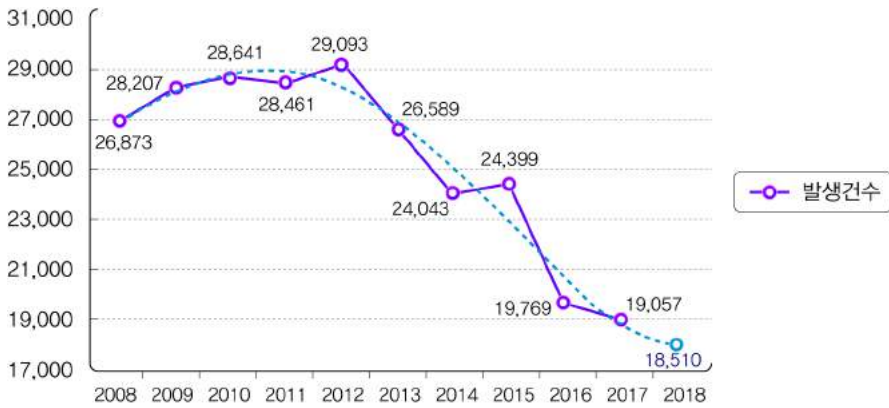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17 (추정)	19,057	8.7	384	9.0	32,220	10.1

2018년도에 발생할 음주교통사고를 전망하기 위해, 과거의 사고데이터 트렌드와 시계열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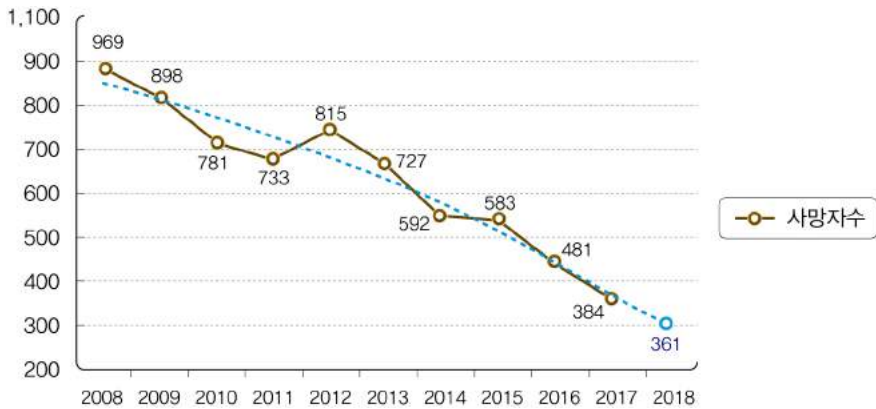
〈표 3-3-9〉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측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2018 (예측)	18,510	9.5	361	10.4	31,156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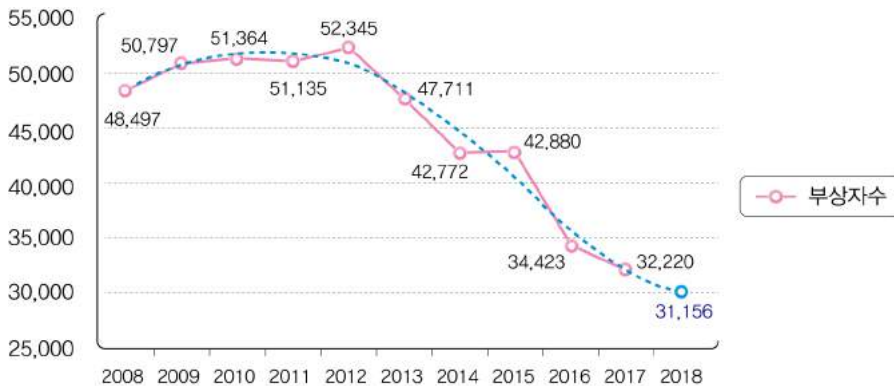
[그림 3-3-8]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 결과



[그림 3-3-9]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 결과



[그림 3-3-10]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 결과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8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발생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대비 감소한 약 1만 8000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36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부상자 수 역시 감소하여 3만 1000명 선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그동안 교통경찰의 단속활동 및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근절홍보 등 경찰의 노력과 국민인식 변화 및 자동차 안전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음주 문화가 점차 저알콜, 저용량 주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교통안전 의식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음주교통사고의 폐해는 앞으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가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 구조변화, 고령화 등의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고령운전자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전체 음주운전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고령층 교통사고는 급격한 증가 추세

2016년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던 점유율은 2007년 29%에서 2016년에는 40.5%로 약 11.5%p 상승하였다(경찰통계 기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찰청 집계 결과 발생건수 3만 5761건, 사망자 1732명으로 전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해 보면 발생은 0.8% 감소, 사망자 수는 4% 감소를 보였다. 고령층 교통사고는 전체교통사고의 16%를 차지하지만, 사망자는 4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10〉 고령층 교통사고 현황(경찰 기준)

(단위 : 명, %)

연 도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발생건수	점유율 (%)	사망자수	점유율 (%)	부상자수	점유율 (%)
2007	21,134	10.0	1,786	29.0	22,013	6.6
2008	23,012	10.7	1,735	29.6	24,168	7.1
2009	25,983	11.2	1,826	31.3	27,409	7.6
2010	25,810	11.4	1,752	31.8	27,394	7.8
2011	26,483	12.0	1,724	33.0	27,999	8.2
2012	28,185	12.6	1,864	34.6	29,699	8.6
2013	30,283	14.0	1,833	35.9	32,178	9.8
2014	33,170	14.8	1,815	37.8	35,352	10.5
2015	36,053	15.7	1,814	39.1	38,582	11.2
2016	35,761	16.2	1,732	40.5	38,413	11.6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2016년 통계), 2017. 1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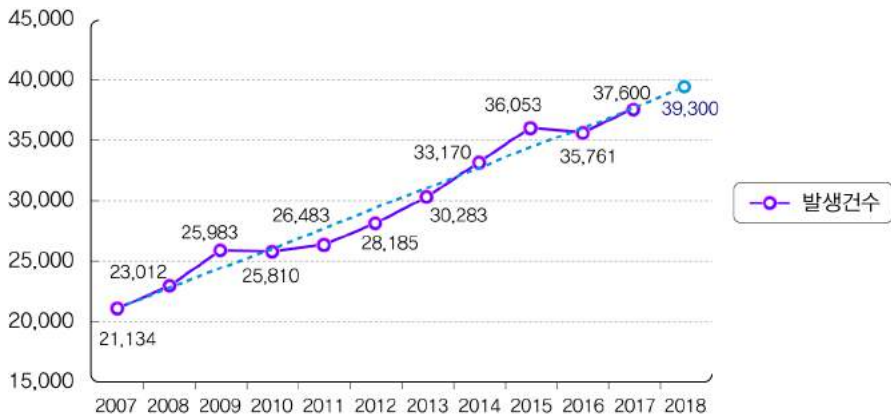
2016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과 데이터 트렌드 분석으로 2017년을 추정하고 2018년을 예측해 볼 때, 2018년에는 발생건수 3만 9300건, 사망자 수 1724명, 부상자 수 4만 2000명 선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는 급격한 증가세가 예측되며, 사망자 수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11〉 고령층 교통사고 추정 및 예측 결과

연 도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발생건수	점유율 (%)	사망자수	점유율 (%)	부상자수	점유율 (%)
2017 (추정)	38,000	17.0	1,755	41.9	40,200	12.3
2018 (예측)	39,300	17.9	1,724	43.2	42,100	13.1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약 2만 건, 2013년 3만 건을 돌파한 후, 2016년에는 3만 5761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82%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2018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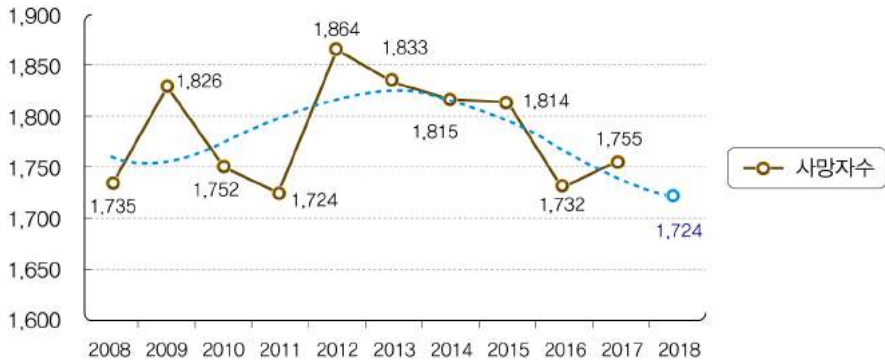
[그림 3-3-11] 2018년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 예측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층 사망자 수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반복적인 주기적 변동 속에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2013년부터는 안정적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령층 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연령이 증가하여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찰의 첨단교통장비 및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¹⁴¹⁾ 등 차량안전기술의 발달로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8년에도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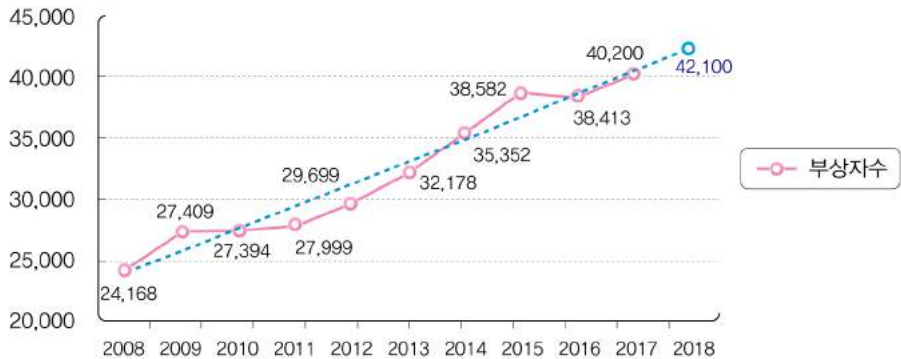
141)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이하 ADAS) :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의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ADAS는 충돌위험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eaking)', 차선이탈 시 주행방향을 조절해 차선을 유지하는 '주행조향보조시스템(LKAS: Lane Keep Assist System)', 사전에 정해 놓은 속도로 달리면서도 앞차와 간격을 알아서 유지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CC: Advanced Cruise Control)', 사각지대 충돌위험을 감지해 안전한 차로변경을 돕는 '후측방 충돌회피지원시스템(ABSD: Active Blind Spot Detection)', 차량 주변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시스템(AVM: Around View Monitoring)' 등을 포함한다.

[그림 3-3-12] 2018년 고령층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예측 결과



그리고 고령층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발생건수의 증가에 따라 2018년에도 급격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13] 2018년 고령층 교통사고 부상자 수 예측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17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¹⁴²⁾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고령층 교통사고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부상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¹⁴³⁾ 안전벨트 착용률 증가, 에어백 장착차량 증가 등 사망사고 발생요인은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고발생 증가에 따라 부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시각 및 청각능력의 저하, 판단능력과 반사동작 저하

142)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143)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등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고령층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운전면허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 교통사고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행태분석을 통한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설계 및 시설보완과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고령층의 이동이 빈번한 곳의 교통운영방법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¹⁴⁴⁾의 면밀한 시행과 더불어 현장의 반응을 피드백하여 다시 시행방법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리사이클(PDCA Cycle)¹⁴⁵⁾과 같은 선순환 구조의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144)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을 목적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50km/h로, 어린이 등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경찰청의 교통정책이다.

145) PDCA Cycle: 정책이나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Plan), 실행(Do), 검토(Check), 조치(Action) 순으로 사이클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현장상황과 환경변화를 반영시키는 관리방법이다.





제4절 사회안정 분야 전망

I. 집회시위 전망	170
II. 테러 위협 전망	174

I. 집회시위 전망

1. 평화적 집회문화 확산 전망

2017년 12월, 독일의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은 한국의 ‘촛불시민(Kerzenbürger)’에게 인권상(Menschenrechtspreis)을 수여하였다.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은 정부의 권력남용(Machtmissbrauch)과 부패(Korruption)에 항거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수주에 걸쳐서 17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평화적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였고, 이를 통해 ‘법치국가 및 헌법질서의 재건을 위한 비폭력적 요청’을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¹⁴⁶⁾ 재단은 인권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한 모든 집회참가자들에게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림 3-4-1] ‘촛불시민’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인권상 수상



출처 :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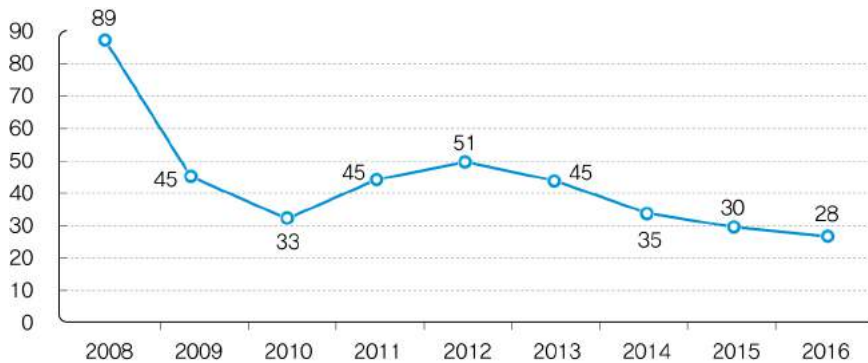
146) [https://www.fes.de/menschenrechtspreis/\(2017. 12. 7 검색\)](https://www.fes.de/menschenrechtspreis/(2017. 12. 7 검색)).

이러한 사례를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폭력적 집회의 경우 다수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동체 내 갈등을 증대시키지만, 평화적 집회시위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집회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¹⁴⁷⁾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¹⁴⁸⁾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진행된 평화적 촛불집회도 경찰과 시민 간의 신뢰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¹⁴⁹⁾

[그림 3-4-2]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美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당시 89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최근 10여 년간 30~50여건 사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4년 동안은 불법폭력집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최초로 30건 미만의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 2017년의 경우 9월까지 단 7건의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해 전년 동기(14건) 대비 50%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에도 평화적 집회문화는 확산·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2]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출처 : 경찰청(2017)

147) “경찰 집회대응 역사 ‘촛불집회 이전과 이후’ 나뉜다”, 연합뉴스, 2017. 10. 25.

148) “성숙한 집회문화 하루빨리 정착돼야”, 정책브리핑, 2015. 12. 4.

149) “[촛불 1년] ‘경찰 차벽의 꽃스티커, 시민이 다시 떼면서 평화집회 완성했죠’”, 한국일보, 2017. 10. 28.

2. 불법·폭력집회 감소 전망

어떤 집회가 평화적·비폭력적이고, 어떤 집회가 불법·폭력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어렵다. 합법·불법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고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라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관리 및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경찰청은 화염병 시위, 투석, 쇠파이프·각목, 도로·철로점거, 시설 기습시위 등을 불법·폭력집회의 주요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폭력집회’라고 볼 수 있는 화염병, 투석,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한 시위는 2016년 단 3건(투석)이 있었으며, 2017년의 경우 9월까지 1건의 쇠파이프·각목을 이용한 시위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집회 개최 건수가 3만 1576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소수의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불법·폭력시위 건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도로·철로점거이다. 2016년의 경우 전체 28건 중 75%에 해당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이러한 유형의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에서 집회·시위는 경우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이 이러한 권고를 이행할 경우, 집회목적 달성에 있어 도로 사용이 필요한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전체 불법·폭력집회 건수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1〉 불법폭력시위 유형별 발생 현황

구분	계	화염병 시위	투석	쇠파이프 각목	도로 철로점거	시설 기습시위	기타
2012	51	-	-	1	19	31	-
2013	45	-	1	-	21	23	-
2014	35	-	-	1	14	20	-
2015	30	-	4	6	12	8	-
2016	28	-	3	-	21	4	-
2016. 9	14	-	-	-	10	4	-
2017. 9	7	-	-	1	2	4	-
전년대비	-50.0%	-	-	100.0%	-80.0%	-	-

출처 : 경찰청(2017)

3. 기본권 친화적 집시법 적용에 대한 요구 증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개혁위원회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⁵⁰⁾ 경찰개혁위원회는 특히 △ 집회·시위 관리, 대응에서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 금지(제한)통고 및 조건통보 최소화를 위한 기준 마련, △ 살수차, 차벽 등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 △ 해산절차 개선 등에 대해 권고하였다.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져, 집회금지통고, 물대포 사용, 채증 등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형사소송, 국가배상 등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시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이 집회주최 측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그 예이다.

2018년에는 집회·시위 관련 경찰력 행사에 대한 외부통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등에 독립적인 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인권침해 현장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침해 현장감시단에 집회현장에서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중지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¹⁵¹⁾ 이러한 외부 기구에 의한 통제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50) 2017년 6월에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경찰 인권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집회시위 신고, 금지 및 제한통고, 살수차 운용, 채증 등에 있어 기본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151) “집회·시위 현장 경찰 인권침해, 시민이 감시한다”, 파이낸셜뉴스, 2017. 10. 12.

II. 테러 위협 전망

1. 국제 테러 정세

2016년 테러리즘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840억 달러(한화 약 9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⁵²⁾ 테러에 대한 정의, 테러단체를 규정하는 방식, 언론공개 여부 등에 따라 테러로 인한 피해 집계에는 집계한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 정세를 수집, 분석하여 매년 국가별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테러 건수는 1만 1110건,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2만 5673명이다.

한편 위키피디아(Wikipedia)에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 및 테러전문가들이 매년 ‘테러사건 목록(List of terrorist incidents)’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12월 7일 기준) 1066건의 테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7363명이 사망하였다.¹⁵³⁾ 이는 2016년 1441건의 테러 건수 및 1만 4356명의 사망자수에 비하여 감소한 것이다.¹⁵⁴⁾

국제 테러 정세와 관련하여 경제평화연구소는 최근 전 세계가 ‘전환점’(turning point)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⁵⁵⁾ 경제평화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Global Terrorism Index 2017』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의 국제 테러 정세를 분석한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 전체 테러 건수는 감소, 일부 국가에 집중

그간 테러 발생이 집중되어 온 국가들에서의 테러리즘이 뚜렷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나이지리아에서 보코 하람(Boko Haram)의 테러행위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0%p 이상 감소하였다. 주지할 점은 테러리즘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테러리즘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¹⁵⁶⁾ 2016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수는 2만 5673명(경제평화연구소 기준)으로 집계

152)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Terrorism Index 2017, 3쪽.

153)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terrorist_incidents_in_2017(2017. 12. 8 검색)

154)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terrorist_incidents_in_2016(2017. 12. 8 검색)

155)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Terrorism Index 2017, 4쪽.

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5개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 세계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수의 75%에 이른다.

2) 테러 경험 국가 수는 지속 증가

테러를 경험하는 국가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테러로 인해 당해 연도에 최소 1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수는 2015년 65개국에서 2016년 77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 이래 테러로 인해 최소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수는 2016년 106개국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OECD 국가들의 경우 2016년은 위협적인 테러행위가 빈발한 해였다. 2014년 이후 OECD 국가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의 75%가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OECD 33개국 중 18개 국가에서 ISIL과 연계된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에서 행해진 테러 전술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2014년을 전후하여 폭탄 내지 폭발물에 의한 테러는 사전 준비단계가 길고 다수가 관여함에 따라 정보기관에 의해 사전 적발되는 확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테러 단체들이 테러행위로의 실행이 좀 더 단순하고(simpler) 대상에의 접근도 용이한(soften) “민간인(civilian)”으로 목표를 수정, 테러 횟수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인으로 테러 대상이 전환되면서 테러 실행을 위한 비용은 일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졌다. 이는 곧 외부적 자원을 동원할 필요없이 저비용으로도 테러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는 2015년 32건에서 2016년 6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56) 테러가 전 세계에 불균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예로서, 중앙아시아 및 캐리비안 지역은 거의 테러의 영향이 없다. 2016년 중앙아시아 및 캐리비안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2016년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0.4% 수준에 그친다.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테러리즘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테러가 심각한 지역은 남아시아로, 이집트와 터키의 경우 전년 대비 테러 발생건수가 각각 9배 및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 테러 전망

1) 국내 테러 일반

국내의 경우 프랑스 파리·니스,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독일 뮌헨·베를린 등과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혹은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980년대 항공기 폭파사건, 2000년대 이후에는 사이버테러 등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테러의 유형과 관련하여, 크게 일반테러, 화생방테러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흉기,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일반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화생방 테러의 경우 그 가능성은 낮으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¹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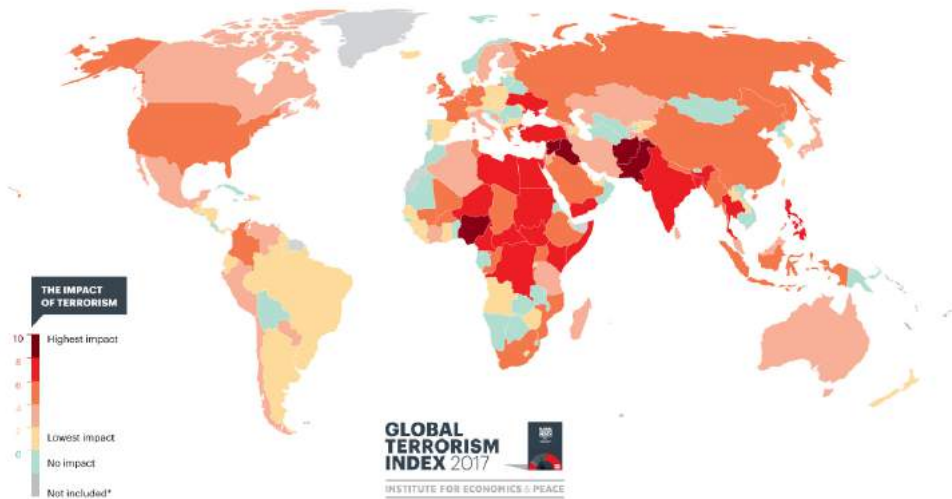
2) 테러리즘 위험지수 소폭 상승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전망

[그림 3-4-3]은 경제평화연구소가 『Global Terrorism Index 2017』 보고서에서 각국의 테러리즘 위험지수를 산정, 발표한 결과이다. 테러리즘 위험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국가는 이라크(10점), 아프가니스탄(9.441점), 나이지리아(9.009점), 시리아(8.621점), 파키스탄(8.4점), 예멘(7.877점), 소말리아(7.654점), 인도(7.534점), 터키(7.519점), 리비아(7.256점)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위험지수는 0.611점으로 전 세계 103위로서 뉴질랜드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다.¹⁵⁸⁾ 우리나라에서의 테러리즘 위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이지만, 전년(0.23점, 112위) 대비 상승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7) 과거 개인의 원한 관계에 의한 ‘황산테러’가 발생한 경우는 있으나, 학문적·법적 의미에서의 테러라고는 볼 수 없다.

158) 한편 북한은 매년 지수 측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림 3-4-3] 2017년 각국의 테러리즘 위험지수



출처 :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Terrorism Index 2017

3)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테러 대비 필요

우리나라는 테러 위협 수준은 낮으나 자생적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2018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대규모 테러공격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테러위험지수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테러범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테러범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사가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이다.¹⁵⁹⁾ 따라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에도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때에 한하여 테러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대상 시설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및 테러 취약요소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는바, 금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에 테러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⁶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총리실·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평창

159) 대표적인 사건이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이다.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테러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드론테러' 및 '차량돌진테러' 등 신종테러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였다.¹⁶¹⁾ 특히 경찰청은 드론테러를 대비하여 전파차단기 등 최신장비를 마련하고 있다.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테러공격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 또한 크기에 경찰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4) 북한의 사이버 테러위협 증대

사이버테러란 해킹,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을 통해 주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파괴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테러 유형이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09년 디도스(DDoS)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 2013년 언론사·금융기관 전산망 공격, 2016년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총국 등이 국내 전산망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전년대비 약 20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이버 해킹 조직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청와대, 국가정보원, 은행, 포털사이트 등 국가 중요 기간망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방호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¹⁶²⁾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7년 12월 발표한 '2018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에서 금전목적이 아닌 사이버테러 목적의 랜섬웨어¹⁶³⁾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지방선거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공격메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계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북한 입장에서 주요인사·시설 등에 대한 유형적 공격은 국제사회의 제재 등 많은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에, 공격원에 대한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160) 한편, 마지막으로 테러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던 것은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2014년 12월 8일로, 약 3년 전이다.

161) "정부, 평창올림픽 드론테러·차량돌진테러 대비책 마련", 연합뉴스, 2017. 12. 5.

162) "군, 북한 사이버 공격 'AI'로 실시간 대응한다", 뉴스1, 2017. 12. 7.

163) 랜섬웨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의 테러공격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2018년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 위협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외로운 늑대형 테러 위협 상존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주의적 특성이 강한 유럽 혹은 미국과는 달리 테러가 발생할 확률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특히 국제테러단체 등 외부에서 안으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테러보다는 내부에서 자생(Home-grown)하여 발생하는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단이 없는 계층에서 외로운 늑대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범죄학에서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서 설명하고 있듯 사회 극단화 현상이 차별받는 집단의 분노 및 긴장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긴장이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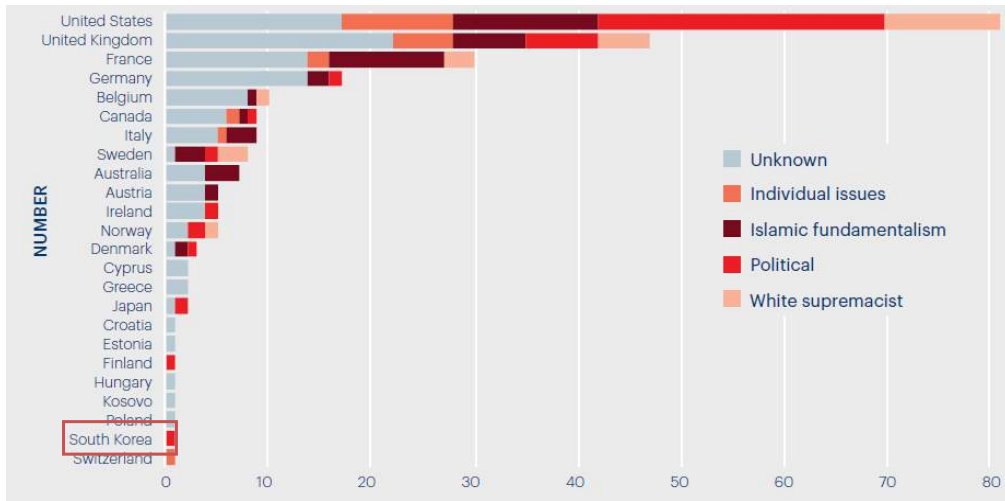
경제평화연구소에서도 OECD 국가의 경우 ‘외로운 늑대(lone wolves)’에 의한 테러 공격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외로운 늑대’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이들을 이르는 말로,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생적인 테러 행위자의 경우 평소 그들의 성향이나 행적이 정보기관에 포착되지 않고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식별, 감시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현재 각국은 ISIL과 같은 이슬람 지하디스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자생적인 테러 행위자들의 공격이 훨씬 더 잔혹하고 치명적인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에서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가 급격히 증가, 2008년 한 건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5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평화연구소는 2008년 우리나라에서 55세 남성에게 의해 발생한 승례문 화재 사건을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로 간주, 한국 역시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또한 개인에 의한 테러 유사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갈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과거에도 존재했던 경제적 불평등, 남녀간 성갈등, 지역갈등, 인종차별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수단을 통해 점차 젊은 세대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다. 국제테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적·종교적·경제적 갈등 등이 테러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의 갈등 증가는

외로운 늑대 등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 또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4] OECD 국가 중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 발생건수



출처 :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Global Terrorism Index 2017



제5절 보안·외사분야 전망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182
II. 탈북민 관련 전망	202
III. 외사 분야 전망	217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1. 대남전략 기초: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는 당규약과 헌법을 통해 유추 가능하다. 2016년 5월 9일 개정된 당규약은 김일성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자 영원한 수령’으로, 김정일을 ‘조선노동당의 상징이자 영원한 수반’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표 3-5-1〉 북한 노동당 규약 주요 내용변화

당 최고지도기관 회의	당 지도이념	최종 목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1946. 8. 28)	-	독립국가 건설
북조선노동당 2차 대회 (1948. 3. 27)	-	독립국가 건설
조선노동당 3차 대회 (1956. 4. 23)	마르크스 -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4차 대회 (1961. 9. 11)	마르크스 - 레닌주의 항일무장투쟁 전통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5차 대회 (1970. 11. 2)	마르크스 - 레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6차 대회 (1980. 10. 10)	김일성 주체사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 사회건설
조선노동당 7차 대회 (2016. 5. 6)	김일성-김정일주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

당규약 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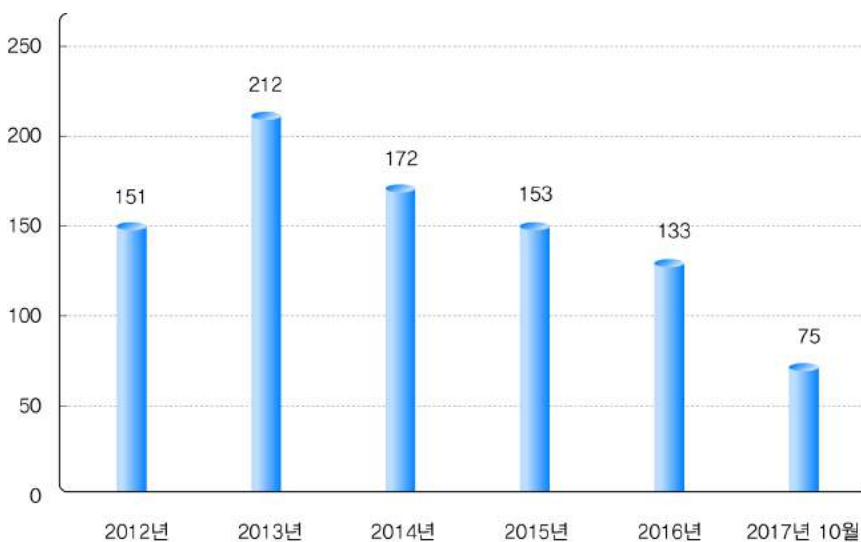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적시하였다.

한편, 2016년 6월 29일 수정된 북한 헌법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8년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는 노동당 규약과 헌법규정에 따라 전(全)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 힘입어 2017년보다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공세적인 대남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김정은은 체제내부 결속과 정권 공고화를 위해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동안 선군정치란 미명하에 작동된 비정상적 국가시스템을 마감하고, 당과 내각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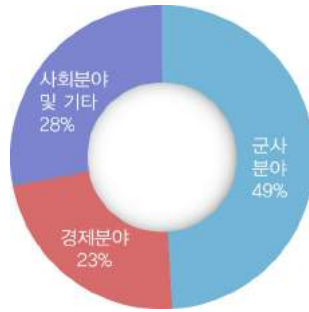
2017년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북미간의 대결구도가 심화된 한 해였다. 김정은의 신변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대외공개 활동 역시 2016년 보다 24%나 줄어들었다. 2018년에는 남북 및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김정은의 공식 대내·외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1] 김정은 대외공개 활동 횟수(2012. 1. 1 ~ 2017. 10. 17)



출처 : 통일부(2017. 10)

[그림 3-5-2] 김정은 분야별 공개활동 횟수(2017. 1. 1 ~ 10. 17)



출처 : 통일부(2017. 10)

2018년에도 군사분야에 대한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UN의 대북경제 제재에 따라 경제·민생분야를 직접 챙기는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¹⁶⁴⁾ 또한 김정은은 2016년 10월 7일 제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치국 위원 5인과 후보위원 4인을 보선하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금년에도 세대교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며,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 기득권층에 대한 숙청 작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⁶⁵⁾

2. 대남전략 방향 : ‘평화공세·대남도발’ 병행추진

김정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섯 번의 ‘신년사’를 발표했다.¹⁶⁶⁾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는 김일성-김정일의 선전선동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2018년 북한의 단기 대내·대외·대남정책 방향은 신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발표된 김정은의 신년사는 대내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립경제노선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확립 등을 강조했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을 자극하는 핵, 핵운반 수단, 탄도로켓 등의 용어들을 20차례 이상 사용하여 대결국면을 이어갈 것임을 표명하였다.¹⁶⁷⁾ 반면, 대남측면에서는 우리

164) 2017년 김 위원장을 수행한 횟수로는 군부를 대표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31차례로 가장 많았다.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23차례,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16차례,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14차례,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13차례 순이다.

165) 김정은은 집권이후 2016년까지 140여명의 간부를 처형했고, 고위간부와 주민을 포함 340명을 공개 총살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 “고모부 이어 이복형까지 … 1인 독재 강화 ‘피의숙청’”, 국민일보, 2017. 2. 14.

166) 김일성은 1946~1994년간 육성연설을, 김정일은 1995년부터 당, 군, 청년보 공동시설 형식으로 서면 발표했으며, 김정은은 2013년부터 김일성과 동일하게 육성연설을 실시해 오고 있다.

민족끼리에 기반한 자주를 강조하고,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민족화해와 통일분위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였다.

〈표 3-5-2〉 김정은 집권 5년 신년사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남	남북대결해소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	최고위급 정상회담	남북대화, 관계 개선 노력	자주통일의 대통로 개척	군사적 긴장상태완화
경제체제	경제강국건설	농업강조, 당내 총파 오물제거	인민생활, 국산화 강조	경제강국 건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총력	인민경제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통일	남한내 반통일세력 방향전환 강조	과거 불문 통일세력 확대 도모	남한의 흡수통일 경계	허심탄회한 통일논의	전민족 통일 대화합	평화환경조성, 우리민족끼리 논의
군사·핵	첨단무장 장비 강화	병진노선 추진	핵억제력에 기초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핵·경제병진 노선 강조	핵무력을 중추로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 강화	미국 본토 핵사정권 확보

출처 : 각 년도 신년사

북한은 교착상태의 북미관계 개선을 돌파하여 이른바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결’ 전술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 전술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각종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양국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기할 것이나, UN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국민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화공세와 각종 제의를 해 올 것으로 예측되나, 김정은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개연성이 크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탄두와 탄도로켓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167)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은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미국은 결코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핵단추는 위협이 아닌 현실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표 3-5-3〉 북한의 대외전략에 따른 협상 형태

구분	내 용		조 건
대결	직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도발 • 핵·미사일 실험 • 군사적 위협, 각종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남·대미·대일 관계의 주도권 확보
	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물 납치 • 지하당 구축 • 간첩·스파이 공작 • 일반테러 및 사이버테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 불안조장 및 남남갈등 유도 • 북한 체제 내부 결속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공세, 대화, 접촉제의 • 민·관 차원의 회담요청 • 각종 교류협력 및 경험사업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 대북제재 회피 • 경제적 보상 획득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결·대화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의 주도권 확보
관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결·대화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추 외교 • 다른 주요 정치일정 수행

북한체제의 특성상 결코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에 기울여 왔던 지난한 노력과 김정은의 의도 등을 감안할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은 외부상황과는 별개로 그들만의 개발일정과 목표에 따라 진척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함으로써 1992년 발효된 남북 ‘비핵화선언’을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부정했다.¹⁶⁸⁾ 또한 2013년 ‘유일영도 10대원칙(舊 유일사상 10대원칙)’을 개정하면서 ‘핵무력’을 명시하였고, 이후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並進)노선’을 채택했다.¹⁶⁹⁾ 당시 김정은은 “전쟁억지력을 포기했다가 침략을 당한 발칸반도와 중동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 사용은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했다.¹⁷⁰⁾ 헌법을 비롯한 부문법에

168) 북한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대외 공개하기로 선택한 시점은 2005년 2월 10일이었다. “조선 외무성 2기 부시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한 입장 천명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 조선중앙통신, 2005. 2. 11.

169) 1962년 12월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주적 군사력 증강을 위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결정하여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1960년대 김일성이 제시했던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이나 김정일 시대 국방공업을 우선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선군경제 노선과는 구별된다. 기존의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은 경제와 함께 국방공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투자를 더 하지 않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핵개발과 경제회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170)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3. 4. 1.

서 핵무력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3. 2018년 이슈별 대남전략 전망

1) 남북대화를 통한 ‘적극적 평화공세’ 전개

북한은 제4차 핵실험(2016년) 이후 미국과는 ‘양자대화’를, 남한과는 ‘직접대결’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일부 수정하여, 평화공세에 입각한 남북대화 및 접촉을 제의해 왔다.¹⁷¹⁾ 통일부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복원과 동계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한반도 긴장관계의 완화를 위해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은 이에 호응, 지난 5일 고위급회담을 공식적으로 수락했다.¹⁷²⁾

2018년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될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남북회담에 임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중심의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 입국경로와 개·폐회식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신변안전 보장, 체류비, 응원단 참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위급회담이 원만하게 진척될 경우, 후속회담 의제로 이산가족상봉을 포함 군사적 긴장 완화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측이 올림픽 의제와 무관한 핵보유국 지위인정, 한미군사훈련 폐지를 비롯한 국제제재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남북관계는 또 다시 대결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모처럼 조성된 대화국면인 만큼, 남북한 당국은 지혜를 경주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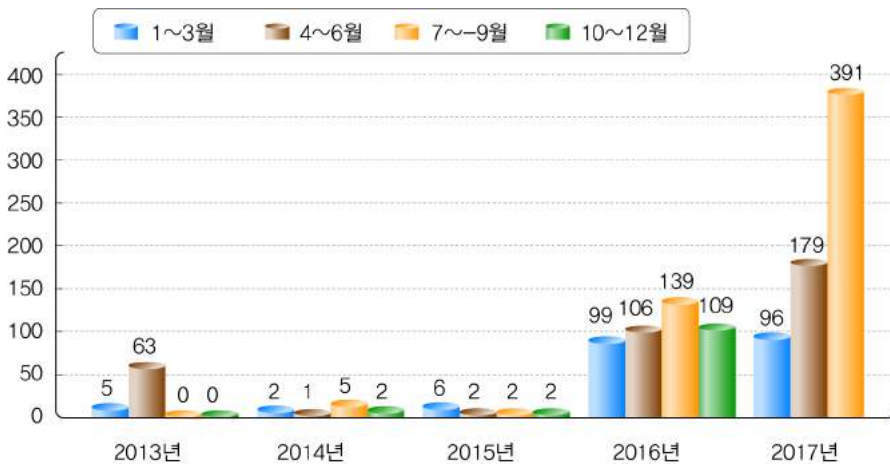
171) 북한은 2016년 2월 12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대응하여 남북간 직통 연락채널을 차단한 이래, 2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하였다.

172) 한미 정상은 1월 4일 전화통화에서 ‘한미합동군사 훈련연기’에 합의하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월 6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회담지지 입장을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2) 제7차 핵실험 실시 가능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3일 풍계리 일대에서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김정은 집권이후 핵실험 주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6차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10배인 160kt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거나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2018년 건국 70주년에 앞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⁷³⁾

[그림 3-5-3] 「로동신문」의 핵강국 포함 기사추이(2013 ~ 2017. 9)



출처 : 이종구·손효중,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강국 주장 본격화와 함의”, 제1692호, 『주간국방논단』(한국국방연구원, 2017), 3쪽.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의지는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로동신문」 기사 내용 중에서 ‘핵강국’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수를 분석할 경우,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강국’이란 표현이 삽입된 기사는 2017년 9월까지 666건에 달하고 있는데, 2017년을 핵능력 완성의 해로 삼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는 ‘핵 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핵무기

173) 김정은의 대남·대외 전략의 핵심은 ‘위기조성’전략에 기초한 지역안보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다. 위기조성 전략은 약소국이 극단적 위기를 조성하여 강대국을 공갈·협박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는 전략에 기초한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조성 전략에 대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이며, 배짱과 담력으로 맞받아 나가는 강경한 외교”라고 천명하면서 그간의 외교적 업적에 대해 ‘선군외교 전법’으로 명명하고 있다.

는 한국군의 질적 우세를 일순간 무용지물로 만드는 동시에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에게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패배의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를 믿고 국지도발을 저지를 수도 있다.¹⁷⁴⁾ 김정은은 2017년 5월 서해 연평도 인근 장재도와 무도를 시찰하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다가 명령이 내려지면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 버려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그림 3-5-4] 북한 핵무기 개발 일정



북한의 핵실험은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핵 핵실험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2017년 5월 3일 개인 논평을 게재하고, “조중관계의 기동을 짚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누구이든 우리(北)의 핵보유 노선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며, 조중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¹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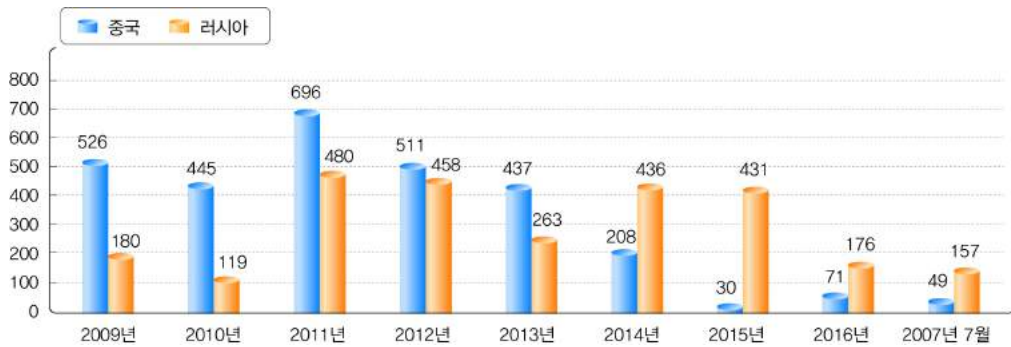
북한은 불편한 중국과의 관계를 보완하고자 러시아로 접근중이다. 2014년을 기점으로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할 경우, 중국 기사보다 러시아와 관련된 보도기사가 더 많이 게재되고 있다.¹⁷⁶⁾

174) 김태우, “북한의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 16쪽.

175) “조중관계의 기동을 짚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7. 5. 3.

176) 김정은 집권이후, 북중관계는 예전과 달리 ‘당 vs. 당’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vs. 국가’의 관계로 진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을 일종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

[그림 3-5-5] 「로동신문」 중국과 러시아 보도빈도 추이



출처 : 박동훈, “북한 대 중국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로동신문 중국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자료 (2017. 10), 2쪽.

북핵 문제에 대응할 국제사회의 카드로는 (1)핵·미사일협상, (2)경제제재, (3)군사적 대응, (4)예방전쟁, (5)김정은 제거, (6)점진적 개방유도 등의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6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치열한 외교적 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며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핵 보유를 영구화한다. 둘째,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및 첨단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킨다. 셋째,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으므로 비핵화 대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넷째,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로 억제할 수 있고, 미국은 북미 관계가 핵보유국 對 핵보유국의 관계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정밀화 능력을 갖추었고, 수소폭탄 능력도 보유했다. 여섯째, 핵선제 타격옵션을 포함하여 핵무기의 실제 사용을 상정한 전쟁억제 및 전쟁수행 전략을 발전시켜 나간다. 일곱째, 미국과 그 동맹국을 표적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다양한 핵타격 수단을 개발·배치한다. 여덟째, 비핵화에 선행하여 미국의 對 북한 적대시 정책이 철폐되고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strategic burden)’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끈기로운 중국을 대신해 최근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시도 중이다.

3) 'ICBM급 미사일' 및 '인공위성' 시험발사 강행

김정은은 2017년 9월 16일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험을 참관한 뒤, “이제는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언급하고, 75일 만에 신형 ICBM급(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미국본토에 이를 수 있는 ICBM이 마감단계에 있다”며 자신 스스로 언급한 과업의 종료를 의미한다.¹⁷⁷⁾

[그림 3-5-6] 2017년 북한 미사일 도발일지



출처 : “여야, 北 미사일 도발에 ‘강력규탄’”, 중앙일보, 2017. 11. 29.

노동신문은 2017년 12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 승리”로 규정하고, “우리식의 최첨단 무장 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¹⁷⁸⁾

177)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것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가 최초이며, 이후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2009년 4월 ‘은하 2호’와 2012년 4월 ‘은하 3호’를 각각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미사일 개발속도는 김정일 시대와 구분될 정도로 확연한 기술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채택한바 있다. 따라서 2018년에는 ICBM급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⁷⁹⁾ 2017년 11월 중순 북한 초청으로 방북했던 러시아 군사전문가 흐루스탈레프에 의하면, “100kg에 달하는 지구관측 위성 1기와 1t 이상의 통신위성 1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 전했다. 만약, 북한이 지구관측 위성과 통신위성을 성공리에 우주로 보낼 수 있다면, ICBM과 SLBM의 정확도는 매우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실질적인 미사일 개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은 비용은 최소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했다.¹⁸⁰⁾

4) 신형 잠수함(SLBM급 미사일 탑재) 개발

2015년 5월, 북한은 SLBM(북극성-1)형 미사일을 처음 공개한 이래로 SLBM급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은 2017년 8월 김정은의 동정 보도를 통해 신형 SLBM(북극성-3형)의 개념도를 노출시키기도 하였다.¹⁸¹⁾ 탐지가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탑재하고, 추적이 어려운 바닷속 잠수함에 SLBM을 배치하는 전략의 실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쿄신문(東京新聞)』은 2017년 9월 14일, “북한은 SLBM 발사관 2~3기를 장착하고 장시간 잠행 가능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연내 진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38노스는 11월 16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설명하면서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의 구조물이 관측됐다고 밝히고, 북한이 개발

178) 북한은 2017년에 실시한 백두산 계열 로켓엔진 실험을 ‘3.18혁명’이라 칭하고, 국방공업 건설사에 사변적 기적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백두산 엔진을 탑재한 IRBM(화성-12형)과 ICBM(화성-14형)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179) 북한은 노동신문 2017년 12월 18일자, 25일자 기사를 통해 “우주는 그 어느 개별적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며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 인류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히고,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우주과학기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공위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180)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 ‘화성-15형’과 IRBM급 미사일 ‘화성-12형’의 경우 1기당 가격이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성-14형’의 개발비는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20여 년간 핵·미사일 개발(양산비용 제외)에 총 23억~25억 달러를 쓴 것으로 평가된다.

181) 북한은 2016년 8월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대지 미사일인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2017년 2월 12일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 2017. 2. 13).

중인 실험 단계 신포급 잠수함의 뒤를 잇는 새 잠수함 ‘신포-C’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¹⁸²⁾

북한은 2016년부터 한국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공격 수단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기지 및 미 본토를 2차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위협해 오고 있다.¹⁸³⁾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을 진수한다면, 한국과 일본, 미국을 상대로 2차 핵보복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전력균형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2018년 북한은 ICBM 개발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SLBM 발사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

5)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 확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신형 ICBM(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를 2017년 12월 2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 결의안은 2006년 제1차 핵 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 이래 10번째이며, 2017년 들어서만 4번째 제재 결의안이다.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유류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원유 공급 상한선을 400만 배럴(약 50만t)으로 명문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해외노동자 파견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유엔회원국은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조항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2019년부터 북한 노동자의 해외진출은 전면 차단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182) “38노스 북, 신포-C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집착”, 중앙일보, 2017. 11. 17.

183)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 보려는 지들을 가차없이 징벌해 버릴 것이다”, 노동신문, 2016. 2. 23.

[그림 3-5-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주요내용

결의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채택시기	2016년 3월 2일	2016년 11월 30일	2017년 6월 2일	2017년 8월 5일	2017년 9월 11일
원인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5차 핵실험	중단거리미사일 반복 발사	ICBM급 미사일 도발	6차 핵실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 수출 금지(민생목적예외) 항공유 공급 금지 북한 위성 발사 금지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 금지 제재 회피 연루된 북한 외교관 추방 북한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 북한소형발, 은, 구리, 마연 니켈 수출금지 북한 내 금융기관 사무소 개설 금지 과학기술 협력 금지 북한 공관 규모 감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은행 등 기관4곳, 소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7인인 14명 제재 목록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출 금지 북한산 수산물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수준 동결 제재 금지활동 연관 선박 입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 연 40만 배럴 동결 항공유세율 상금 50% 감축 섬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사전 인가 금지 금지품목 적재 의심 선박 공해상 검색 북한과 협력 사업금지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유엔의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 UN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는 총 49개 국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표 3-5-3>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국가¹⁸⁴⁾

대북지원 및 협력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국가
무기거래, 군사협력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금융 거래 지원	앙골라,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UAE
금지된 상품 및 광물 거래	바베이도스,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베트남
선박 국적변경 협력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피지, 그리스, 일본, 키리바티, 말레이시아, 마셜군도, 몽골, 팔라우, 파나마, 페루, 러시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탄자니아, 태국, 토고

그러나, 결의 2397호의 채택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한 이행 감시는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결의안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회원국 영해에 진입할 경우, 나포·동결·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수품목도 대폭 확대하여, 수출금지 항목에 식용품, 농수산물, 기계류, 광물,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을 추가하였다. 그동안 북한이 중국에 판매했던 동서해의 조업권 거래도 금지하였다.

184)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본, 독일, 프랑스 등 49개국 위반”, 세계일보, 2017. 12. 7.

[그림 3-5-8]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현황



출처 : “미 치밀한 북고립작전...20여 개국이 관계 끊거나 축소.” 조선일보, 2017. 10. 10.

2018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봉쇄정책이 2017년보다 더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신규 외화벌이 사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해 돈줄이 막히자 최근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한 외화벌이까지 시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주로 이메일, SNS를 통해 기업 금융 결제망 코드를 해킹하고, 비트코인(가상화폐) 수십억을 요구하거나 서버에 랜섬웨어를 설치한 후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신종 외화수입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¹⁸⁵⁾

6)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경제지원 유도

우리 정부는 신베를린 선언(2017.7.6)을 통해 5대 원칙과 4대 제안을 담은 대북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하여 인도적 교류·협력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1일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세계식량계획(WFP)에 450만불, 유엔아동기금(UNICEF)에 350만불 등 800만불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185) “北, 사이버 테러로 외화벌이 연 1조원 ... 인명피해 공격도 우려”, DailyNK, 2017. 11. 24.

〈표 3-5-4〉 문재인 정부의 신베를린 선언 주요내용

5대원칙	주요내용	4대 제안
① 전쟁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준중, 흡수통일배경	① 10·4정상선언 10주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②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참가 ③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 ④ 남북접촉과 대화재개
②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신뢰회복 및 대화모색, 핵도발 전면중단 촉구	
③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합의 법제화, 관련국 참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④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경제공동체 달성, 동북아협력사업 추진	
⑤ 인도적 교류·협력 지원	민간교류는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2017년 9월 23일 UN총회 연설에서 ‘유엔아동기금’과 ‘유엔 인구기금’ 등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2차레(1993년, 2008년)에 걸쳐 인구 일제조사사업을 실시해 왔다. 2017년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총인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리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의 선(先) 행동변화가 전제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안 폐지를 별도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유엔회원국은 기존의 결의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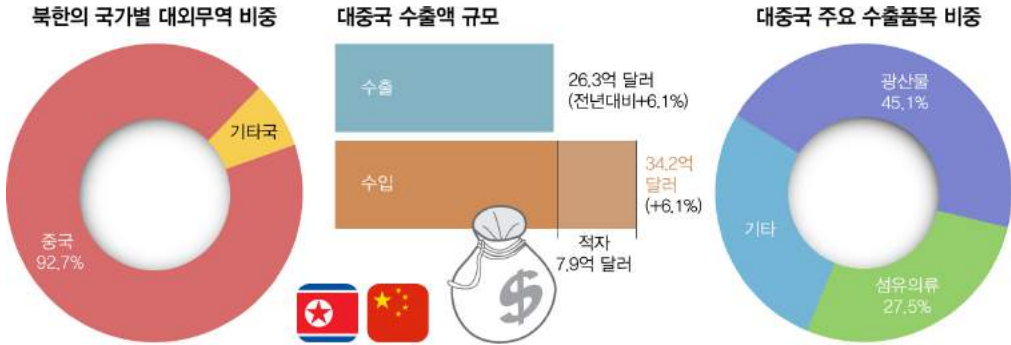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 물리적·도덕적 피해규모를 조사·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북미 또는 남북협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원만하게 진척될 경우, 북한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조사위원회’가 집계한 금액을 인도적 지원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¹⁸⁶⁾ 이 경우, 북한은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북 인도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가 완전하게 타결되기 이전까지 개별 국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엔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 경제지원은 중국이 담당해 왔다. 북한의 대외무역 비중 면에서 중국은 9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생명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186) 한국 내 ‘모 케이블 TV’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이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80조원 규모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 보도의 진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1~2차 정상회담의 사례와 북한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대북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대외적 자율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바, 이를 탈피하기 위해 김정은은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로 탈출구를 모색 중이다.

[그림 3-5-9]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



출처 : 한국무역협회(2016년 기준)

중국은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북인도지원은 지속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지속한다면, 더 이상 중국도 북한을 지지·후원할 명분은 약화될 것이고, 미국은 이를 계기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⁷⁾

4. 안보위해세력 활동 전망

1) 활발한 정치·사회 활동 전개 예상

2017년 1월부터 12월 11일까지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웹사이트에는 총 539건의 글이 게재돼 있다. 논평 335건, 기사 159건, 문건 9건, 담화와 투고 각 5건, 호소문 3건 등 남북관계를 반영한 글이 대부분이며, 이는 한국 사회내 반정부 선전선동의 주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¹⁸⁸⁾

한편, 통일전선부 소속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에 게재된 327건의 글을 분석해 보

187) 미 의회는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안’을 통과시켜 놓았다. 다만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을 미 행정부 제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놓아 정치적 고려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188) 반제민전은 2017년 2월 27일, 3월 6일, 17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면, 답화 119건, 대답 62건, 성명 45건, 논평 20건, 호소문 13건, 백서 8건, 격문 1건, 기타 59건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중국과 동남아, 한국, 미국 등에서 올린 독자 글 투고에는 지난 1년 동안 1020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2018년에는 한국의 지자체 선거와 헌법개정 논의가 예고돼 있다. 따라서, 안보위해 세력들은 북한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정치·사회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남투쟁 노선에 입각, ‘우리민족끼리’를 표방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대북제재반대 등을 내세우고,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전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5-10]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기관별 송치현황



출처 : 국회의원 진선미, 보도자료(2017. 10. 11)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관별 입건은 총 739명이며, 이중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 행위 등 ‘3대 안보위해사범’은 10년 동안 56명이었다. 송치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531명(71%), 국가정보원 187명(25%), 기무사 8명(1%), 기타 23명(2.8%)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공수사에 대한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또한, 10년간 국가보안법 중에서 ‘3대 안보위해사범’인 간첩죄,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전체 739명 중에서 56명(7.4%)을 차지했다.

〈표 3-5-5〉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유형별 송치현황

구분 연도	입건	국가보안법 위반 죄목별 현황												
		반국가 단체 구성 등	목적 수행	간첩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이적단 체구성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직 무유기	무고 날조	기타
		제3조	제4조	제4조 1항2호	제5조	제6조	제7조 3항	7조 1,5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2008	46	1	2	1	.	5	20	15	.	2
2009	57	.	2	2	.	8	21	23	.	1
2010	97	4	2	7	1	16	3	62	1	.	.	.	1	.
2011	90	7	2	.	1	4	3	72	1	.
2012	112	2	3	2	3	8		89	4	1
2013	129	.	2	3	4	15		102	3
2014	57	.	4	1	4	4		40	4
2015	79	1	5	.	2	19	14	38
2016	43	1	.	2	.	10	7	18	3	2
2017. 7.31.	29	.	.	.	1	7	.	16	1	4
합계	739	16 (2.1%)	22 (2.9%)	18 (2.4%)	16 (2.1%)	96 (12.9%)	68 (9.2%)	244 (33.0%)	16 (2.1%)	10 (1.3%)	0 (0%)	0 (0%)	2 (0.2%)	0

출처 : 국회의원 진선미, 보도자료(2017. 10. 11)

2) 대남심리전과 연계, 안보의식 약화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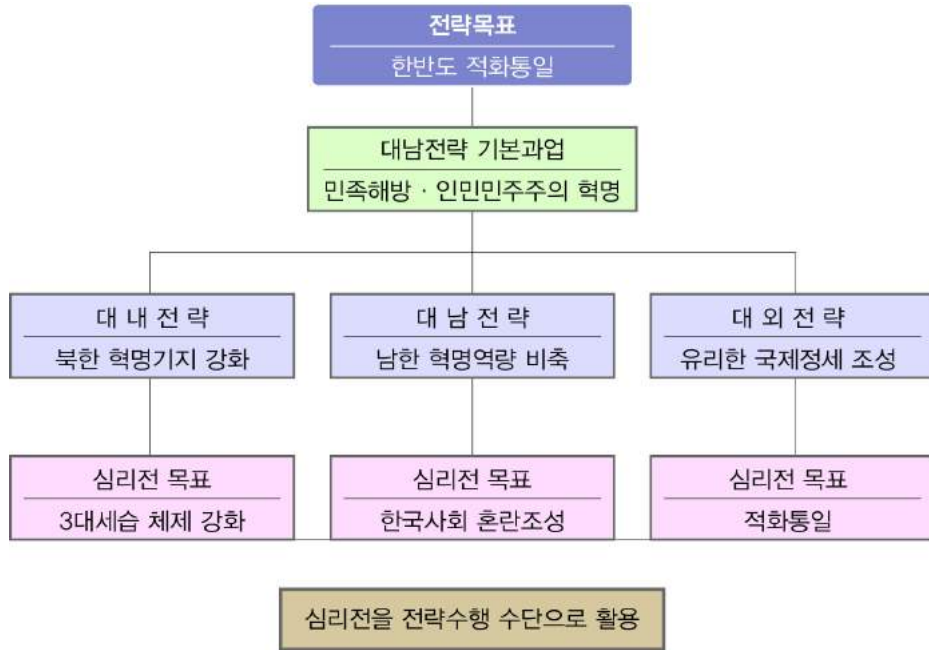
2018년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대남심리전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16년 6월 24일 이후 2017년 3월까지 남한 지역에 다수의 난수(亂數) 방송을 실시해 왔다. 북한의 대외용 매체인 평양방송은 지난 3월 24일까지 만 9개월 동안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방송을 모두 30차례 내보냈다.¹⁸⁹⁾ 과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 당국이 남한에 암약하던 공작원들과 교신했던 난수방송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다. 난수방송의 목적은 실제 공작원과의 교신보다는 남한 사회내부에 불안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이거나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공작원들의 해독훈련 차원에서 난수방송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공작원과의 교신보다 심리전 차원에서 난수방송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¹⁹⁰⁾

189) 평양방송 아나운서는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각 12시 15분) 또는 오전 0시 45분(한국시각 오전 1시 15분) 등 비교적 한적한 시간대를 이용해 경음악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 등을 내보내고 나서 5자리 숫자 조합을 불러주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물리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며 “178페이지 99번, 78페이지 40번, 969페이지 42번…”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읽어 내려간 뒤 같은 내용을 한 차례 반복하였다.

190) “공작용일까 심리전일까… 北 난수방송 논란증폭”, 연합뉴스, 2017. 3. 25.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는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친북 매체를 포함한 160여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트위터 등 개인 SNS공작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세계 20개국에 서버를 둔 친북 사이트 약 180여 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허위정보를 유포함으로써 한국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⁹¹⁾

[그림 3-5-11] 북한의 대남 심리전 전략목표



한편, 북한은 대남전단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심리전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1년여 동안 수거된 대남전단지만 약 200만 장에 달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017년 10월 16일에는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대남전단지가 청와대에서도 발견되었다.¹⁹²⁾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군부대에서 수거한 북한 대남전단지는 모두 203만 9천 898매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여간 군부대가 대남전단지를 수거한 날은 총 269일로, 연중 65%에 달했다.¹⁹³⁾

191) “북한의 사이버공작요원 7000여명 … 연간 1조원 외화벌이”, 세계일보, 2017. 11. 23.

192) 청와대 경내에서 발견된 전단지는 2016년 작년에도 8차례, 2017년 10월 현재 11차례 발견되었다. “청와대서 北 대남전단 ‘빠리’ 발견 … ‘올해만 11번째’”, 한국일보, 2017. 10. 16.

193) “북한 빠리 1년여간 200만장 수거 … 수도권 85%”, 연합뉴스, 2017. 4. 12.

2017년 보안경찰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2018년에도 다양한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안전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I. 탈북민 관련 전망

1. 북한 주민의 탈북

1) 북한 주민들의 탈북 감소 추세 유지

최근 북한당국의 국경선 통제 강화, 탈북민 가족이나 탈북시도자 처벌, 재입북 탈북민의 대남비방선전, 김정은 유일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공포정치 등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를 저지하고 탈북민의 국내입국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7년 김정은이 잇달아 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제재 수위를 강화하자, 북한당국은 내부단속을 위한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탈북민의 가족을 감시하는 공안기관 인원을 크게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⁹⁴⁾ 또한, 최근 주민들의 탈북과 밀수 등을 막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자 양강도 해산시를 중심으로 압록강변 50m 내에 있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¹⁹⁵⁾ 이외에도 탈북 경로에 대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고 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밝힌 “비사회주의(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탈된 행동)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미명하에 주민통제와 감시, 탈북방지를 위한 국경지역 경계 등을 강화할 경우, 새로운 탈북민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정은의 공포정치 대한 불만으로 내부혼란 등이 발생해 주민 통제기능을 상실하거나 약화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탈북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탈북 동기의 다양화

최근 한국행을 선택하는 탈북민 수가 연간 3천명에 육박했던 2000년대 말에 비하면 그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탈북 유형은 달라지고 있다. 1990년 중반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탈북’이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재북(在北) 당시 소득과 생활수준이 중·상류층인 인사들이 자유와 김정

194) “10명 중 8명이 여성… 두드러지는 탈북민 여초 현상”, 한국일보, 2017. 10. 15.

195) “RFA 北, 中 국경지역 압록강변 마을 철거”, 뉴시스, 2017. 11. 7.

은 체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한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이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즉, 과거와 비교하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는 줄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자녀교육 등 비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의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북 당시 탈북을 결심했던 주된 요인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 동기 전체의 45.2%로 가장 많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25.7%, ‘통제가 싫어서’ 25.1%,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10.9%, ‘먼저 탈북한 사람의 권유’ 9.3%, ‘주변사람의 권유’ 9.1%, ‘남한의 문화를 접하고 난 후’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입국 탈북민의 성별에 따른 탈북 동기를 보면, 여성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탈북을 결심했고, 남성은 통제가 싫어서, 가족을 따라서, 신변위협, 가족을 찾아서 등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¹⁹⁶⁾ 즉, 남녀 모두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30.8%와 50.2%로 탈북 동기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었지만, 2016년의 경우 2014년보다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2.4% 감소했으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⁷⁾

〈표 3-5-6〉 탈북민의 탈북 동기(복수 응답)

(N : 응답자 전체 11,914명)

구 분	사례 수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통제가 싫어서		가족을 따라서		신변 위협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1,914)	5,499	45.2	3,024	25.7	2,878	25.1	2,686	21.5	1,770	15.0	1,448	11.7
성별	남성 (2,997)	945	30.8	440	15.4	872	30.2	949	29.4	647	22.2	467	14.9
	여성 (8,917)	4,554	50.2	2,584	29.3	2,006	23.4	1,737	18.8	1,123	12.4	981	10.6

출처 : 남북하나재단,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17, 106~107쪽.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는 여전히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통제가 싫어서, 가족을 따라서,

196) 즉, 여성의 경우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50.2%,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29.3%로 남성의 30.8%, 15.4%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남성은 ‘통제가 싫어서’가 30.2%, ‘가족을 따라서’ 29.4%, ‘신변위협’ 22.2%,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 14.9%로, 여성의 23.4%, 18.8%, 12.4%, 10.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197) 이상의 내용은 장인숙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7, 106~109쪽 재정리.

신변위협 등 탈북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에도 북한 주민들 중 해외 체류 엘리트층의 탈출과 중·상류 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찾는 ‘이주형 탈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식량난과 경제난이 임계수준에 이를 경우, 내부혼란 등의 사회 불안정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집단탈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은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대량 탈출한 바 있다.

2. 탈북민의 국내 입국

1) 국내입국 탈북민 감소 추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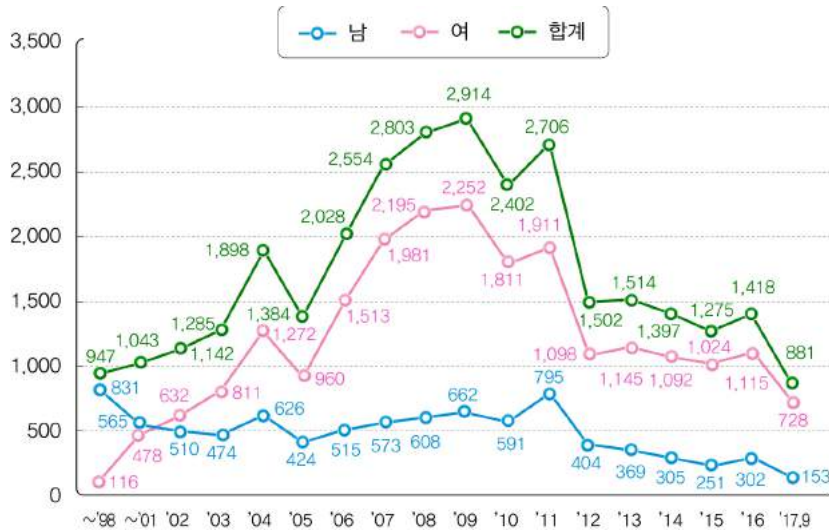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2017년 9월말 현재 3만 1093명에 이르고 있다. 1962년 6월 최초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이후 2006년 2월 1만 명을 넘어선데 이어서 2010년 11월 2만 명 돌파를 거쳐 6년 만인 2016년 11월 3만을 넘어섰다.

연도별 입국자는 1999년 148명이 입국하여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이후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증가했다. 2002년 1142명이 입국해 처음으로 1천명을 돌파한 후 매년 1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2000명에서 2900명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12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표 3-5-7〉 탈북민 국내입국 현황

(~'17. 9월말 입국자 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잠정)	합계
남 (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 (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8%	80%	79%	83%	71%



출처 : 통일부(2017. 11)

실제로 2011년 2706명이던 탈북민은 2012년 1502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2015년에는 1275명까지 떨어졌지만, 2016년 1418명으로 일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2017년 1~9월까지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은 881명으로 2016년 동기 대비 1036명보다 14.9% 감소했다.

이러한 국내입국 탈북민 감소 현상은 북한당국의 내부 단속과 북·중간 국경 통제가 강화되어 주민들의 탈북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국내입국 중간 기착지인 중국의 공안과 제3국의 탈북민 이동경로 단속 강화가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지방기관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부인, 아들과 두 딸 등 일가족 5명이 탈북한 후, 2017년 7월 3일 윈난성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 될 위기에 처하자 음독자살했다.¹⁹⁸⁾ 중국체류 탈북민 5명이 10월 28일 새벽 라오스를 거쳐 국내입국을 위해서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변방대(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2017년 11월 10일 강제복송 된데 이어서,¹⁹⁹⁾ 11월 4일 중국 선양에서 탈북민 10여 명이 공안당국에 체포되어²⁰⁰⁾ 11월 17일 강제 복송되었다고 한다.²⁰¹⁾ 북한 주민 50대 여성과 일가족 3명 등 6명이 2017년 11월 7일 새벽

198) 자유아시아방송(RFA), 2017. 7. 21.

199) “중국서 체포된 탈북민 5명, 최근 강제 복송된 듯”, 조선일보, 2017. 11. 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1/2017111100173.html; 2017. 11. 15 검색).

200) 중국 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따르면 2017년 11월 4일 탈북민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다가 중국 지린성 장백현 국경부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²⁰²⁾

결국, 탈북민들의 국내입국 중간 기착지인 중국당국의 탈북민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한,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감소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국당국이 국제사회의 탈북민 난민인정 주장에²⁰³⁾ 편승해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단적인 조치를 단행할 경우, 중국체류 탈북민의 국내입국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여성 탈북민의 국내입국

앞의 <표 3-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까지만 해도 국내입국 탈북민 947명 중 여성비율이 12%(116명) 수준에 불과했다. 2002년 처음으로 여성 탈북민이 55%를 넘어선 이후 지난 11년(2006~2016) 동안 70~80%를 유지하였다. 2017년의 경우 1~9월말까지 국내입국 전체 탈북민 881명 중 여성이 728명인 83%에 이른다.

탈북민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가족들의 실제적인 생계를 책임졌던 여성들은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구입 문제가 가장 절실한 해결 과제였다. 이 시기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여성들의 장사활동은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장사활동만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에 있는 친·인척을 찾아 불법 월경하여 식량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북한당국의 여성에 대한 감시가 직장에 구속된 남성에게 비해 느슨해 의심을 덜 사면서, 비교적 국내입국 경유지인 중국에 드나들기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국 체류 탈북민 중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에도 지속되어 국내입국 탈북민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 “중국 선양서 체포된 탈북자 10명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미국의 소리(VOA: <https://www.voakorea.com/a/4140771.html>), 2017. 11. 29.

202) “탈북민 6명 중국에서 또 체포...잇단 북송 위기”, KBS NEWS, 2017. 11. 8.

203) 2017년 11월 22일 필리핀 그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한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역시 다른 난민과 마찬가지로 본국에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뉴스한국 (<http://www.newshankuk.com>), 2017. 11. 25).

3) 20~30대 탈북민의 국내입국

2017년 6월말 현재 국내입국 전체 탈북민 중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인 20~30대가 1만 7454명인 57.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20~30대의 젊은 층의 경우,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 후에도 취업 등을 통해 비교적 사회정착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탈북민 1만 7454명 중 여성이 1만 2972명인 7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20~30대의 여성 탈북민의 경우 국내입국 전체 탈북민 3만 380명 중 4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탈북한 후, 중국에서 가사도우미 등 노동력을 제공해 은신하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을 거친 힘든 과정을 체력적으로 견뎌낼 수 있었고, 국내로 입국한 후에도 노동력을 제공하여 비교적 쉽게 돈을 벌어 북한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성 탈북민 중에서는 재북·재중 가족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송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돈을 비교적 쉽게 벌수 있다는 노래방 및 다방 도우미 등에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들의 효과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취업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표 3-5-8〉 탈북민 연령대별 입국현황

(17. 6월말 / 단위 :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32	1,587	2,434	2,048	1,309	501	328	8,839
여	623	1,940	6,208	6,764	3,897	1,182	927	21,541
합계	1,255	3,527	8,642	8,812	5,206	1,683	1,255	30,380



※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출처 : 남북하나재단, 통계자료(2017. 6월말)

전반적으로 2018년에도 20~30대 젊은 계층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말 현재 전체 탈북 청소년 2701명중 51%인 1383명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학교생활 부적이 일탈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새로운 국내입국 경로 개척

최근 탈북민의 국내입국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분단 이후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김일성 1인 독재체제에 대한 환멸과 개인적 문제 등의 이유로 휴전선·해상·강상(江上) 등을 통해 직접 귀순했다.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식량구입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지역의 북·중, 북·러 국경선을 이용해 탈출한 후, 중국과 동남아를 경유지로 하여 국내입국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중국과 제3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외국대사관에 잠입해 한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국제 정기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통해 밀항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민 체포 등 탈북민 이동 경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동포(조선족)의 위·변조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2월의 경우 국내입국 탈북민 49명 중, 43명은 제3국을 경유해 입국했고 나머지 6명은 밀입국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북한당국이 탈북민 이동경로와 함께 중국당국이 탈북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신변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국내입국 경로를 개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당국이 파견한 해외노동자들이 근로현장을 이탈한 후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입국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 체류 탈북민들은 중국동포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입국을 시도하거나 해상을 통한 밀입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은 휴전선과 동·서해상이나 강상을 통한 귀순도 예상된다.

5) 휴전선을 통한 귀순자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초소의 하급전사(병사) A씨가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뚫고 귀순한 지 38일 만인 12월 21일 경기 연천 최전방 비무

장지대(DMZ)를 통해 북한병사 B씨가 귀순했다. 이들의 귀순에 대해 군 관계자 및 외교 소식통 등은 ‘북한 군인들의 내부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이 아닌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쉬운 낮 시간대에 귀순을 감행했다. JSA에서 귀순한 병사 A씨는 차량을 몰고 귀순을 시도했으나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자 도보로 남쪽까지 달려왔고, 귀순병사 B씨는 근무 중 이탈해 AK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로 귀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북한군 내부의 일반 병사들까지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²⁰⁴⁾

북한 주민과 병사들의 귀순 인원도 2017년의 경우 2016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과 군인을 포함한 귀순자는 2016년은 3회에 걸쳐 5명(주민 4명, 군인 1명)이었지만, 2017년의 경우는 9회에 걸친 15명(주민 11명, 군인 4명)으로 나타났다. 즉, 휴전선을 통한 귀순은 2017년의 경우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²⁰⁵⁾ 특히, 북한군 병사의 경우 2016년 1명에 비해 2017년은 4명이 귀순해 크게 증가했다.

결국, 2017년 9월 현재 탈북민의 국내입국은 2016년 대비 14.9% 감소한 반면에 휴전선을 통한 귀순자들은 크게 증가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2018년에도 휴전선을 통한 귀순자들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휴전선을 통한 귀순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안전한 귀순보장과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 탈북민 신변보호 치안 수요

1) 위장 탈북민 간첩 남파

위장 탈북민 간첩은 일반 탈북민·중국동포(조선족)·중국국적·제3국 재외동포 등으로 신분을 세탁한 후, 일반 탈북민의 국내입국 루트를 통해 입국한 후 활동하기 때

204) “잇따른 北 귀순병사, 북한 내부 소요사태 가능성 높아지나?”, 헤럴드경제, 2017.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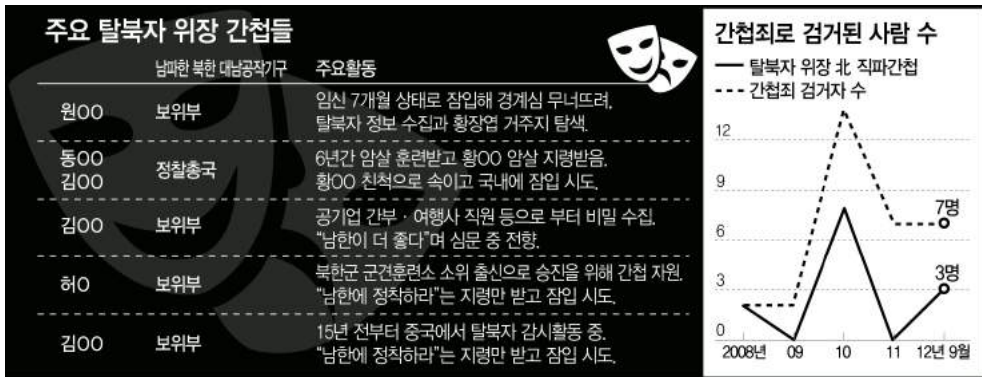
205) 북한군 병사 귀순은 2016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의 경우 ▷6월 13일 경기 지역 중부전선 ▷6월 23일 강원 지역 중부전선 ▷11월 13일 판문점 JSA ▷2월 21일 경기지역 중서부전선 등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4명이 귀순해 왔다(헤럴드경제, 2017. 12. 22).

문에 색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탈북민을 체포·납치하여 회유와 협박을 통해 소정의 공작원 교육을 시킨 후 재중 정보원이나 남파 후 대남공작활동을 지령하고 있다. 대남공작기관이 직접 양성한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남파시키기도 한다.

합동참모본부의 국감자료(2016. 9. 26)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우리 공안당국이 검거한 간첩 13명 중 92%인 12명이 우리 군의 정보와 동향자료를 수집하던 중 위장 탈북민 간첩으로 검거되었다. 2012년의 경우만 해도 6명의 위장 탈북민 간첩이 검거되는 등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탈북민 위장 간첩 남파공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²⁰⁶⁾

[그림 3-5-12] 위장 탈북민 간첩검거 사례



출처 : "2008년후 잡힌 北간첩 13명, 모두 탈북 위장",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3/2012091300237.html; 2017. 12. 1 검색), 2012. 9. 13.

최근 북한당국의 대남공작활동은 과거 직파간첩을 남파시켰던 것과는 달리 간첩을 탈북민으로 위장시켜 탈북민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장 탈북민 간첩 색출을 위한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장 탈북민 간첩 침투 방법도 중국동포(조선족) 신분을 위장해 취업 비자를 통한 남파 등의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이들은 탈북민 테러 및 납치, 국가기관 시설 폭파, 요인인물 암살, 사이버 테러 등의 다양한 임무를 지령받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 합동참모부, "북한 침투·국지 도발", 2016 국정감사 자료, 2016. 9. 26; "軍 침투 간첩 92%가 위장 탈북자", 조선일보, 2016. 11. 23.

2) 탈북민 대상 재입북 유인공작

통일부에 따르면 재입북 탈북민은 2017년 10말 현재까지 26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10월 말 현재 2명(임지현, 주옥순)이다.²⁰⁷⁾ 이중 여성이 14명, 남성이 12명으로 탈북민의 70% 이상이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남성 탈북민의 재입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부 북한 전문가나 탈북민은 100~150여명이²⁰⁸⁾ 재입북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TV조선’(2017. 10. 22)은 2014년 태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33살 송모 씨와 36살 손모 씨 부부가 중국 장백현에 도착한 뒤 2017년 10월 16일 밤 북한 양강도 혜산을 통해 재입북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²⁰⁹⁾

〈표 3-5-9〉 재입북 탈북민 현황

연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0
재입북(명)	26	7	7	3	3	4	2
재입북 후 재입국(명)	5	-	2	-	1	1	1

출처 : 2017 국정감사자료(통일부) 보완 재정리.

국내정착 탈북민 중에서 재입북을 기도하다 탈출 예비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도 있다. A씨는 차량 3대를 절취하는 등의 사회적응에 실패해 재입북을 생각하던 중 2016년 2월경 북한 말을 쓰는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북한 보위부인데 왜 북한을 배신하고 한국에 왔나, 남조선 정보를 탐지하라고 문자 보냈는데 왜 답이 없나, 협조하지 않으면 끝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후 직장 동료 등에게 경비를 빌려 중국을 거쳐 재입북(2016. 5)을 기도하다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²¹⁰⁾ 이같이, 재입북 기도 탈북민들은 국내정착에 실패하고 일용직 또는 유흥업소(종업원)를 전전하거나 절도죄 등을 저지른 후 도피생활 등을 하다가 주요 시설을 탐지한 정보를 가지고 탈남(脫南)을 실행하다 검거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탈북민 중 북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가족상봉을 위한 북·중 접경지역 방문, 돈을 모아 북한 가족에게 돌아가고픈 마음 등 탈북민의

207) 2017년 10월 12일 재입북한 주옥순은 북한 대외선전 매체에 등장한 바 있다.

208) 채널A, 2017. 8. 1.

209) “‘제2의 임지현’… 탈북자 부부 지난해 中 통해 재입북”, TV조선, 2017. 10. 23.

210) “마약 제조 배우려 재입북 시도한 20대 탈북자 실형”, 연합뉴스, 2016. 8. 11.

불안정한 심리적 갈등을 교묘히 이용해 탈북민을 포섭하는 방안, 즉 탈북민 재입북 유인공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탈북민 대상 재입북 공작활동에 주력하는 주된 목적은 탈북민과 탈북민간 또는 탈북민과 국민간의 이간 책동으로 사회분열을 조장시켜 ‘남조선혁명(적화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 북한당국이 ‘남조선 혁명’의 전략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탈북민 대상 재입북 공작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로 잠입한 위장 탈북민 간첩이나 ‘재입북 브로커’가 사회부적응 탈북민에게 접근하여 북한 가족 등을 볼모로 한 회유와 협박을 통한 유인공작을 할 경우 탈북민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북한 대남공작기관이 대남비방과 김정은 체제의 선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명도 높은 탈북민을 비롯한 사회부적응 탈북민, 자진 재입북 의사를 표명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재입북 유인공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탈북민의 재입북 징후를 찾아내어 차단하는데 필요한 치안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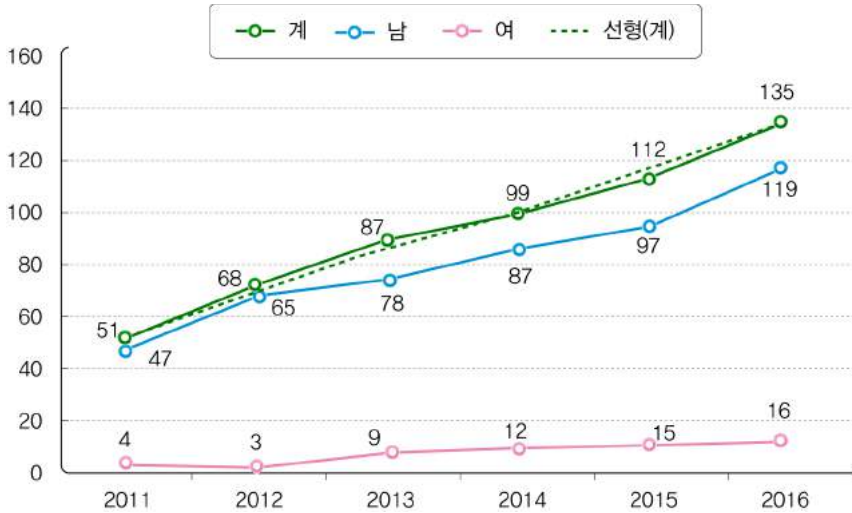
3) 탈북민 재소자 증가

탈북민의 범죄 현황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수용자 현황”이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데, 탈북민 범죄 재소자는 2011년 51명, 2012년 68명, 2013년 88명, 2014년 99명, 2015년 112명, 2016년 13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탈북민 수용자는 2011년 51명 대비 2016년 말에는 135명으로서 16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남성은 153.2% 증가한 반면에, 여성은 300.0% 증가해 여성 탈북민의 수감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3-5-10〉 탈북민 수감자 현황 및 추세

(2011~2016 / 단위 : 명)

연도	계	남자	여자
2011	51	47	4
2012	68	65	3
2013	87	78	9
2014	99	87	12
2015	112	97	15
2016	135	119	16
2011 대비 증가율	164.7%	153.2%	300.0%



출처 :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2016. 9. 20); 강창일 의원, “국감 보도자료”, 2016. 9. 21 재인용.

2016년 말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 135명의 범죄 유형을 보면, 마약류가 36.3%인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사기·횡령이 8.9%인 12명, 살인 8.1%인 11명, 폭행·상해 7.4%인 10명, 과실범 5.9%인 8명, 절도 5.2%인 7명, 폭력행위 3.0%인 4명, 강도 2.2%인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가 전체의 23.0%인 31명이다. 재소자 탈북민의 범죄 중 2012년 대비 2016년을 보면 마약범죄는 38명(345.5%), 폭행·상해는 7명(233.3%), 절도는 4명(1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1〉 탈북민 수용자 범죄 유형별 증가율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2 대비 '16 증가율
	죄 명 별	계	68	88	99	113	135
절도		3	3	9	7	7	133.3%
폭행·상해		3	9	2	2	10	233.3%
사기·횡령		9	15	11	11	12	33.3%
과실범		6	5	10	8	8	33.3%
강도		2	3	2	5	3	50.0%
살인		8	10	13	12	11	37.5%
폭력행위		3	5	10	14	4	33.3%
마약류		11	12	17	28	49	345.5%
기타		23	26	25	26	31	34.8%

출처 : 윤영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7. 9. 25.

탈북민 재소자들은 재북 당시 외부세계와 단절된 북한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왜곡된 법의식, 1당 독재를 넘어서 1인 독재체제에 길들여진 후진적 법의식, 욕심과 무지 등이²¹¹⁾ 우리사회 정착과정에서 왜곡된 법적 경험과 법의식을 갖게 하여 범죄자로 전락되고 있다. 일부 여성 탈북민의 경우, 국내입국 후 탈북브로커에게 탈북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비교적 돈벌이가 쉽다는 성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여성 탈북민의 성매매 유형은 티켓 다방, 노래방, 퇴폐마사지, 일본원정 성매매, 음란물 공연 등 그 성향이 점차적으로 대범해지고 있다.

결국, 탈북민 재소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를 볼 때 마약류, 폭행·상해, 절도 범죄 등과 연계된 탈북민 재소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탈북민의 경우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법률 등 사회·문화 제도의 이해부족에 의한 가치관 혼란과 사고의 경직성 등에 따른 사회 일탈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과 탈북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4) 거주불명 탈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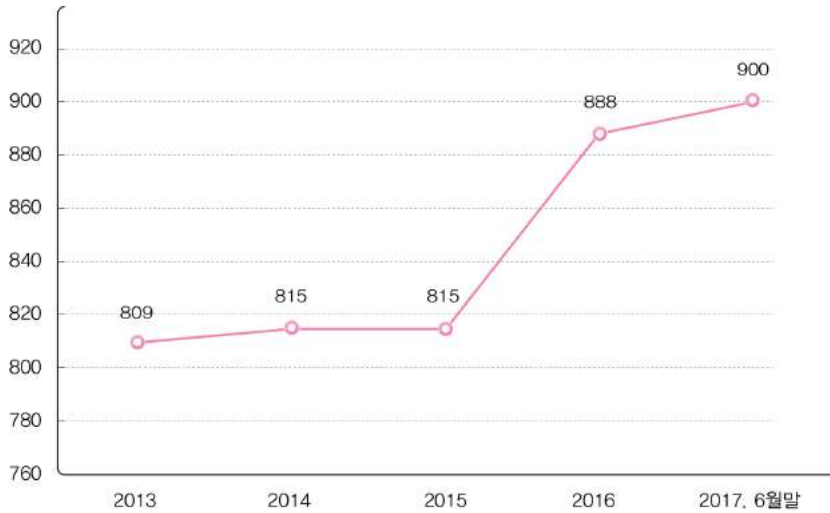
2017년 6월 탈북민 임지현의 재입북 등을 계기로 탈북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 탈북민은 2017년 6월말 기준 900명으로, 이중 소재불명 22명, 출국 746명으로 나타났다. 출국자 746명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²¹²⁾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 2017년 6월말 현재 900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12〉 거주지 불명 탈북민 현황 및 추세

연도별	'13.12월	'14.12월	'15.12월	'16.12월	'17.6월말
거주 불명자	809명	815명	815명	888명	900명

211) 최영신,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법교육연구 제10권 3호, 한국법교육학회, 2015, 144쪽.

212) “나 좀 데려가 줘’ 北 유인 공작 급증 … 억류된 북한 상남자”, SBS, 2017. 12. 22.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파악

출처 : 이명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2017. 10. 13) 재구성.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하여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부터 2개월 간 경찰청이 조사한 거주지 불명 탈북민 791명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의 소재파악에 확인되지 않는 거주지 불명 탈북민이 688명이며, 이는 국내 거주 탈북민 26,000여명의 약 2.57%에 해당된다. 이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출국’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해외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²¹³⁾ 탈북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탈북민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통일부 관련부서나 해당 신변보호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5-13〉 탈북민 거주지 불명 사유 현황

구분	합계	주민등록지 거주	다른 주소지 거주	소재 불명 (연락기피 등)	교도소 수감	해외 출국	기타
2015. 4 기준	791	5	62	24	22	664	14
2013. 8 기준	796	7	33	44	19	689	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파악

출처 :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17. 9. 19) 재구성.

213)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7. 9. 19.

결국, 거주지 불명 탈북민은 2018년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탈북민의 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치안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탈북민의 거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임지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북민의 거주지 보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Ⅲ. 외사 분야 전망

1. 체류 외국인 200만, 출입국자 8천만 명 시대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9년 만인 2016년 6월에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그 두 배인 2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²¹⁴⁾

2017년 10월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13만 5049명으로 2016년 204만 9441명 대비 약 8만 5천명 증가하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5.7%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5년 후인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계 2021년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5.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3-5-13] 국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및 현황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출입국자는 2010년에 4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6년 만에 두 배인 약 8천만 명(7999만 명)에 근접했다. 국민 출국자는 2006년 1281만 명에서 이후 6년 만에 다시 1천만 명이 늘어 2266만 명을 기록했고, 외국인 입국자도 2010년 877만 명에서 6년 만에 두 배로 늘어 1742만 명을 기록했다.

214) 체류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 의미한다.

2017년 10월 기준,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47.4%(101만 1237명), 베트남 7.8%(16만 6956명) 미국 7.1%(15만 2343명), 태국 5.8%(12만 4657명), 우즈베키스탄 2.9%(6만 2027명) 등의 순이다.²¹⁵⁾ 베트남의 경우,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체류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²¹⁶⁾

〈표 3-5-14〉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0
중 국 (한국계)	778,113	898,654	955,871	1,016,607	1,011,237
	497,989	590,856	626,655	627,004	673,845
베 트 남	120,069	129,973	136,758	149,384	166,956
미 국	134,711	136,663	138,660	140,222	152,343
태 국	55,110	94,314	93,348	100,860	124,657
일 본	56,081	49,152	47,909	51,297	41,977
인도네시아	41,599	46,945	46,538	47,606	43,249
우즈베키스탄	38,515	43,852	47,103	54,490	62,027
러 시 아	12,804	14,425	19,384	32,372	47,451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7. 10)

2017년 10월 기준, 외국인등록자는 116만 5842명,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자는 40만 4917명, 단기체류자는 56만 4290명이며, 외국인 유학생은 13만 7211명, 내국민의 배우자는 15만 4765명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40만 4917명으로 나타났다.

중국국적의 체류외국인은 2016년 101만 6607명에서 2017년 10월 현재 101만 1237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¹⁷⁾ 베트남 국적의 체류외국인은 2016년 약 14만 명에서 2017년 약 16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태국 국적의 체류외국인도 비슷한 추세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²¹⁸⁾ 러시아 국적의 체류외국인의 경우 2013년 1만 2천명에서 현재 4만 7천명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5)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216) 베트남은 2005년 3만 8902명으로 중국 28만 2030명, 미국 10만 3029명, 일본 3만 9410명에 이어 4위였으나, 2006년 5만 4698명으로 중국 38만 2237명, 미국 10만 8091명에 이어 3위, 2016년에 14만 9384명으로 중국 101만 6607명에 이어 2위로 부상하였다.

217) 한국계 중국인은 2016년 62만 7004명에서 2017년 10월 67만 3845명으로 약 4만 5천명 증가하였다.

218) 2016년 10만 860명에서 2017년 10월 12만 4657명으로 19%로 이상 증가하였다.

체류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44만 명이었던 체류외국인이 2016년 204만 명으로 42% 증가하였고, 외국인범죄자는 2012년 2만 4천명에서 2016년 4만 3천명으로 79% 증가하였다.

〈표 3-5-15〉 체류외국인·외국인범죄자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외국인범죄	26,915	24,379	26,663	30,684	38,355	43,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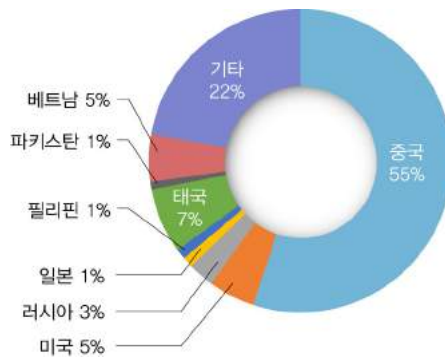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안전행정부(2017); 경찰청(2017)

국적별 외국인 범죄 비율은 2017년 9월 기준, 중국 55%(1만 5400명), 태국 7%(1822명), 러시아 3%(841명), 미국 5%(1413명), 베트남 5%(182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외국인 범죄의 동향은 살인 및 강도를 비롯한 지능범죄, 교통범죄는 줄어든 반면 강간 및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감소의 폭이 크지 않아 특별한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범죄 중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국의 마약 공급책과 연락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국내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밀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3-5-14]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현황(2010 ~ 2017. 8)



출처 : 경찰청(2017)

2. 불법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예상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무비자 입국 허가를 받거나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무비자나 관광객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한 외국인인 모두 9만 5718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23만 5697명)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한해 8만 2357명보다 1만 3361명 더 많은 수치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10년 전인 지난 2008년 2만 5천 명과 비교하면 3.5배나 넘게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 허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²¹⁹⁾

〈표 3-5-16〉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8
사증면제(B-1)	22,241	46,117	56,307	63,319	77,130
일반무사증(B-2-1)	13,699	13,745	14,745	11,250	10,847
제주무사증(B-2-2)	1,285	2,154	4,913	7,788	7,741
총 계	37,225	62,016	75,965	82,357	95,718

출처 : 법무부(2017)

특히, 2014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비자(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러시아 국적의 체류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들 국적의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국적 체류외국인이 2013년 1만 2804명에서 사증 면제협정 이후 2017년 10월 4만 7451명으로 약 3만 5천명이나 증가하였고, 피의자도 2013년 257명에서 2017년 9월 84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대비(626명)의 경우에는 34.3%나 증가하였다.

219) 금태섭, 강제퇴거자 등 출입국사범 대폭 증가, 작년 15만명 넘어, 2017. 10. 15 보도자료 참조.

〈표 3-5-17〉 외국인 피의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 구분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기타
2013	26,663	15,121	1,947	211	257	387	656	249	1,908	5,927
2014	30,684	17,870	1,916	208	387	461	1,362	243	1,943	6,294
2015	38,355	22,898	1,884	279	470	520	1,869	279	2,267	7,889
2016	43,764	23,879	2,033	215	851	721	3,349	400	2,623	9,693
2016. 9	32,893	17,830	1,481	168	626	576	2,499	285	2,079	7,349
2017. 9	27,859	15,400	1,413	196	841	313	1,822	215	1,469	6,190
전년대비	-15.3%	-13.6%	-4.6%	16.7%	34.3%	-45.7%	-27.1%	-24.6%	-29.3%	-15.8%

출처 : 경찰청(2017)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 증가는 결국 외국인 범죄 증가와 결부되는데, 경찰청의 국내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만 6663명, 2014년 3만 684명, 2015년 3만 8355명, 2016년 4만 37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태국, 필리핀 등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나라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것을 악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증가의 억제를 위해 비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의 경우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서 2017년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220)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걸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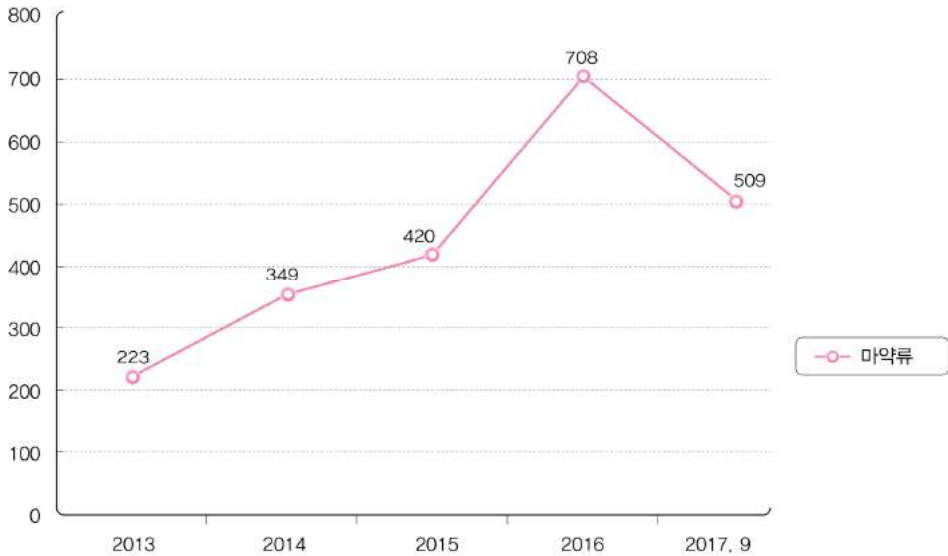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국인 마약류 범죄 증가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경찰에서 검거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총 708명으로, 2015년 420명 대비 74.3% 증가하였고, 2017년 9월에 검거한 피의자만 509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220) 2017년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해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특별단속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하였고,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 9829명을 적발하였다.

6.7%에 해당한다.

[그림 3-5-15] 체류외국인 마약범죄 추이(2013 ~ 2017. 9)



출처 : 경찰청(2017)

2013년부터 외국인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로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 및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마약류 유입으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에 들어서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국내 유입이 많아졌고,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신종마약의 유입,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을 유통망으로 삼는 해외조직이 있을 정도로 국내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마약류 범죄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마약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마사범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인이 메스암페타민을 밀반입 하거나 투약한 사례와 태국인이 야바를 밀반입 투약한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이후부터 밀반입되고 있는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 대마초를 비롯하여 신종 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야바(YABA), 크라툼, 케타민, 이소부틸 니트리트(러시),

JWH-018(합성대마)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태국산 마약인 아바²²¹⁾는 필로폰에 카페인, 코데인 등이 혼합하여 정제한 것으로, 알약 형태로 쉽게 투약할 수 있고 사흘 가량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²²²⁾

예를 들면, 2017년 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클럽에서 국제특송(EMS)으로 들여온 ‘아바’²²³⁾를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하여 적발된 사례를 비롯하여 외국인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 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딥웹(deep web)²²⁴⁾을 통한 마약 거래가 2014년 4.7%에서 2017년 7.9%로 증가하였고, 이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사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에 의한 수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²²⁵⁾

221)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인 쿤사가 메스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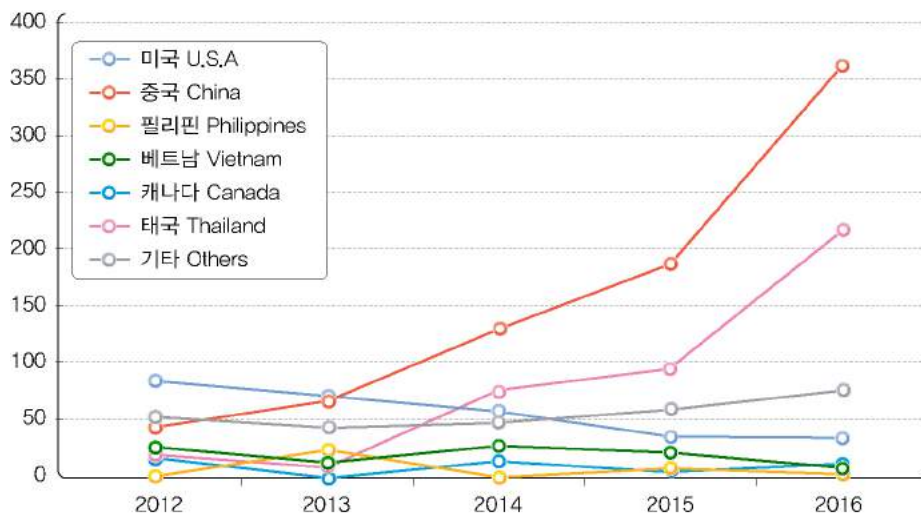
222) 2016년 6월 국내 거주 태국인들이 국제특급우편으로 ‘아바’를 태국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말린 생선, 향신료, 통조림 등 수입 식품에 섞어서 경남 김해시의 아시아 음식을 파는 식료품 가게로 보내 판매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

223)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바의 경우 2016년 압수량은 593g이었으나, 2017년 1월에서 9월 사이의 압수량은 2,389g 압수되어 약 300% 이상 증가하였다. 대검찰청 마약수사,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 102쪽; 2017년 9월 마약동향, 6쪽.

224)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웹 사이트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딥웹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접속할 수 있도록 도메인 주소를 외부로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웹 환경에서 찾기 힘든 자료들을 딥웹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약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225) 한국경제(<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426371>, 2017. 9. 5 검색).

[그림 3-5-16] 국적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검거 추이



출처 : 대검찰청 범죄백서(2017), 경찰청(2017)

대부분의 마약류가 외국에서 밀반입을 통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점과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딥웹에서 이루어지는 마약거래 관련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외국인 피의자 검거를 위한 긴급출국정지제도 도입 예상

2015년 9월 25일 경기 여주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버섯 농장주를 납치·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하였다. 이후 피의자들은 범행 후, 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국내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위 사건과 같은 역기능도 나타나는 등 사회의 불안 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최근 체류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 전 또는 불구속 재판 계류 중에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해 피의자가 본국으로 출국 및 도주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 등으로 도주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외국인 범죄자 신병 확보 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내

국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출국금지제도가 존재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긴급출국정지제도가 없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피의자의 국외 도주가 용이하며, 국외에서 범죄자가 검거되어 범죄사건이 해결되어도 외국인 피의자의 국내 송환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각 국가마다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특히 불법 체류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본국이나 기타 타국으로 도주 및 도피를 위한 출국시 이에 대한 제재 장치가 현실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물론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출국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해당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제사법공조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2017년 5월 기준, 범죄인도조약은 78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6개국과 체결하고 있다.²²⁶⁾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외국인 피의자의 국외 도주가 가능하더라도 정부는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국내 송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반드시 국외에서도 검거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범죄자들의 뇌리에 정착시키는 것이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6) 세부적인 체결 국가 현황은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경찰청 외사수사과, 2017. 8, 85쪽 참조.

치안전망 2018

P O L I C E S C I E N C E I N S T I T U T E



제4장

2018년 경찰의 대응

I. 범죄별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	228
II. 생활안전 분야	232
III. 교통 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	234
IV. 사회안정 확보	236
V. 보안·외사분야	238

I. 범죄별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

1. 증가예상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

전체적인 범죄 발생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교통범죄와 특별경제범죄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지능범죄와 기타범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범죄 유형의 증가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는 마약범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데 마약의 공급루트를 조기에 발견하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선거기간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국민 제보의 적극 유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 범죄자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대해 발생특성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50대 이상 고령자에 의한 범죄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처리절차 및 사회복지 기관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응급입원 시행 절차에 대한 홍보·시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5대 범죄의 감소추세 속 대응방안

살인범죄의 경우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특히 아동, 여성, 노인에게 대한 폭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

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강도범죄는 주로 시간·장소 상 방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법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방법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절도의 경우에는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도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순찰경로를 설정하고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CCTV의 확대 설치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폭력범죄는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주취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유흥지역 등에 대한 집중 순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5대 범죄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지하철 등 대인접촉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예측적 치안활동(Predictive Policing)의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旣운용 중인 GeoPros(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의 범죄위험도 예측기능, 그리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범죄분석·예측 시스템 CLUE의 시범운영 등을 통해 예측된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신종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간 협조 강화

2018년 예상되는 기준 금리 인상 조치와 최고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하여 정부의 가계 대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기만당할 위험성은 계속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들의 재정적 취약성을 이용하고자 범죄 수법이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이 혼재된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로 진화하면서 잇따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서민들이 범죄에 쉽게 기만당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요인이 되는 금리에 관한 결정은 금리 변동의 범죄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국내외 사회 경제적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경찰청 업무 범위 밖의 권한이므로, 경찰청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전제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범죄가 혼재되기 이전의 유형인 정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새로운 유형인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왔던 수법들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식 은행 서비스 및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같이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등장으로 토대로 새롭게 범죄자들에게 이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수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이나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의 피해 위험이 가장 큰 연령대는 재정적 수요가 크고 대출 필요성이 높은 40~50대인만큼, 중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새로운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의 홍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홍보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피해자 및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금감원 및 금융권과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축한 협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과학수사 발전방향 설정

경찰의 과학수사는 기법·장비의 첨단화, 인적자원 전문화, 대내·외 협력 강화, 조직인프라 확충이라는 네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설정은 적절해 보인다.

기법·장비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하여 첨단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수사 전공자 경력 채용을 통한 인적 자원 전문화도 탄력을 받아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협력 강화로 인증의 표준화 및 국제인증 획득의 쾌거를 통해 과학수사 위상을 국제화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이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업무협력의 강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도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과 신설 등을 통하여 경찰 내부에서의 과학수사도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과학수사관리관실이 지식 창출의 원천으로서 과학수사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5. 불법 사이버 도박 대응 및 금융범죄 수사 역량 강화

2018년에는 FIFA 러시아 월드컵이 6월부터 열릴 예정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2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연이은 스포츠 행사 일정과 병행하여 불법 도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 중계·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의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향후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도박 사이트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 수사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불법·유해 정보의 모니터링과 각종 사이버 도박의 조기 차단을 위하여 민·경 협력의 차원에서 누리캡스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예견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영입이 개시되고 모바일에 의한 계좌개설 및 입출금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이 보다 높아지고는 있으나, 신분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통장대여,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계좌개설 및 실질이용률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상 범죄 유형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의 보완, 범죄예방 및 피해회복 모형 개발 등 실질적 대책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II. 생활안전 분야

1. 112신고 관련 통계의 정확도 향상 및 현장대응 시간 단축

최근 5년간 112신고 건수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가 급증하였지만, 경찰은 차별적 대응을 통하여 안정적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2015년 이후 평균출동시간이 5분대로 늘어났지만, 이는 실제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출동시간 측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출동시간 측정 등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²²⁷⁾

한편 경찰은 2017년부터 기존의 출동시간과는 별도로 현장대응시간을 관리하고 있다.²²⁸⁾ 이는 신고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경찰관의 출동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신고자의 입장에서 112신고 및 출동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통해서 2018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출동과 경찰이 홍보해 온 신속한 출동간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젠더폭력 유형별 효과적 대응전략 추진

성폭력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카메라 촬영 및 온라인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에 착안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과 유사한 수준의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2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순찰차의 도착시간을 입력하는 대신, GPS등의 기계를 활용하여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도착처리가 되도록 하는 전자 시스템이 좋은 예이다.

228) 현장대응시간이란 신고자가 통화를 완료한 후 경찰관이 현장도착시까지의 총 소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신고자 입장에서 느끼는 출동시간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기존의 출동시간 통계와는 별도로 현장대응시간을 수치화하고 단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팅앱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중인 중점 단속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채팅앱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규제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입법적 조치도 동시에 요구된다.

3. 학교폭력 변화추세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성폭력 범죄의 유형에는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폭력 범죄 외에도 성희롱 등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행위, 전화나 문자 등 매체를 통한 성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매체를 통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생간 성폭력은 유형별로 ‘매체를 통한 성적 행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 단속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음란물 전시 배포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찰은 학교폭력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71개 대안학교와 232개의 위탁교육시설에도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미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일반학교 10개교를 담당함으로써 담당 학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리대상 확대는 관리 부실로 이어질 위험성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도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내 고위험군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범죄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학교에서 부적응한 청소년들의 풍선효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범죄 및 일탈 위험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Ⅲ. 교통 환경 변화와 경찰의 대응

1. 고령운전자 급증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 필요

대한민국은 2017년 8월로 만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증가율은 연평균 14.1%로 전체 인구 증가율 0.5%는 물론, 고령인구 증가율 4.5%에 비해서도 훨씬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3000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 중 9%인 270만 명이 고령운전자이며,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데 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5.9% 증가했다. 저출산과 함께 온 인구고령화로 매년 고령자 교통사고는 늘고 있지만 질병이 없는 고령자들은 운전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교통공단의 검사결과 20~30대, 60~70대를 대상으로 한 인지반응검사 결과는 고령운전자의 점수가 낮게 나왔고, 특히 급브레이크 횟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고령운전자의 이런 특징 때문에 해외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짧게 하고 운전면허 반납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27만 여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였고, 자진 반납자에게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맞는 적성검사를 개발하고 스스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함께, 미국의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과 같은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요청된다.

2. 자율주행 시대 도래에 따른 융합기술 및 법제도 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ICT, 첨단인프라가 융합하여 차세대 교통 환경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인프라 구축, V2X 통신서비스, 초정밀 지도, 빅데이터 및 AI기술 등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 일본 닛산자동차는 로봇택시인 이지라이드(easy ride)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실증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독일의 소도시 바트 비른바흐(Bad Birnbach)에서는 운전기사 없는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하루 이용객 50명, 700m 노선, 정류장 3개를 시속 15km로 운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말에 판교 제로시티에서 자율자동차 인 12인승 무인셔틀 운행을 시작하며, 신분당선 5.6km 구간을 30km/h 속

도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전반적인 교통운영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서의 인명윤리 문제, 도로운행 법규준수 알고리즘, 자율주행서비스, 운전면허 획득 및 적성검사,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 및 책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6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교통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및 구조적 안전 확보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이는 상용화·성숙화 단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실화 속도를 감안하면, 관련 정부부처와 함께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3.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우선 출발신호제(LPI)’ 도입 검토

미국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행자우선 출발신호제’는 회전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3~7초 이상 먼저 주는 신호로서, 정식 명칭은 ‘보행자 보호간극(LPI : Leading Pedestrian Interval, 이하 LPI)’ 신호체계이다. LPI는 교차로의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좌·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PI 신호체계는 미국 전역의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뉴욕시의 경우, 3년 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시작하여 현재는 2381개 교차로에 LPI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전국도시교통담당관협회(NACTO)는 보행자우선 출발신호제를 시행하면서 보행자를 차량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행자-차량’ 충돌사고 감소효과가 6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간 교통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LPI 신호체계 도입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직진·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미국의 신호체계와 달라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우회전(RTOR : Right Turn On Red), 교차로간 신호연동 등 사전에 신호체계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LPI 신호체계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의 신호주기(Cycle)가 길어지는 부작용도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IV. 사회안정 확보

1.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2017년은 국내 집회문화에 있어 의미 있는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진 촛불집회에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촛불집회는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평화적 집회가 가능했던 데에는 경찰의 노력 또한 큰 역할을 했다. 경찰은 과거 처럼 집회를 진압·관리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는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 또한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18년에는 집회 신고절차 개선, 금지통고·제한통고의 최소화, 살수차·차벽 사용 자제 등 기본권 친화적인 집시법 적용을 위한 경찰의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관련 경찰력 행사에 대한 외부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폭력집회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 테러 위험 요소 사전 대비 필요

유럽, 중동,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테러 위험요인이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테러 대비가 필요하다. ISIL 등 국제테러단체는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선호한다. 2016년 말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발생한 트럭테러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유럽 주요 도시 크리스

마스 및 새해 행사에 테러공격을 예고하는 선전 포스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²²⁹⁾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테러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공격과는 달리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17년 6월 ‘워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기도 하였다.²³⁰⁾ 또한 2018년 2월 예정된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²³¹⁾ 따라서 경찰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조기 탐지하고 사전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여야 한다.

229) “IS 성탄·새해 맞아 ‘유럽 테러’ 예고… 공포감 확산”, 세계일보, 2017. 12. 8.

230) “美백악관 ‘워너크라이’ 사이버공격은 북한 소행 첫 공식 지목”, 연합뉴스, 2017. 12. 20.

231) “미사이버 전문가 ‘北 평창올림픽 겨냥해 사이버 공격 할 것’”, 서울신문, 2017. 12. 20.

V. 보안·외사분야

1. 북한의 각종 군사도발 및 평화공세에 선제적 대응

2018년도 북한의 대남전력 기조는 노동당 규약과 헌법 규정에 따라 전(全) 한반도의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핵무력 완성에 따라 2017년 보다 공세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거나, 자신들의 대화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7차 핵실험 및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각종 도발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는 ‘핵 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를 발생시킬 것이다. 즉,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패배의식을 유발하며, 북한은 이를 믿고 국지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을 포함한 안보기관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2. 안보위해세력의 정치활동 및 대남심리전 적극 차단

2018년에는 한국의 지자체 선거와 헌법 개정 논의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북한은 2018년 다양한 형태의 대남심리전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월부터 12월 11일까지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웹사이트에는 총 539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327건의 글이 게시돼 있다. 여기에 게시된 대부분의 글들은 남북관계 및 대정부 투쟁을 호소하는 글로 한국 사회 내 반정부 선전선동의 주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보안경찰은 북한에 의한 대남심리전을 적극 차단하는 동시에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3.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변보호 대책 필요

국내입국 탈북민은 2017년 9월말 현재 3만 1천여 명을 넘어섰다. 국내입국 탈북민의 증가와 함께 재입북, 위장 탈북민 간첩, 해외 위장망명, 사회일탈과 범죄 등이 사회

문제로 부상되면서 치안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경찰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신변보호경찰관의 인력 확보와 재배치, 하나원 및 하나센터 범죄 예방 전담 경찰관 파견, 집단거주지 중심의 자율방범대 운용, 마약류 관련 교육 등의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입국 탈북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신변보호경찰관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인권침해 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4.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찰활동 전개

2017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3만 명으로 2016년 대비 약 8만 5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5년 후인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변화되었다. 이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는 그 수법이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더욱 강력한 특별 치안을 전개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소의 외국인 밀집지역 내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치안 점검,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 지역에는 CCTV의 확대 설치, 체류 외국인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체류 외국인 자율방범대와의 합동 순찰,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신병 확보 등에 집중하여 강력한 경찰치안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지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하여 외국인 피의자 등 신속한 신원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치안전망 2018 집필진

목차	내용과 집필진	
발간사	『치안전망 2018』을 발간하며	
제1장 2017 치안활동의 회고	I.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이춘삼) II. 2017 10대 치안 이슈(공동 집필) 특집: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강용길)	
제2장 치안환경 변화의 개관	치안환경의 변화(박재풍)	
제3장 2018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1절 범죄수사 분야	I. 2018년 범죄 발생 전망(윤상연) II. 5대 범죄의 변화와 전망(윤상연) III. 지능범죄의 전망(강성용) IV.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대응 역량강화(김기헌) V. 사이버범죄 전망(정웅)
	제2절 생활안전 분야	I. 112신고 추이와 전망(김면기) II. 젠더폭력 전망(김혁) III. 학교폭력 전망(유지웅)
	제3절 교통 분야	I. 교통환경의 변화와 전망(김남선) II. 교통사고의 진단과 전망(김남선)
	제4절 사회안정 분야	I. 집회시위 전망(박원규) II. 테러 위협 전망(박원규)
	제5절 보안·외사 분야	I.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권오국) II. 탈북민 관련 전망(김윤영) III. 외사 분야 전망(김학신)
	제4장 경찰의 대응	2018년 경찰의 대응(김기헌)

치안전망 2018 집필자문

- 김 도 우 (경남대학교 교수)
- 김 영 기 (명지대학교 교수)
- 김 지 선 (형사정책연구원 기초실장)
- 김 택 수 (계명대학교 교수)
- 김 학 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박 민 영 (동국대학교 교수)
- 박 병 욱 (제주대학교 교수)
- 박 상 진 (건국대학교 교수)
- 박 현 호 (용인대학교 교수)
- 서 유 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 손 영 태 (명지대학교 교수)
- 신 성 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신 종 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 민 식 (경기대학교 교수)
- 이 수 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이 승 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 승 준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 이 시 우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이 창 한 (동국대학교 교수)
- 조 한 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순)

치안전망 2018 발간팀

- 팀 장: **윤 상 연**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팀 원: **이 동 국** (치안정책연구소 행정관)

- 편찬자문: **진 교 훈**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배 순 일 (치안정책연구소 과학기술연구부장)
노 재 호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

- 발행총괄: **김 영 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장)

행정업무지원: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

- 발행인: **송 병 일** (치안정책연구소장)
편집인: **김 영 수**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부장)
- 인쇄일: 2018. 1. 11
발행일: 2018. 1. 11
- 발행처: 치안정책연구소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9)

발간등록번호

11-1332522-000035-10



치안전망 2018

www.psi.go.kr



POLICE SCIENCE INSTITUTE